

연구보고서 2021-43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김희성
김진희·오욱찬·채현탁·황정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진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육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황정윤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43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41-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43>

발|간|사

최일선 행정 단위인 읍면동은 그간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복지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하여 왔다. 복지 부문에서 동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제도적 기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에 따라 그 전신이 마련된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에 제정되면서 전국 읍면동에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다. 2016~2017년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었고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주요 제도와 정책의 개편 과정은 읍면동이라는 작은 행정 단위에서 민관협력의 제도화가 한층 진전되면서 주민참여를 강화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민간자원의 발굴·공유·연계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기획·결정 단계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와 운용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관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거나 혹은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을 도구화하려는 문제, 지역의 부족한 복지자원과 미흡한 운영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 읍면동 단위의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의 유사성과 중복성으로 인한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협의체의 목적·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지역

사회협의체에서 주민참여가 지닌 의미와 의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고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규명하고자 했다.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과정과 창출 성과를 진단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끝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편 방안 및 정책적 지원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는 김희성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오옥찬 연구위원, 김진희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황정운 연구원이 외부 필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구 과정 전반에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 원의 함영진 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의 오문준 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 가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김은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대리, 김이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인옥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임복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임옥자 서울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정태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한대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론적 고찰 및 운영	
현황·쟁점 검토	23
제1절 동네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고찰	25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행연구 검토	55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59
제4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쟁점	89
제3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분석	99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개요	101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 분석	107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162
제4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175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177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과제	183

제5장 결론	20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05
제2절 정책 제언	217
참고문헌	221
부 록	235
[부록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표	235

표 목차



〈표 1-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조사 표본 현황	19
〈표 1-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 내용	19
〈표 2-1〉 거버넌스 역량 평가 도구(assessment instruments)	44
〈표 2-2〉 거버넌스 역량 프레임워크(governance capacity framework)	45
〈표 2-3〉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평가 원칙(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assessing levels of commitments)	48
〈표 2-4〉 커뮤니티 리더십의 평가틀(assessment tool)	50
〈표 2-5〉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 참여인원 현황	61
〈표 2-6〉 읍면동 협의체의 직종별 참여인원 현황	63
〈표 2-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척 마련 현황	64
〈표 2-8〉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연간계획 수립 현황	66
〈표 2-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 유형	67
〈표 2-10〉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69
〈표 2-11〉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 운영 참여인원 누계	70
〈표 2-12〉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예산 소개	72
〈표 2-13〉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건수	73
〈표 2-14〉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금액	75
〈표 2-15〉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서비스 연계 건수	76
〈표 2-16〉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협약기관 계좌모금 현황(연간)	78
〈표 2-1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협약기관 계좌모금액(연간)	79
〈표 2-18〉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 수	80
〈표 2-19〉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 총예산	81
〈표 2-20〉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 현황	83
〈표 2-21〉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액	85
〈표 2-2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배치 여부	86
〈표 2-23〉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고용 형태	87
〈표 2-24〉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관련법과 운영 안내의 내용적 차이	90

〈표 3-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시군구 유형 분류	102
〈표 3-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응답 표본 현황 및 응답률	103
〈표 3-3〉 조사 완료 사례 수 및 가중값 적용 사례 수	104
〈표 3-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 내용	106
〈표 3-5〉 응답자의 일반 현황	108
〈표 3-6〉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110
〈표 3-7〉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111
〈표 3-8〉 직책별·연령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112
〈표 3-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12
〈표 3-10〉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13
〈표 3-11〉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113
〈표 3-1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114
〈표 3-1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114
〈표 3-14〉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115
〈표 3-15〉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116
〈표 3-16〉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117
〈표 3-17〉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118
〈표 3-1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119
〈표 3-1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120
〈표 3-20〉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120
〈표 3-21〉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동의 정도	121
〈표 3-2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분과 구성 운영 여부	122
〈표 3-2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의 분과 구성 운영 여부	123
〈표 3-24〉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123
〈표 3-25〉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124
〈표 3-26〉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125
〈표 3-27〉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125



〈표 3-2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126
〈표 3-2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126
〈표 3-30〉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	127
〈표 3-31〉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	127
〈표 3-3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129
〈표 3-3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130
〈표 3-34〉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131
〈표 3-35〉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132
〈표 3-36〉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133
〈표 3-37〉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134
〈표 3-3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135
〈표 3-3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136
〈표 3-40〉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137
〈표 3-41〉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138
〈표 3-42〉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139
〈표 3-43〉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140
〈표 3-44〉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141
〈표 3-45〉 읍면동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142
〈표 3-46〉 직책별·참여기간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143
〈표 3-47〉 지자체 유형별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144
〈표 3-48〉 읍면동별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145
〈표 3-49〉 직책별·참여기간별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146
〈표 3-50〉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148
〈표 3-51〉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149
〈표 3-52〉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150
〈표 3-53〉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151
〈표 3-54〉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152

〈표 3-55〉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153
〈표 3-56〉	지자체 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154
〈표 3-57〉	읍면동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155
〈표 3-58〉	직책별·참여기간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156
〈표 3-5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157
〈표 3-60〉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158
〈표 3-61〉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159
〈표 3-6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	160
〈표 3-63〉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른 동의 정도	161
〈표 3-64〉	수준별 분석 사례 수	162
〈표 3-65〉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66
〈표 3-6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대한 다수준 모형	172
〈표 4-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목적·기능·역할 개편 방안	182
〈표 4-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 정원 및 현원, 증원 인력	185
〈표 5-1〉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다수준 모형 분석 결과 요약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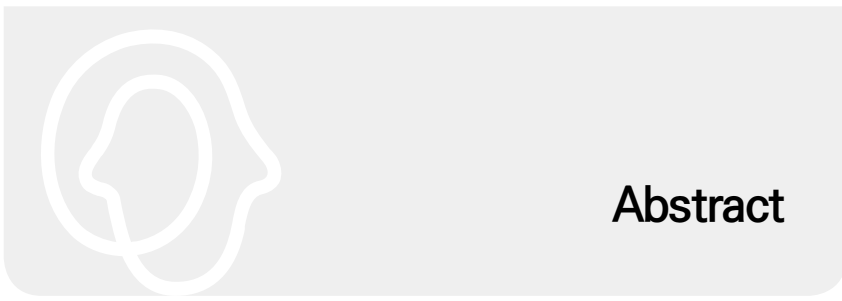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연구의 구성 체계	21
[그림 2-1] 주민자치회 단계별 모형 및 기능	39
[그림 3-1] 분석 자료의 구조	163
[그림 3-2] 분석 모형	164
[그림 4-1] 2020년 서대문구 동협의체(마뽀협의체) 지원 사항	187
[그림 4-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네트워크 사업 개요 · 190	
[그림 4-3] 서울시 서대문구 구협의체와 동협의체 협업 사업	192
[그림 4-4]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개요	194
[그림 4-5]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강동구 암사3동주민센터 1년 차 추진사례	195
[그림 4-6]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서대문구 동북지대학 4년 차 사업	196
[그림 4-7] 세종특별자치시 역량강화교육 사업 개괄	197
[그림 4-8] 세종특별자치시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사업 개괄	198
[그림 4-9] 창녕군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 과정 사업 개요	199
[그림 4-10]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개요	200





Abstract

Analysis of Community Governance Systems for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Eup*, *Myeon* and *Dong* Areas in Korea

Project Head: Kim, Hey 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distinctive orientation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associations in eup, myeon, and dong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SWAs in EMD)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improved roles and activities, by comprehensively diagnosing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them.

At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level, the key issues in operating the CSWAs in EMD can be roughly divided into 5 categories: First, in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xt,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roles of CSWA in EMD, i.e., either support for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or an initiativ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community engagement. Second, it is not clear how local resident-led activities are incorporated in the partnership structur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ird, it is not certain what principles are to be emphasized in managing the member configuration of CSWAs in EMD, i.e., either procedural representativeness and legitimacy or practicality

Co-Researchers: Kim, JinHee, Oh, Ukchan, Chae, Hyuntak, Hwang, Joungyoon

and inclusion. Fourth, in regard to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CSWAs in EMD, there is an issue of how to promote creative and experimental services, rather than offering simple home cares. Lastly, there is a wide variety in different localities of the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for CSWAs in EMD and their perform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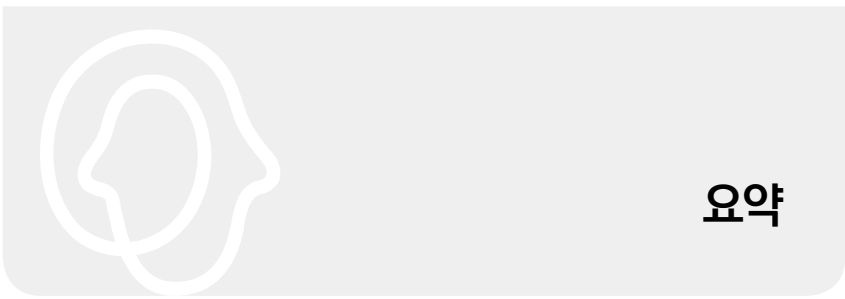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the welfare mix and the co-production of public policy, we set the key characteristic of CSWAs in EMD as “organized volunteering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based o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promote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in eup, myeon and dong areas.” In order to highlight its characteristic, the normative orientation of CSWAs in EMD can be conceptualized in following aspects of deliberation, practicality, and impact: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community engagement by strengthen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f decision-making. Second, encouraging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volunteer activities is needed by planning creative and innovative services. Third, efforts are required to build an ecosystem for facilitating the local voluntary sector.

CSWAs in EMD can function properly when they move along the following elements: First, improvement should be made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such as securing budgets and retaining staff members in CSWAs in EMD,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fficials in charge must be clarified.

Secon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must be enhanced, by managing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between CSWAs in EMD, and by facilitating the engagement and planning collaborative projects between CSWAs in city level and EMD level. Lastly,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member competencies of CSWAs in EMD such as organized education, consultation, and training of leaders in the local community.

Key words: Community Social Welfare Association, Eup, Myeon, and Dong areas, Community Welfare, Local Governance for Welfare Services, Community Particip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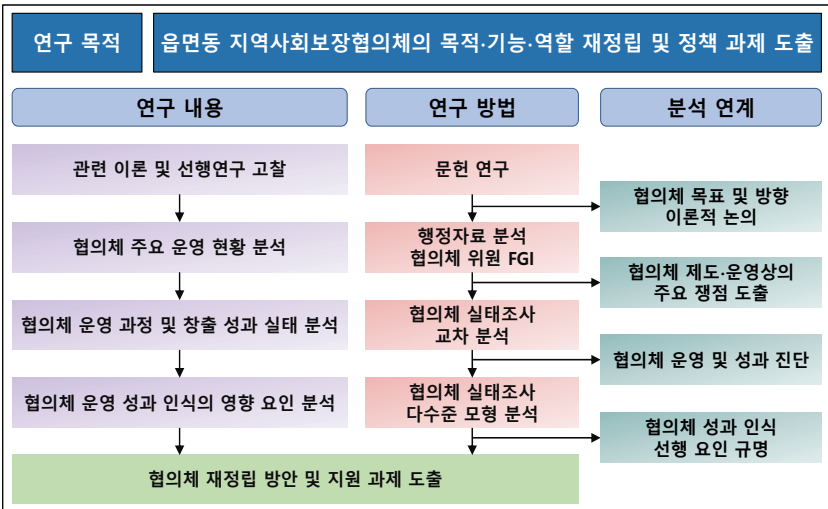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협의체의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협의체의 목적·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읍면동 협의체 주요 운영 현황 분석 및 쟁점 도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 분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읍면동 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읍면동 협의체 주요 쟁점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쟁점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지원 역할 수행 기관이라는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볼 것인가이다. 둘째는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민관 관계 구조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쟁점으로, 주민 주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이다. 셋째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 방식에서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쟁점으로, 협의체 위원의 위촉에서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하는가, 혹은 실천성과 인적 구성의 포용성을 강조해야 하는가이다. 넷째는 읍면동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쟁점으로, 단순한 형태의 재가서비스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및 지역 특성에 기초한 창의적·실험적 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이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시군구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의체 운영 성과에서 나타나는 쟁점으로,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과 운영 과정 인식 분석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 7대 지자체 유형별로 14개 지자체의 242개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구성원 2,304명을 대상으로 협의체의 민간위원 활동 현황과 운영 과정, 창출 성과와 발전 과제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활동 현황을 파악했다. 민간위원의 평균적인 활동기간은 약 4년(46.44개월)인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86.9%

가 읍면동 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모임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협의체 참여 동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44.1%)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34.2%) 이타적 사유가 지배적이었다.

둘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하여 파악했다.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점, 경제적 이득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에 관한 인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 우선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목표와 관련하여, 협의체의 추구 방향과 목표의 수립 정도(7점 만점에 5.96점)와 방향과 목표에 대한 위원들의 지지 수준(5.99점)에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 수준(5.76점)과 방향과 목표에서 우선순위 인지 수준(5.77점)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넷째,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과 관련하여, 협의체 참여 희망 주민 규모 인식(4.51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협의체 위원 배경의 다양성(5.24점)과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 수준(5.53점), 위원 개인의 특기 및 전문성 발휘 기회 수준(5.19점),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중시 수준(5.44점)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편이었다.

다섯째, 협의체 위원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기대 역할 이해도(5.59점), 협의체 활동 참여의 자발성(5.71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5.79점), 위원 상호 간의 참여 동기 유발(5.63점), 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5.85점)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여섯째, 협의체 위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경청과 존중의 태도 수준(5.82점), 민주적 의사결정 합의 수준(5.79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활발한 의견 제시 수준(5.65점), 지역사회보장 정보 탐색 수준(5.55점), 민관의 대등한 협력 관계 수준(5.69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일곱째, 자체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에 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먼저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관심 및 지지와 관련하여,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수준(5.62점), 협의체 공공위원장(읍면동장)의 적극성(5.86점), 읍면동 공무원(간사, 서기)의 적극성(6.04점)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끝으로 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지원(5.43점), 심화교육 지원(5.38점), 협의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5.07점), 협의체 운영 적극적 지원(5.22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협의체 운영 재정 지원(4.5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4. 읍면동 협의체 창출 성과와 발전 과제 인식 분석

첫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에 관한 인식을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파악했다. 협의체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도 및 협의체 충성도와 관련해, 협의체 활동의 즐거움(5.74점), 참여 성취감(5.60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자부심(5.69점), 협의체 지속 참여 의향(5.74점), 협의체 참여 타인 추천 의향(5.73점)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둘째, 협의체 조직적 차원에서의 성과 인식을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의 성과 측면에서 파악했다. 결정 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5.74점)과 지역 환경 및 주민 문제에 대한 고려(5.61점)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5.27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적 차원 성과의 두 번째 측면인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지속적 개선 노력(5.55점),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다양화 노력(5.64점),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5.50점) 등에서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넷째, 조직적 차원 성과의 마지막 측면인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5.29점), 직능단체(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5.23점),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지지 증대(5.17점) 등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다섯째, 읍면동 협의체의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을 파악했다. 먼저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영예산·기부금(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확충 필요성(전체 응답자 중 동의 89.3%), 유공자 포상제도 필요성(82.2%), 지역복지문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90.9%), 협의체 위원 지도력(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89.8%), 협의체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성(90.9%) 등 모든 지원 과제에 대해 응답자 절대적 다수가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양자의 운영 취지와 목표의 상이성(전체 응답자 중 동의 70.3%), 양자의 사업 대상과 성격의 상이성(68%), 양자의 기구 분리 유지 필요성(74.6%), 양자 간의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78.7%), 양

자 간의 공동 협력 사업 확대 필요성(81.5%) 등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를 표명했다.

5.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성과 인식에 미치는 선행 요인을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협의체 민간위원 개인적 차원의 성과 인식에서는 협의체 활동 만족도 및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협의체 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에서는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라는 세 가지 종속변수를 설정해 총 4개의 분석 모형을 설계했다.

독립변수로는 시군구 단위 지역 변수에 환경적·재정적 요인을 포함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 변수에 협의체 환경적 요인과 협의체 조직 요인을 포함했으며, 개인 변수에 지자체 재정 요인, 협의체 조직 요인을 포함하고, 개인 변수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협의체 활동 속성, 협의체 운영 효과성 인식,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을 포함했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협의체 운영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협의체 운영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에 매우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동 및 시군구의 협의체에 대한 지원 인식 역시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읍면동 수준에서 측정한 변수 중 협의체 운영예산 지원 변수는 협의체 조직적 차원의 운영 성과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읍면동 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읍면동 협의체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등 법령과 관련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역할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 공급의 다원화와 관련된 복지혼합(welfare mix) 모형과 행정과정론의 정책 공동생산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기본적 성격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지역주민의 조직화된 자원활동”으로 규정했다. 즉, 읍면동 협의체 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원활동을 통해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사업의 기획·집행·평가를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고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범적 지향성을 숙의성, 실천성, 파급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숙의적 의사결정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둘째, 창의적·혁신적 사업의 기획을 통한 주민참여 자원활동의 고도화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자원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 부문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규칙,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 역할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 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첫째,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①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 확충, ② 시군

구 협의체 전담인력 충원, ③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관련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제시했다. 둘째, 시군구 협의체·읍면동 협의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해 ① 읍면동 협의체 연합회 구성·운영, ②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다각화, ③ 읍면동 협의체와 시군구 협의체 협업 사업의 추진을 제시했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①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교육 및 컨설팅의 체계적 지원, ② 지역복지리더 육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제도적 측면의 정책 과제로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유사 계획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 복지거버넌스, 주민참여, 민관협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일선 행정 단위인 읍면동은 그간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복지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변모되어 왔다. 그 변화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협의체)는 지역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동네거버넌스 기구로 제도화되었고, 2020년 현재 읍면동 협의체는 참여인원이 65,708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성장했다(보건복지부, 2020a).

읍면동 협의체의 전신은 2014년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 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 지역특화사업 등의 역할을 하는 ‘민관협의체’가 설치·운영·전개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에 제정되면서 전국 읍면동에 읍면동 협의체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보면,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제41조 제7항)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련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은 ①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2016~17년에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을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을 중심

으로 개편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했다(보건복지부, 2017a). 이러한 주요 기능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민관협력 활성화를 강조했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읍면동 협의체에 그 중심적 역할을 부여했다(보건복지부, 2017a). 2018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읍면동 협의체를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이 사업의 두 가지 부문 중 하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1).

이와 같은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주요 제도와 정책의 개편 과정을 큰 틀에서 보면, 민관협력의 제도화가 보다 진전되면서 주민참여를 강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자원의 발굴·공유·연계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기획·결정 단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협의체는 그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여러 쟁점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관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거나 혹은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을 도구화하려는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지역복지자원이 부족하고 운영 역량이 미흡하다 보니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상 여러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의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인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에서 기능의 유사성과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혼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읍면동 협의체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협의체의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협의체의 목적·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에서의 주민참여라는 맥락에서 읍면동 협의체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와 의의가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현황에서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협의체의 운영 과정과 창출 성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성과 창출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종합해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하고 지향해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 관련 법률의 개편 방안과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간 읍면동 협의체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의 사례에 국한되거나 개인 중심의 제한된 변수만을 고려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는 한계점이 드러나 있었다(오민수, 2016; 박기용, 2017; 김종건, 배은석, 손지현, 이미라, 2020; 정아원, 강병덕, 박준혁, 정숙희, 2020; 이영글, 박성준, 함영진, 2021). 이 연구는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이론적·제도적·운영적 측면을 본격 조망한다는 점에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이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운영 현황 분석 및 쟁점 도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 분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읍면동 협의체의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도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검토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의와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동네거버넌스의 주요 공적 기구인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이론적 시각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면서 양자 간에 차별화된 목표와 지향성을 논의하였다. 또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 거버넌스 역량, 커뮤니티 임파워먼트(community empowerment) 및 커뮤니티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 임팩트 자원활동(impact volunteering)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군구 협의체의 실태와 현황에 관련된 연구,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쟁점과 한계 등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진행된 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주요 경험적 연구 등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파악했다.

둘째, 읍면동 협의체 관련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5대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읍면동 협의체 참여인원, 조직운영, 추진활동, 시군구의 지원체계 등과 관련된 현황을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7대 유형을 구분해 비교·분석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법적·제도적 맥락, 민관 관계 구조 특성, 참여주체 특성, 서비스 제공 특성, 활동 성과 등의 측면에서 주요 운영 쟁점을 도출했다. 셋째,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 7대 지자체 유형별로 14개 지자체 중 총 242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읍면

동 협의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과정과 창출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는 읍면동 협의체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되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세 차례 FGI와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임원진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 조사를 중심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1년 7~8월이었다. 조사 대상인 14개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은 총 4,013명이며, 실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2,304명(응답률 57.4%)이다. 조사 내용에는 응답자 일반 현황,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인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표 1-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조사 표본 현황

(단위: 명)

구분	시군구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모집단	229	3,490	58,013
표본집단	14	242	4,013
응답 표본 (응답률)	14	242	2,304 (57.4%)

〈표 1-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 내용

영역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연령, 성별, 현재 직책, 소속 단체·기관 등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1개 항목)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경력(2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1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1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등의 정도(5개 항목)

20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영역	세부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1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4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5개 항목)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3개 항목) •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5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 인식(5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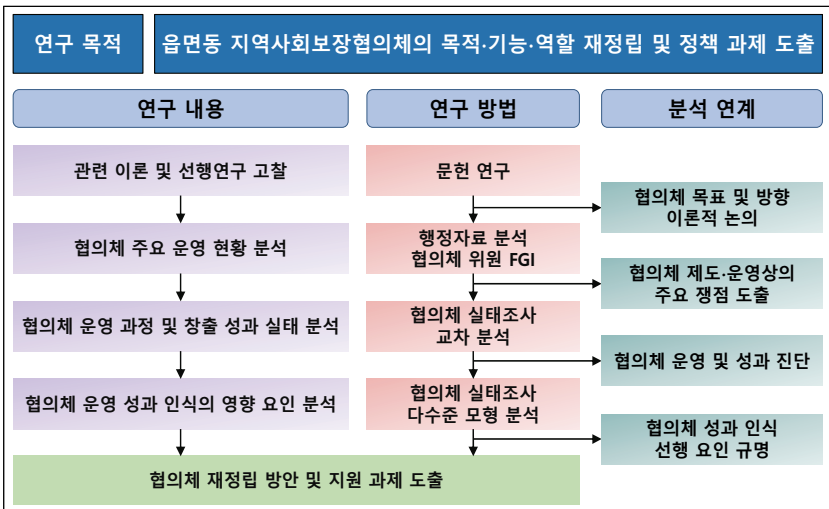
다섯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및 창출 성과를 분석할 때에는 실태 조사 자료에 기초한 기술통계 분석을 제시했다. 이 통계 분석에서는 모집단의 분포와 조사 응답률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0년 기준 읍면동 협의체 전국 민간위원 모집단에서 지자체 7대 유형의 민간위원 분포를 반영한 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을 겸직한 경우에 응답한 일부 문항에서는 2020년 기준 7대 지자체 유형별로 겸직 민간위원의 분포를 반영한 가중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집단 간 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 지자체 7대 유형별, 읍면동별, 읍면동 단위 평균의 상위 20%와 하위 20%, 임원·일반위원 직책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별 등의 하위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여섯째, 읍면동 협의체의 성과 인식을 민간위원 개인적 차원과 읍면동 협의체 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으로 구분하고 관련 영향 요인의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읍면동 협의체의 성과 인식의 선행 요인은 개인·읍면동·시군구 수준으로 구성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협의체 활동 속성·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으로, 읍면동 수준에서는 협의체 환경적 요인·협의체 조직 요인으로, 시군구 수준에서는 환경적·재정적 요인으로 설정된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내용과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대상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체계







제2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론적 고찰 및 운영 현황·쟁점 검토

제1절 동네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고찰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제4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쟁점



제 2 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론적 고찰 및 운영 현황·쟁점 검토

제1절 동네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고찰

그간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의 주요 문제를 다양한 지역사회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기제”로서(주재복·한부영, 2006, p.28), 높은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Mutchler, S. E., Mays, J. L., & Pollard, J. S., 1993; Andrew & Goldsmith, 1998, p.107).

최근에는 로컬 거버넌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보다 하위 단위인 ‘동네’ 차원의 거버넌스에 그 관심이 보다 집중되고 있다. 동네는 지방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자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핵심 공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동네를 중심으로 한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이배, 2016, p.684).

동네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확대 경향은 복지 부문에서도 뚜렷이 관찰된다. 사회보장급여법(제14조와 제41조)에 의해 2015년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는 이러한 읍면동의 다중적인 역할에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 방식이 혼합되어 적용된 조직이다. 하향식 정책 기획-집행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강혜규 외, 2018a, p.11), 복지거버넌스가 지역공동체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바로 읍면동 협의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2005년부터 시작된 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버넌스 경험이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방식에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동네거버넌스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한 고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읍면동 단위에서의 동네거버넌스의 의미

읍면동 협의체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동네거버넌스(neighborhood governance)이다. 최근 지역거버넌스의 단위로서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단위가 바로 ‘동네(neighborhood)’이다. 지방이라는 단위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의 지리적·공간적 경계가 동네에 해당한다.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국가 하위 차원(subnational level)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로서 시민 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한다면, 동네거버넌스는 동네라는 하나의 지역적 하위 단위(sub-local level)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장치(arrangements)”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문병기, 2003, p.30-31; Lowndes & Sullivan, 2008, p.62; Durose & Rowndes, 2010, p.343; 곽현근, 2010, p.231).

동네는 주거의 인접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근린, 마을과 유사한 용어이다. 여기서 근린은 사전적 의미로 풀면 가까운 이웃을 뜻하고 있어 장소적 개념이 빈약하며, 마을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공통된 생활을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조되므로 다분히 가치지향적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동네는 비교적 가치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하다(곽현근, 2012a, p.3). 이러한 동네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 볼 때, 그 규모의 형태와 성격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일선 행정구역인 읍면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리적 영역을 동네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 인접성을 고려한 동네의 지리적 영역을 읍면동으로 한정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맥락에서의 읍면동은 법적·행정실무적 자치라는 영역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최지민, 강영주, 2020, p.17-18).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의 침투 과정상 가장 단위가 작은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정부(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 둘째 상위 정부로부터의 하향적 추진력과 근린 단위의 상향적 추진력을 가진다는 점, 셋째 읍면동 이하의 행정수행 과정 단위인 통·리·반을 총괄하여 연계시킨다는 점이 그것이다(조석주, 2003). 또한 읍면동은 비교적 제한된 공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근린 단위로서,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생활을 방위·개선·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가 협동하고, 자율적·자조적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김상영, 2000, p.63-68; 김필두, 류영아, 2008, p.59). 이러한 읍면동은 가장 하위인 행정계층으로서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김홍환, 2018b, p.6).

동네거버넌스 체계로서 읍면동 단위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주민자치회(혹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 협의체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읍면동 협의체 조직은 지역 내 민관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외형적으로 이 조직을 동네거버넌스 체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거버넌스 체계가 읍면동 단위의 복지 부문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그 평가 또한 다양하다.

특히 최근 들어 복지 부문에서의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제도와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양자 간의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혼선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동네라는 공간적 영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에 중점을 둔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에 방점을 둔 읍면동 협의체 간의 목적과 활동 면에서 개념적·정책적으로 혼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동네거버넌스의 양 축인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협의체를 둘러싼 주요 개념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이론적·개념적 자원을 바탕으로 동네거버넌스로서 읍면동 협의체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동네거버넌스로서의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사회보장 영역에서 ‘동네’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동네는 그 안에 개인 차원에서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이 위치할 뿐 아니라 교육, 생활 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적·물리적 단위에 해당한다(Taylor & Wilson, 2006, p.5; Durose & Rowndes, 2010, p.34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하위의 행정계층인 동네라는 지역 수준에서 서비스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취약해 사람들의 선택이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큰 소외지역(disadvantaged neighborhood)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Taylor & Wilson, 2006; Smith, I., Lepine, E., & Taylor, M., 2007).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경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편

적 형평성의 원리보다 특수한 형평성의 원리에 기초한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김희연 외, 2012). 이런 특수한 형평성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은 개인 또는 개별 가구의 특성을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세부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파악하기 쉬운 동네, 즉 읍면동 단위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영글, 하현상, 함영진, 박성준, 2018, p.24).

1)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동네거버넌스 체계로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바로 읍면동 협의체이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중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과 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부문을 대표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서 2015년 7월 1일에 구성되어 현재(2021년 6월 말 기준)에 이르기까지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거쳐 발전해 왔다. 2015년 7월 1일부터 그 설치가 본격화되었는데, 그전에도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활동 영역으로 복지통장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위원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마련된 터라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읍면동 협의체는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의 인적 안 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자원의 발굴·연계 등을 목적으로 한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a, p.34; 홍선미, 2016).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따라 읍

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체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만을 놓고 해석해 보면, 이는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2020)에 따르면 읍면동 협의체를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보건복지부, 2020a, p.34)로 정의하고 있어 이것과 법적인 개념 정의는 차이가 있다. 읍면동 협의체의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기되어 있다. 그것은 ①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은 ① 복지 대상자 발굴, ② 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③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 정립 및 연계, ④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규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a, p.71-80).

이렇듯 읍면동 협의체의 사무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경계를 넘어 동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더욱 광범위한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관심 또한 덩달아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협의체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그 답은 읍면동 협의체가 복지혼합의 시각에서 볼 때 시민참여에 기초한 지역복지와 자원복지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복지행정 측면에서 중요한 거버넌스 도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복지혼합(welfare mix)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

ism) 관점이다. 복지혼합이란 국가와 시장, 제3섹터, 가족·이웃 등이 상호 연계하면서 하나의 복지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Powell, 2007/2011) “정부 중심의 복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등이 복지 공급에 가담하여 상호 연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진욱, 2011; 함영진, 2017, p.45 재인용). 1970년대 이후 나타난 국가 재정의 자율성 감소,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신뢰와 지지의 저하,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을 부각시켰다(김영순, 최현수, 이윤경, 방효정,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영역에서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쟁과 대응성에 기초한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복지 공급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복지혼합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함영진, 2017, p.44-45).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혼합은 4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되는바 가족(family), 공공 부문(state),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 영리 부문(for-profit sector)이 그것이다. 가족은 상호 연대와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하며, 공공 부문 또는 국가는 위계와 공식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 부문은 가치에 따른 자발주의(voluntarism)가 중심이 되며, 마지막으로 영리 부문은 이윤추구와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부문과 차별화된다(Bahle, 2003; 김영순 외, 2007, p.39 재인용). 그에 따라 복지혼합의 요소들 또한 가족이 중심이 되는 비공식 복지(informal welfare), 국가와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는 국가복지(state welfare), 비영리 부문과 제3섹터가 중심이 되는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 영리 부문이 중심이 되는 시장복지(market welfare)로 구분된다.

국가와 시장, 자원과 비공식 분야가 어우러진 복지혼합은 시간의 흐름

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복지가 우세한 양상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복지가 우세한 양상을,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비영리 부문을 중심으로 한 복지혼합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김영순 외, 2007, p.51-5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로 인해 유교주의적 전통이 약화되고,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도래 등으로 인해 복지 영역에서 가족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신동면, 2001, p.221-222). 반면, 새로운 사회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제3섹터의 역할은 점차 커져 갔다. 이러한 복지 부문에서의 변화는 더욱 확장된 형태의 시민참여(greater citizen involvement)를 요구하게 되었다(Taylor-Gooby et al., 2020, p.63). 그에 따라 복지 부문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읍면동 협의체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협의체는 이러한 복지혼합 속에서 지역사회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 영역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자원기관(voluntary)을 동원하고 지역복지 영역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지역 영역과 자원 영역의 내부는 많은 자원단체와 지역기구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과 구조를 띠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는 많은 부분에서 개인적 관계, 이웃, 사회적 연결망 등과 같은 원칙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포웰, 엠. 2007/ 2011, p.150; 김진욱, 2005, p.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혼합 속에서 지역사회와 비영리 부문에 대한 지역·자원 영역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지역·자원 영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 공급의 형태가 공공이나 시장 등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상당한 비교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갖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선호와 형평을 고려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차별화된 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경우에는 주주(shareholder)나 사적 이해관계자와 같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경향성이 크다(Billis & Glennerster, 1998, p.84-88). 반면, 자원 영역에 포함된 다양한 비영리조직과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시장에서의 공급, 무보수성 자원봉사와 보수에 의한 근로(paid work) 등 다양한 형태의 독특하고 모호한 혼합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hybrid structure)에 기초하여 활동하므로 복지 공급에 있어 개인이나 사회, 지역 측면에서 여러 이점을 지닐 수 있다(Billis & Glennerster, 1998, p.95). 또한 이들의 활동은 수직적·위계적 형태를 띠거나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향하는 자산과 연결되는 박애적 형태를 띠 뿐 아니라 수평적이고 자조적인 상호 작용적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자율성과 공익성(common good)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의 혜택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영리조직과 차별화된다고(포웰, 엠. 2007/ 2011, p.31-33; 정진경, 2012, p.35-36).

특히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읍면동 협의체처럼 시민참여에 기초한 지역·자원 영역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혼합에서는 가족·가정 내 업무 분담(internal division of work)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주민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강조된다(Lewis, 1992; Sainsbury, 1994; Taylor-Gooby et al., 2020, p.63). 지역주민의 참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와 서비스 제공 기관(service associations) 등에서의 활동·역할, 자원봉사(voluntary work) 등과 같은 지역·자원 영역을 둘러싼 광범위한 활동의 참여로 표현되며(Evers, 2005, p.740), 이

는 복지 공급에 있어 국가나 시장에서의 역할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복지 국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시적 수준에서 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에 있어 더 많은 시민참여와 제3섹터의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 또는 체제(regime)로 대변되며, 확장된 복지다원주의를 실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Pestoff, 2009, p.298). 이런 점에서 볼 때, 결국 읍면동 협의체는 시민참여에 기초한 복지혼합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적·헌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자원 영역이 상호 연계된 복지혼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읍면동 협의체이다.

한편,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혼합의 관점뿐 아니라 복지행정 과정상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적극적 시민참여에 기초한 정책 공동생산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동생산이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규생산자(regular producers)와 소비생산자(consumer producers) 간 생산적 노력들의 결합”을 가리킨다(Parks et al., 1981; 이재용, 김지수, 2020, p.49 재인용).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행정 또는 정책의 공동생산이란 “공공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의 기획(planning), 설계(design), 전달(delivery), 평가(assessment) 등 각 단계에서 정부가 제한된 문제 해결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사회활동가, 정책 결정의 이해관계자(혹은 이해당사자) 등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Voorberg, Bekkers, & Tummers, 2015; Sorrentino, Sicilia, & Howlett, 2018, p.279-280; 권향원, 윤영근, 2020, p.4 재인용).

요컨대 공동생산의 핵심은 그간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소비자였던 민간, 그중에서 특히 시민을 ‘생산자’로도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과정에 있어 정부와의 협력에 기초하여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

고 정부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시민참여(active participation)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단순히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형태의 참여(information)나 시민이 정부에게 환류(feedback)를 제공하는 쌍방향적 형태의 협의적 참여(consultation)와는 구별되는 더욱더 적극적 형태의 참여라 볼 수 있다(OECD, 2001, p.23; Fedotova, Teixeira, & Alvelos, 2012, p.154).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공동생산은 기획-집행-평가라는 각 단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기획 단계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공동기획(co-planning 또는 co-commissioning)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설계(co-designing)를, 집행 단계에서는 민간이나 시민의 도움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의 공동집행(co-implementation) 또는 공동전달(co-delivery)이나 주어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공동창출(co-creation)을,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환류의 과정인 공동평가(co-assessment) 등을 포괄하는 활동이 정책의 공동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권향원, 윤영근, 2020, p.4).

특히 공동생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책의 계획과 결정,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또는 민간)이 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점(전 과정적 참여), 둘째 자발적으로 참여와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자발적 민간참여), 셋째 시민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야만 한다는 점(균형적 역할), 넷째 참여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는 동시에(상시적 상호 작용), 다섯째 정책의 결과 및 평가에 따른 사후적 책임을 공유·

확보해야 한다는 점(책임성)이 바로 그것이다(이재용, 김지수, 2020, p.50). 따라서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조 생산이나 민간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평행생산(parallel production) 등은 진정한 형태의 공동생산이라 볼 수가 없다.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미루어 볼 때,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추진하는 활동은 기획 단계에서의 공동생산에, 지역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은 집행 단계에서의 공동생산에, 나아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은 평가 단계에서의 공동생산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읍면동 협의체와 활동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의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는 곧 정책 공동생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생산을 일반적으로 시민참여에 기초해 민주적 행정서비스의 실천에 기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최석현, 김재신, 2018), 읍면동 협의체 또한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민주행정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읍면동 협의체를 사회보장체계와 주민조직으로의 구성적·기능적 특성이 함께 포함된 주민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a; 박태영, 채현탁, 2014; 채현탁, 2015). 물론 이때의 거버넌스는 지역주민들이 정부와 같은 타 행위자들과 서로 다른 집합체로서 평등하고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 형태라기보다는, 근린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소통과 상호 작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도구적 혹은 약한 수준의 거버넌스에 해당한다(곽현근, 2012b, p.12; 곽현근, 2015, p.286; 권향원, 윤영근, 2020, p.5).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혼합과 공동생산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체로서 자발적·민주적 시

민참여 활동에 근거한 협의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라는 원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지역공동체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대응하는 과정이 핵심이 된다.

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초의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초대된 공간’에까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생산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곽현근, 2015, p.286-287).

동네거버넌스로서의 주민자치는 ‘주민주권(resident sovereignty)’과 크게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인 데 반해, 주민주권은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주민주권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서 ‘지방 민주주의(local democracy)’의 원리와도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주민주권은 지방민주주의 원리 중에서도 특히 지방정부 주인으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사결정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ogge, 2002, p.50; Castiglione & Warren, 2013, p.157; 곽현근, 2020, p.35 에서 재인용).

개념적 차원에서 볼 때, 주민자치는 광의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념상으로 광의의 주민자치는 “지방정부를 주민의 의사와 통제 하에 두는 다양한 민주적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협의의 주민자치는 “최근에 주목하게 된 지역공동체 단위의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의미한다(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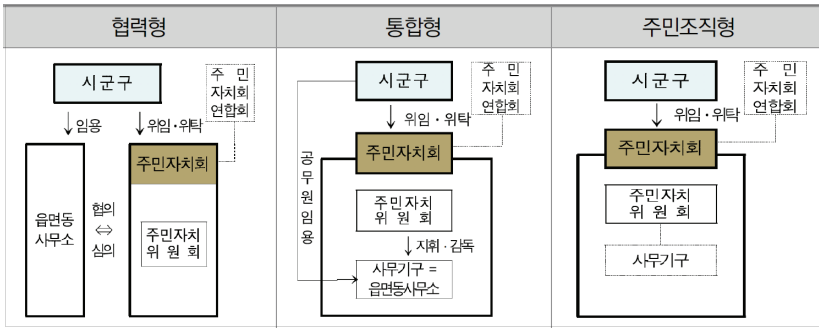
근, 2015, p.287). 그간 선거 또는 직접민주제 방식에서 광의의 주민자치가 정책 영역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광의의 주민자치 개념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민주적 기제가 확장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 동네거버넌스라면, 행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동네거버넌스 차원의 주민자치 조직은 2010년 10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형태의 조직이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정의하는데,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크게 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2013년 안전행정부는 전국 단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총 3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곽현근, 2015, p.279). 이후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동네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대의 민주적 자치에 반영된 소극적 수준의 주민자치를 넘어 공식적인 정치행정 과정의 참여와 주민의 역량강화라는 공동체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 의미를 주민자치에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곽현근, 2015, p.287).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그 지위와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읍면동사무소)와의 관계에 있어 소극적 주민자치부터 적극적 주민자치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모델을 크게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구분한다(정진현, 2015, p.3-5; 최길수, 2019, p.51-53).

먼저, 협력형은 가장 소극적 형태의 주민자치 모델로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병렬적으로 설치된 형태이다.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그대로 두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시군구나 읍면동으로부터의 위탁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형은 협력형보다 자치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델로서 읍면동 행정기구가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주민자치위원장은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소유하게 된다. 통합형은 완전한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모델로서 협력형과 주민조직형 사이의 중간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형태이다.

[그림 2-1] 주민자치회 단계별 모형 및 기능



자료: 정진현. (2015).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 p.3. http://cla.hanyang.ac.kr/default/sub3/sub33.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28&&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com_board_id=10&&com_board_id=10에서 2021.9.17. 인출.; 최지민, 강영주. (2020).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기능의 수행 실태 분석. p.69.

주민조직형은 동네거버넌스로서 주민자치가 협력형이나 통합형보다 더 확대된 모형으로,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형태이다. 최근에는 김영배 국

회의원이 '21년 2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보다 확장된 형태의 주민자치 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동네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영배 국회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이를 종합해 볼 때,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치공간과 자치기구의 마련을 통해 민주성을 향상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네거버넌스 체계임을 알 수 있다(김홍환, 2018a).

이렇듯 동네거버넌스로서의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는 모두 주민 또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자발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읍면동 협의체의 시민참여는 주민자치회의 시민참여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협의체는 모두 주민참여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핵심으로 한 자율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보이나, 그 활동의 목적과 대상이 정치/행정 측면에서 민주성 강화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두 기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측면에서 주민과의 밀착성 및 민관협력의 제고라는 점에 원칙적 지향을 둔 반면, 주민자치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 이상적 목표를 두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의 발달 궤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볼 때, 주민자치와 복지의 혼합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며 국가와 시민의 대등한 협력 관계를 포괄하는 한편, 복지에서의 민주성이란 과정 또는 방법상의 원리로서 이해되기도 한다(김이배, 2021, p.115-119). 그에 따라 주민자치와 복지를 연계할 경우 시민참여라는 공통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여러 긴장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이나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 등은 운영 과정에 있어 여러 비판과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주민자치와 같은 행정 영역과 복지 영역의 연계를 위한 시도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김이배, 2021, p.110).

주민자치는 외형적으로 시민참여에 기초한 능동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정부-시민 간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김이배, 2021, p.125). 흔히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시민참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당성의 확보와 대의 민주주의에 기초하기에, 이때의 시민참여는 정치적 효능감 향상이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강조하는 쪽으로 논의된다(이승중, 1993; 김익식, 2003, p.50). 반면, 읍면동 협의체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의 요소는 탈정치적이며 보다 기능적인 측면의 민주성에 해당한다. 읍면동 협의체에서 나타나는 시민참여는 ‘공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솔루션을 탐색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해당하며(Adams & Hess, 2010; 이수경, 2014; 권향원, 윤영근, 2020, p.6 재인용), 그렇기에 이때의 시민참여는 자율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협의체는 모두 시민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정치력의 확대와 시민성의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네거버넌스로서 읍면동 협의체가 지닌 차별적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읍면동 협의체가 지닌 차별적 요소와 성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과 기능 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은 동네거버넌스로서 읍면동 협의체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차별적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복지혼합과 정책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지역·자원 영역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 역량 향상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 역량(governance capacity), 커뮤니티 임파워먼트(community empowerment) 및 커뮤니티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 그리고 임팩트 자원활동(impact volunteering)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거버넌스 역량

흔히 바람직한 거버넌스라고 일컬어지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와 과정 중심의 거버넌스로서, 시민자치 역량에 의해 그 개념이 정의된다(장수찬, 2013, p.6; 김정희, 2015, p.137). 동네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인 읍면동 협의체 또한 굿 거버넌스의 요소들과 거버넌스 역량을 확보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굿 거버넌스에는 복합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의 개념

으로 정의되기보다는 거버넌스가 지닌 핵심 원칙들과 내용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경우 거버넌스 역량은 읍면동이라는 작은 지역 단위에서 제시되기보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기에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하위 지역 단위에서 제시되는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동네거버넌스 또한 거버넌스의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들과 이를 분석·측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거버넌스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의영(2011)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굿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굿 거버넌스의 목표를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실질적 권한 및 영향력 행사의 정도와 주민들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성과측정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 역량을 크게 ①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의 규범과 같은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② 리더십, 자원, 인프라 및 제도와 같은 지역 수준의 제도적 자본, ③ 개혁적 시민사회 전통이나 문화 등을 의미하는 지역사회의 개혁적 역량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의영, 2011, p.22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정희(2015) 또한 굿 거버넌스의 분석지표를 참여성, 책임성, 반응성, 제도화 등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주민참여와 영향력의 균등성, 주민의 권한행사와 책임의 제도적 보장 유무, 주민 의견의 소통 및 수용성, 정책의 제도화 및 실행 수준을 통해 굿 거버넌스의 수준을 살펴보아야 함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44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Community(2007)는 보다 직접적 차원에서 거버넌스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제시하였으며, Koop et al.(2017)는 거버넌스 역량 프레임워크(governance capacity framework)를 통해 거버넌스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 거버넌스 역량 평가 도구(assessment instruments)

요소	주요 내용
구조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기구의 목표, 구성원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공식적이고 잘 확립된 가이드의 유무 공식적 절차의 유무 및 구성원들의 인지 정기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의 진행 구성원 간 권력 및 의사결정 권한의 분배
책임성 및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 사항(commitment)의 이행 지역주민과 자금제공자 및 구성원 간 책임성 목표 설정과 절차, 책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여 의사결정에 있어 리더의 역할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대표성 확보 민간 부문, 정부 및 비영리 참여자의 포함
응집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된 의견의 표명 및 공통된 견해의 공유 기본 목표와 비전의 일관성 및 지속성 구성원의 지속성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목표의 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적시성 구조의 효과성 및 업무 수행의 용이성 지속 가능성 계획의 보유 재정자원 확보 및 동원 계획의 보유

자료: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2007). Guide to Measuring Community Core Capacities for Comprehensive Change Initiatives, p.72-74 내용을 재구성. <https://communityscience.com/wp-content/uploads/2021/01/Guide-to-measuring-community-core-capacities-2.pdf>에서 2021.10.01. 인출.

거버넌스 역량과 관련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주로 참여적·민주적·과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방향 설정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지지하며,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 교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표성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성원 간 학습이나 소통의 기제, 나아가 외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2-2〉 거버넌스 역량 프레임워크(governance capacity framework)

요소		주요 내용
인지 (knowing)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지식 지역의 위기의식(local sense of urgency) 행태의 내재화
	유용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가용성 정보 투명성 지식 응집력
	지속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모니터링 평가 이해관계자 간 학습
욕구 (wanting)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포용성 핵심 가치의 보호 다양한 절차와 선택권
	관리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지 있는 현실적 관리 담론의 내재화 관리 응집력(management cohesion)
	변화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적 행위자 협력적 행위자 선구적 행위자
활성화 (enabling)	다수준 네트워크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 및 여유 기회(room to manoeuvre) 명확한 책임 분담 권한
	재정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affordability) 소비자 지불 의사 재정적 지속성
	실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도구 법적 준수 대비성(preparedness)

자료: Koop et al. (2017). Assessing the Governance Capacity of Cities to Address Challenges of Water, Waste, and Climate Change, p.3431.

이를 읍면동 협의체 활동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참여적·민주적·과정적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구성원들에게는 보다 명확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상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함과 동시에 이들 간의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책임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협의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성을 적절히 부여하고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소통 및 학습, 참여의 지속성과 안정성 같은 요소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체 활동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 민주적 의사결정이 증점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및 커뮤니티 리더십

커뮤니티 임파워먼트(community empowerment)는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혹은 공동체 역량 등으로도 일컬어지는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이를 “커뮤니티(지역사회)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과정(the process of enabling communities to increase control over their lives)”으로 정의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유사한 맥락에서 Scottish Government(2009, p.8) 또한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a process where people work together to make change happen in their communities by

having more power and influence over what matters to them)”으로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스스로 통제·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srael, Checkoway, Schulz, & Zimmerman, 1994, p.152).

Campbell and Erbstein(2012, p.67)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목표의 명확성, 정당성(legitimacy), 자원 동원, 정책 개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Butterfoss(2006, p.331) 또한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 참여자 및 조직의 다양성, 새로운 구성원의 확보와 유지, 활동 역할, 참여의 이점과 과제, 참여 과정에 대한 만족도, 권력과 리더십의 균형 등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나아가 Kasmel and Anderson(2011, p.804)은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에 있어 커뮤니티의 활성화(community activation), 커뮤니티 역량(community competence), 프로그램 관리 능력(program management skills), 지원 환경의 조성(creation of supportive environment)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지원과 정보 공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될 때 커뮤니티 임파워먼트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Fetterman(2005a, p.3)은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평가(empowerment evaluation)를 “지역사회 역량의 향상과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평가의 개념(concepts), 기술(techniques), 결과(findings)의 활용”이라고 정의하면서, 바람직한 커뮤니티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려면 임파워먼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였다. 임파워먼트 평가는 ①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프

로그래ムの 계획, 구현 및 자체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과 동시에 ② 프로그램의 기획·관리의 관점에서 평가를 중요한 과정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자원 영역
을 활성화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Wandersman et al., 2005, p.28).

Fetterman(2005b, p.42-72)은 다양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
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커뮤니티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요
소들을 ① 개선(improvement), ② 공동체 주인의식(community own-
ership), ③ 포용(inclusion), ④ 민주적 참여(democratic partic-
ipation), ⑤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⑥ 공동체 지식(community
knowledge), ⑦ 근거 기반 전략(evidence-based strategy), ⑧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⑨ 조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⑩
책임성(accountability) 등 열 가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표 2-3〉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평가 원칙(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assessing levels of commitments)

구분	주요 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역량강화와 개선에 주안점을 둔 평가 시행 • 평가 논리의 내재화 및 적절한 수단·도구의 제공 • 평가의 체계성, 엄밀성(rigorous), 유용성의 유지 및 전반에 대한 책임 • 장기적·연속적인 평가의 장려와 재정적 지원의 제공 • 자율적 관리(govern itself)와 독자적 평가/프로그램 결정과 권리 존중
공동체 주인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 대한 인식 및 책임의 공유 • 평가 내용 및 결과에 기초한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관리적 책임 및 독립성과 자율성의 고려 • 평가의 제도화 지원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 포함 • 임파워먼트 평가를 위한 인력의 확보 • 다문화적 참여 및 종교/정치/문화 측면의 리더 존중 •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투입,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적 노력
민주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참여를 위한 준거틀 확보 •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의 모니터링 및 정보 피드백 • 민주적 참여의 관점에서 비판 및 불만의 즉각적 대응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정의 및 자기결정 관련 어젠다에 집중할 수 있는 평가와 맥락 설정 • 사회적 정의 확립에 기여하는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지원 • 최하위계층(those in the greatest need)의 복지를 고려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포함한 확장된 사회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의 기획과 결과 활용
공동체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지식에 대한 존중 및 가치 부여 • 평가에 있어 공동체 지식 활용 및 메커니즘 제공 • 평가의 맥락, 평가 기획, 평가 결과의 제공 등에 있어 공동체 지식 활용 • 공동체의 지식 및 사례의 공유
근거 기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기반 전략의 탐색 및 공유, 모니터링 • 지역공동체의 지식과 근거 기반 전략의 결합 • 유사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근거 기반 전략의 성공 사례 공유 • 근거 기반 전략의 적용 결과에 따른 공동체 전략 활용 또는 폐기 결정에 대한 존중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활용 방법 교육·훈련 및 자체 평가 지원 • 평가의 내재화 및 제도화 • 평가에 필요한 교육 지원 및 전문가/컨설턴트를 포함한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관리 및 자원 동원 기법의 공유
조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학습 접근 방식을 위한 워크숍 및 훈련 교육 등 제공 • 의사결정에 있어 학습 조직 피드백 순환(learning organizational feedback loops) 지원 • 의사결정의 투명성 향상 • 지속 가능한 조직 학습 제도화 및 재정 지원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성 확보 교육 및 지원 • 프로그램 및 평가 수행,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 부여 • 예상된 결과(promised results)에 대한 책임 부여 • 현실적·지속 가능한 방식의 지원 책임 부여

자료: Fetterman, D. M. (2005b). Chapter 3: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p.55-72 내용을 정리·재구성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와 유사한 맥락에서 커뮤니티 리더십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리더십이란 “공동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스킬과 공동체의 연대와 참여를 촉진하는 관리적 도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을 의미한다(강혜규, 함영진, 김희성, 2019, p.521).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인 Leadership Waterloo Region에서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프로젝트 관리를 강조하며, 그에 더해 갈등 관리, 공동체 구축·성장 관리, 디자인 사고, 통합적·포용적 훈련, 발표

및 토의 기술 등 조직 이슈 및 커뮤니티 관련 이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강혜규 외, 2019, p.522).

Candid(2021)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시한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shaping policy)과 비영리 부문의 역량 강화(building nonprofit capacity)를 위한 커뮤니티 리더십 활동과 함께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 구성원 관계(relationship), 지역사회자원(resources), 지식의 이해와 기술(understanding and skill) 등 네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커뮤니티 리더십의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커뮤니티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과 다양성의 확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이들에 대한 학습과 교육/훈련, 자원의 개발과 발굴 및 지역사회자원 조직 간의 연결과 협력의 활성화 등이 그 중심 내용이다. 이 또한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을 같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커뮤니티 리더십의 평가틀(assessment tool)

요소	주요 내용
커뮤니티 리더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 대한 데이터, 정보,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주민들의 관심에 대한 경청 및 문제 해결 참여 장려 다양한 단체, 기구, 섹터의 협업과 공동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공공의 대화(public conversation)에 대한 참여 민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원 확보 전략적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도구의 제공 비영리조직에 대한 리더십, 관리, 거버넌스 역량의 구축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목표/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주인의식 및 기여 의사결정에 있어 형평성의 고려 및 반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포용과 인종/문화/권력의 균형적 분배 및 책임 근거 및 경험에 기반한 학습의 활성화 장기적 영향력(long term impact)과 변화에 대한 초점 구성원 간 상호 작용 및 평판의 확보 비판/비난에 대한 수용, 즉각적 대응 및 피드백

요소	주요 내용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간 신뢰 확보 •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의 극대화 • 지역/국가 수준에서의 생산적·확장된 협력 • 리더십 역량 강화 및 구성원/정책기획자/민간의 컨설턴트 활용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 • 업무 및 리더십의 기능적 통합성 확보 • 리더십 스킬에 대한 전문적 개발과 교육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원제공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향상 • 지역사회자원 조직들에 대한 연결 활성화 •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발굴 및 개발 • 변화 및 임팩트 중심의 활동 전개
이해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습, 연구 등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맥락과 역사에 대한 이해 • 지역사회 구성원/조직 간 정보의 공유 및 네트워크 확보 • 지역사회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지원 •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의 유지 •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전달 및 영향력 있는 정책의 채택 • 체계적인 학습 및 평가의 마련과 전략적 의사결정 및 조직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자료: Candid. (2021). Community Leadership Assessment Tool, p.6-23 내용을 정리·재구성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와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이나 평가, 구성원 참여와 자율적 의사결정, 지식의 공유와 학습, 지원의 강화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원의 참여와 대표성의 확보, 안정적 지원 등은 앞선 거버넌스 역량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다. 이에 더해 커뮤니티 임파워먼트와 커뮤니티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리더십 스킬의 확보를 위한 여러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변화 및 임팩트 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원의 발굴·개발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리더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 수행을 통해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같은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장이나 위원장 등의 리더십과 함께 이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이 협의체 내에서 이루어질 때 협의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내용 중 지식의 공유와 학습, 자원과 역량강화 등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사업에 대한 사례나 정보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피드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체 활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외부의 관심과 지원 등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3) 임팩트 자원활동

선행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례와 근거에 입각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상호 작용이 커뮤니티의 성공과 활성화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민참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Borghans, Ter Weel, & Weinberg, 2006; Fukuyama, 1995; Berry, Portney, & Thomson, 1993; Portney & Berry, 2010). 먼저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공공문제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둘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셋째 장기적인 시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또는 조직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가 지닌 중요한 요소는 이것이 바로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이타적·헌신적 지역사회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은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일견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은 시민의식의 고양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협력과 협업을 통한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의 활동에 해당하는데, 이는 임팩트 자원활동(impact volunteering)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다. 임팩트 자원활동은 “전통적인 박애와 자선의 논리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를 숙의(deliberation)와 협업(collaboration), 연결(connection)을 위한 수단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Lee & Levine, 2016, p.41).

Lee & Levine(2016, p.43-44)은 이러한 임팩트 자원활동의 특징과 내용을 숙의, 협력, 연결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숙의(deliberation)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숙의적 기능의 일반적 정의는 “다양한 시민(대표자)들이 학습과 토론, 성찰의 숙의 과정에 기초하여 어떠한 공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영희, 2009; 권향원, 김성민, 한수정, 2017). 이러한 숙의적 과정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그다음은 협력(collaboration)이다. 시민참여는 숙의적 과정뿐 아니라 부문 간 경계를 넘어선 구성원이나 조직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 즉,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숙의적 과정을 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부문의 행위자들과 협력을 이끌어낼 때 숙의를 통해 도출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자원활동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연결(connection)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관계, 즉 지역사회 개선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유대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구성원 관계에는 충성이나 신뢰, 희망 등을 비롯한 몇 가지 가치와 속성이 수반된다. 이때 시민들 간의 연결은 신뢰감의 재건 등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활성화된 커뮤니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임팩트 자원활동으로의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표(metric)의 활용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Barnes & Schmitz, 2016; Lee & Levine, 2016, p.44). 예컨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수집하도록 촉구하거나, 지역사회의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읍면동 협의체가 단순한 자원봉사 형태가 아닌 바람직한 임팩트 자원활동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숙의, 협력, 연결의 기능이 무엇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습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이나 조직, 그리고 지방정부나 민간 파트너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임팩트 자원활동의 내용은 앞서 거버넌스 역량에서도 강조되는 숙의의 기능 외에도 협력과 연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읍면동 협의체가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조직들, 단체 뿐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차원에서 연결과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장된 지역사회 활동을 견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읍면동 협의체가 이들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성화와 임팩트 창출을 위한 일종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과 과정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이나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행연구 검토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이것이 지니는 사회복지체계에서의 의미나 동네거버넌스로서의 특징과 함께, 주민자치적 성격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와 현황 등을 진단하고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거나, 지역 단위의 복지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진단·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지방분권과 민관협력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는 연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그간 국가 또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와 현황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주되게 진행되어 왔다. 이재완, 김승용(2012)의 연구나 함철호(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 및 쟁점 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해 놓았으며, 강혜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지자체 복지행정 인력의 근무 여건 등 실태를 파악하고, 동주민센터 재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지영, 권순우(2017)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충실성과 적절성, 시행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이기호(2019)와 이소영(2019)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문제점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지역 단위의 복지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진단·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들 또한 다수 발표되었다. 강혜규 외(2016)의 연구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대응 과정의 통합성을 진단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정홍원 외(2012)의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희성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복지수요 대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 전달체계 정상화 적정·증원 소요 인력 추계, 시군구 기능별·영역별 인력 배분 및 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의 정책 제언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강혜규 외(2017)의 연구 또한 지자체 복지 인력 확충 및 배치 실태 분석과 지자체 복지사업별 직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복지수요의 변화를 전망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감안한 직무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지방분권과 민관협력 관점에서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연구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곽현근(2010)의 연구에서는 취약 지역의 슬럼화 및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 추진 과정 및 전략을 동네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양숙(2013)의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 한 동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울아카데미’와 ‘용운복지만두레’라는 동네거버넌스의 성공적인 활동과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함영진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설명하고 복지분권과 복지 격차 간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복지지출 및 복지시설 등 복지전달체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복지 격차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강혜규 외(2018)의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탐색하여 민간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특징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실제 사례를 탐색하여 민간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김이배(2019)의 연구에서는 자치와 복지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지역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와 복지 양자 간의 결합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복지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들은 많은 부분 민관협력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거나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복지거버넌스와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초기에 이루어진 오민수(2016)의 연구는 읍면동 협의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협의체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바 있고, 박기용(2017)의 연구는 포항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익수(2018)의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활동, 네트워크 및 운영체계 요인이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협의체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영글 외(2021)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적 안전망이 복지사각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주민참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정아원 외(2020)의 연구에서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연령, 봉사활동 경험, 복지서비스 수혜 경험, 역할 인지 및 사회복지 관련 교육 경험 등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종건 외(2020)의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에 주목하고 민

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주민 역량의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읍면동 협의체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가 대부분 시군구 수준에서의 협의체 활동과 관련한 연구인바, 읍면동 단위에서의 복지거버넌스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그리고 모형 설계 및 복지 담당 인력 수급 등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는 연구이다. 특히 시군구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탓에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미하거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한 직접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규범적 차원에서 협의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하거나 특정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읍면동 협의체 관련 연구들은 하나 또는 일부 지역에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여 진행시켰거나,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위원들의 개인적 특성·속성에 주로 연구의 초점을 둔 것들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논의함에 있어 제한된 이해만을 돕는 데 그치거나 일반화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을 살펴보는 데 있어 특정 사례에 국한되기보다는 실증적·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과 활동,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이들이 지닌 동네거버넌스의 특징과 주민참여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고,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적·조직적·환경적 측면의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일은 협의체의 외형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협의체의 외형적 요인과 시간 요인, 지역 요인을 설정하여 관련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먼저 읍면동 협의체의 외형적 요인으로는 참여인원, 조직운영, 추진활동을 설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요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는 시군구 지원 요인을 설정하였다. 읍면동 협의체의 외형적 요인은 시간 요인을 설정하여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시간 요인에 설정된 기준 시점은 2017년, 2020년이다. 2017년은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작된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이 완성된 시점이다. 이로 인해 2017년은 읍면동 협의체의 초기 운영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시점에 해당한다.

한편, 지역 요인은 시군구를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고려하여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련 요인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인구 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인구 약 4만 8천 이하 군)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김희성, 류진아, 오욱찬, 채현탁, 황정윤, 2020).

이렇게 설정한 읍면동 협의체의 분석 요인은 매년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2017b; 보건복지부 2020b).

1. 참여인원 현황

1) 전체 참여인원

읍면동 협의체의 참여인원 현황은 2017년에 전체 60,405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전체 65,708명으로 108.7% 증가하였다. 평균 참여인원도 2017년 17.3명(표준편차 8.7)에서 2020년 18.8명(표준편차 9.4)으로 증가하였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유형5의 참여인원이 13,033명(21.6%)에서 14,522명(22.1%)으로, 유형6의 참여인원이 7,200명(11.9%)에서 8,244명(12.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유형별 백분율(%)이 같은 수준이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참여인원은 전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형1의 평균 참여인원이 17.4명(표준편차 7.1)에서 19.6명(표준편차 10.1)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유형7이 14.1명(표준편차 5.1)에서 16.0명(표준편차 5.6)으로, 유형5가 16.5명(표준편차 6.6)에서 18.3명(표준편차 6.6)으로, 유형6이 16.0명(표준편차 5.8)에서 17.7명(표준편차 6.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 참여인원 현황

(단위: 명, %)

유형	2017년			2020년		
	계	평균	표준편차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0,405 (100.0)	17.3	8.7	65,708 (100.0)	18.8	9.4
유형1	8,079 (13.4)	17.4	7.1	8,757 (13.3)	19.6	10.1
유형2	5,593 (9.3)	18.1	7.8	6,129 (9.3)	19.2	6.2
유형3	9,036 (15.0)	21.3	16.7	9,295 (14.1)	21.9	18.7
유형4	12,219 (20.2)	18.0	7.0	13,051 (19.9)	19.1	6.7
유형5	13,033 (21.6)	16.5	6.6	14,522 (22.1)	18.3	6.6
유형6	7,200 (11.9)	16.0	5.8	8,244 (12.5)	17.7	6.2
유형7	5,245 (8.7)	14.1	5.1	5,710 (8.7)	16.0	5.6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참여인원 현황은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전체 참여인원수와 평균 참여인원수가 증가한 현상은 읍면동 협의체가 양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도농형, 광역 도시형, 대규모 및 소규모 농촌형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직종별 참여인원

연도에 따른 직종별 참여인원¹⁾은 2017년에 통리장이 9,825명(16.0%), 복지교육의료관련종사자가 8,332명(14.0%), 자영업자가 7,802명(13.0%), 공무원이 7,433명(12.0%), 자원봉사단체회원이 6,610명(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통리장이 9,295명(14.1%), 복지교육의료관련종사자가 9,135명(13.9%), 자영업자가 8,613명(13.1%), 공무원이 7,695명(11.7%), 자원봉사단체회원이 6,805명(10.4%) 순으로 높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형태를 보였다.

이 가운데 직종별 평균 참여인원이 특별히 증가한 유형을 보면, 자영업자가 2.2명(표준편차 4.6)에서 2.5명(표준편차 4.9)으로, 복지교육의료관련종사자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7명(표준편차 2.0)에서 1.9명(표준편차 2.2)으로, 주민자치위원이 1.5명(표준편차 2.2)에서 1.7명(표준편차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참여인원을 통해 볼 때, 읍면동 협의체의 참여주체의 다양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주민자치위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직종별 참여인원 제시를 보면 기타지역주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기서는 관련 내용이 포괄적인 기타지역주민을 제외하고 기술함.

〈표 2-6〉 읍면동 협의체의 직종별 참여인원 현황

(단위: 명, %)

유형	2017년			2020년			
	계	평균	표준편차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0,405 (100.0)	17.3	8.7	65,708 (100.0)	18.8	9.4	
공무원	7,433 (12.0)	2.1	1.2	7,695 (11.7)	2.2	1.3	
복지 교육 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보장 기관 종사자	5,870 (10.0)	1.7	2.0	6,640 (10.1)	1.9	2.2
	교육 복지 관계자	1,422 (2.0)	0.4	0.9	1,534 (2.3)	0.4	1.3
	의료인	1,040 (2.0)	0.3	0.9	961 (1.5)	0.3	0.9
통리장	9,825 (16.0)	2.8	3.8	9,295 (14.1)	2.7	3.3	
부녀회장	2,915 (5.0)	0.8	1.3	2,863 (4.4)	0.8	1.7	
주민자치위원	5,072 (8.0)	1.5	2.2	5,833 (8.9)	1.7	2.0	
자원봉사단체 회원	6,610 (11.0)	1.9	2.5	6,805 (10.4)	1.9	2.6	
자영업자	7,802 (13.0)	2.2	4.6	8,613 (13.1)	2.5	4.9	
종교인	1,411 (2.0)	0.4	0.9	1,026 (1.6)	0.3	0.7	
우체국관계자	262 (0.0)	0.1	0.3	199 (0.3)	0.1	0.4	
기타지역주민	10,743 (18.0)	3.1	3.9	14,241 (21.7)	4.1	4.6	

주 1: 2020년에 추가된 유형인 '비영리단체 추천자'는 기타지역주민에 합산함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2. 조직운영 현황

1) 운영세척 마련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세척 마련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전체 3,488개 읍면동 가운데 2,766개소(79.3%)가 세척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체 3,460개 읍면동 가운데 3,076개소(88.9%)가 마련하여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자체 유형별로 운영세척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유형5가 604개소(76.3%)에서 710개소(9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유형7이 241개소(67.5%)에서 287개소(80.6%)로, 유형6이 370개소(79.6%)에서 419개소(9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척 마련 현황

(단위: 개소, %)

지자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운영세척 수립	운영세척 미수립	읍면동 수	운영세척 수립	운영세척 미수립
전체	3,488 (100.0)	2,766 (79.3)	722 (20.7)	3,460 (100.0)	3,076 (88.9)	384 (11.1)
유형1	463 (100.0)	415 (89.6)	48 (10.4)	442 (100.0)	422 (95.5)	20 (4.5)
유형2	309 (100.0)	260 (84.1)	49 (15.9)	315 (100.0)	290 (92.1)	25 (7.9)
유형3	424 (100.0)	252 (59.4)	172 (40.6)	420 (100.0)	294 (70.0)	126 (30.0)
유형4	678 (100.0)	624 (92.0)	54 (8.0)	679 (100.0)	654 (96.3)	25 (3.7)
유형5	792 (100.0)	604 (76.3)	188 (23.7)	787 (100.0)	710 (90.2)	77 (9.8)
유형6	465 (100.0)	370 (79.6)	95 (20.4)	461 (100.0)	419 (90.9)	42 (9.1)

지자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운영세칙 수립	운영세칙 미수립	읍면동 수	운영세칙 수립	운영세칙 미수립
유형7	357 (100.0)	241 (67.5)	116 (32.5)	356 (100.0)	287 (80.6)	69 (19.4)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운영세칙 마련은 협의체의 운영체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며, 이를 마련하는 읍면동 수가 2017년에 비해 2020년에는 9.6%p 가량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에 운영세칙 마련이 미비했던 도농형, 대규모 및 소규모 농촌형에서 관련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간계획 수립

2017년 전체 3,484개 읍면동 중 70.0%인 2,438개소가 읍면동 협의체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3,481개 읍면동 가운데 2,964개소(85.1%)가 연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자체 유형별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유형7로 2017년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한 곳이 190개소(53.2%)에 그친 데 반해, 2020년에는 그 수가 287개소(80.4%)로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곳은 유형5와 유형6이다. 유형5가 502개소(63.4%)에서 689개소(86.9%)로, 유형6이 286개소(61.8%)에서 391개소(84.1%)로 증가했다. 반면, 유형3의 경우에는 323개소(76.4%)에서 295개소

(69.4%)로 오히려 연간계획 수립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연간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소, %)

지자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연간계획 수립	연간계획 미수립	읍면동 수	연간계획 수립	연간계획 미수립
전체	3,484 (100.0)	2,438 (70.0)	1,046 (30.0)	3,481 (100.0)	2,964 (85.1)	517 (14.9)
유형1	463 (100.0)	392 (84.7)	71 (15.3)	445 (100.0)	401 (90.1)	44 (9.9)
유형2	309 (100.0)	220 (71.2)	89 (28.8)	316 (100.0)	272 (86.1)	44 (13.9)
유형3	423 (100.0)	323 (76.4)	100 (23.6)	424 (100.0)	295 (69.4)	129 (30.4)
유형4	677 (100.0)	525 (77.5)	152 (22.5)	681 (100.0)	629 (92.4)	52 (7.6)
유형5	792 (100.0)	502 (63.4)	290 (36.6)	793 (100.0)	689 (86.9)	104 (13.1)
유형6	463 (100.0)	286 (61.8)	177 (38.2)	465 (100.0)	391 (84.1)	74 (15.9)
유형7	357 (100.0)	190 (53.2)	167 (46.8)	357 (100.0)	287 (80.4)	70 (19.6)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연간계획 수립은 읍면동 협의체의 계획적인 활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연간계획을 수립한 협의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협의체 활동의 체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농촌형 지역의 수립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연간계획 수립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위원장 유형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을 유형별로 보면 2017년에 전체 3,488개 읍면동 가운데 공공위원장, 민간위원장 형태보다 민관공동위원장 형태가 3,039개소(8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전체 3,406개 읍면동 가운데 2,892개소(84.9%)가 민관공동위원장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위원장 형태는 2017년 357개소(10.2%)에서 2020년 487개소(14.3%)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 유형

(단위: 개소, %)

지자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공공 위원장	민간 위원장	민관공동 위원장	읍면동 수	공공 위원장	민간 위원장	민관공동 위원장
전체	3,488 (100.0)	92 (2.6)	357 (10.2)	3,039 (87.1)	3,406 (100.0)	27 (0.8)	487 (14.3)	2,892 (84.9)
유형1	463 (100.0)	5 (1.1)	44 (9.5)	414 (89.4)	441 (100.0)	0 (0.0)	90 (20.4)	351 (79.6)
유형2	309 (100.0)	14 (4.5)	34 (11.0)	261 (84.5)	315 (100.0)	5 (1.6)	27 (8.6)	283 (89.8)
유형3	424 (100.0)	2 (0.5)	15 (3.5)	407 (96.0)	412 (100.0)	1 (0.2)	25 (6.1)	386 (93.7)
유형4	678 (100.0)	1 (0.1)	118 (17.4)	559 (82.4)	679 (100.0)	2 (0.3)	166 (24.4)	511 (75.3)
유형5	792 (100.0)	15 (1.9)	86 (10.9)	691 (87.2)	772 (100.0)	2 (0.3)	135 (17.5)	635 (82.3)
유형6	465 (100.0)	32 (6.9)	35 (7.5)	398 (85.6)	460 (100.0)	4 (0.9)	18 (3.9)	438 (95.2)
유형7	357 (100.0)	23 (6.4)	25 (7.0)	309 (86.6)	327 (100.0)	13 (4.0)	26 (8.0)	288 (88.1)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관공동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모두 세 곳으로, 유형6이 398개소(85.6%)에서 438개소(95.2%)로, 유형2가 261개소(84.5%)에서 283개소(89.8%)로, 유형7이 309개소(86.6%)에서 288개소(88.1%)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모두 네 곳으로, 유형1이 44개소(9.5%)에서 90개소(20.4%)로, 유형5가 86개소(10.9%)에서 135개소(17.5%)로, 유형4가 118개소(17.4%)에서 166개소(24.4%)로, 유형3이 15개소(3.5%)에서 25개소(6.1%)로 증가했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 유형은 협의체의 운영 주도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7년과 2020년 모두 대부분의 읍면동 협의체가 민관공동위원장 형태를 띠고 있지만 2017년에 비해 2020년 민간위원장 형태가 소폭 증가한 현상은 협의체 운영 주도권이 점차 민간 부문의 넘어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광역 도시형, 도농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역동적인 도시문화 속에서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민간 주도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회의 개최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는 2017년 전체 3,488개 읍면동에서 평균 5.6회(표준편차 4.4)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체 3,490개 읍면동에서 평균 4.3회(표준편차 3.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유형3이 평균 6.9회(표준편차 3.8), 유형4가 6.9회(표준편차 4.5), 유형1이 6.6회(표준편차 3.4), 유형2가 6.0회(표준편차 3.8) 순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유형2가 평균 5.5회(표준편차 3.5), 유형1이 5.4회(표준편차 2.8),

유형4가 5.2회(표준편차 3.9), 유형5가 4.2회(표준편차 3.2)로 나타났다. 반면,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지자체 유형은 2017년에 유형7이 평균 3.0회(표준편차 3.2), 유형6이 3.9회(표준편차 2.8), 유형5가 5.1회(표준편차 5.5)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유형7이 평균 2.9회(표준편차 2.6), 유형6이 3.4회(표준편차 2.6), 유형3이 3.4회(표준편차 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3의 경우 평균 6.9회(표준편차 3.8)에서 3.4회(표준편차 3.0)를 기록해 그 감소폭이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 개최 횟수

(단위: 개소, %, 회)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8 (100.0)	5.6	4.4	3,490 (100.0)	4.3	3.3
유형1	463 (13.3)	6.6	3.4	446 (12.8)	5.4	2.8
유형2	309 (8.9)	6.0	3.8	319 (9.1)	5.5	3.5
유형3	424 (12.2)	6.9	3.8	425 (12.2)	3.4	3.0
유형4	678 (19.4)	6.9	4.5	685 (19.6)	5.2	3.9
유형5	792 (22.7)	5.1	5.5	793 (22.7)	4.2	3.2
유형6	465 (13.3)	3.9	2.8	465 (13.3)	3.4	2.6
유형7	357 (10.2)	3.0	3.2	357 (10.2)	2.9	2.6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70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회의 참여인원수는 2017년 전체 3,488개 읍면동에서 평균 68.4명(표준편차 68.7)이었으며, 2020년에는 전체 3,490개 읍면동에서 평균 58.6명(표준편차 52.1)으로 회의 개최 횟수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1〉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 운영 참여인원 누계

(단위: 개소, %, 명)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8 (100.0)	68.4	68.7	3,490 (100.0)	58.6	52.1
유형1	463 (13.3)	79.3	62.0	446 (12.8)	73.7	53.6
유형2	309 (8.9)	76.5	63.4	319 (9.1)	76.5	56.6
유형3	424 (12.2)	80.9	55.5	425 (12.2)	42.9	48.6
유형4	678 (19.4)	90.4	87.3	685 (19.6)	71.1	57.0
유형5	792 (22.7)	61.6	71.6	793 (22.7)	56.9	49.8
유형6	465 (13.3)	47.8	45.8	465 (13.3)	48.6	45.5
유형7	357 (10.2)	32.4	46.4	357 (10.2)	35.1	30.7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유형4가 평균 90.4명(표준편차 87.3), 유형3이 80.9명(표준편차 55.5), 유형1이 79.3명(표준편차 62.0), 유형2가 76.5명(표준편차 63.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유형2가 평균 76.5명(표준편차 56.6), 유형1이 73.7명(표준편차

53.6), 유형4가 71.1명(표준편차 57.0), 유형5가 56.9명(표준편차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의 운영에 참여인원이 적은 지자체 유형은 2017년에 유형7이 평균 32.4명(표준편차 46.4), 유형6가 47.8명(표준편차 45.8), 유형5가 61.6명(표준편차 7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유형7이 평균 35.1명(표준편차 30.7), 유형3이 42.9명(표준편차 48.6), 유형6이 48.6명(표준편차 45.5)인 것으로 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유형3의 경우 회의 참여인원이 평균 80.9명(표준편차 55.5)에서 42.9명(표준편차 48.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회의 개최 횟수와 참여인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 개최 횟수와 참여인원수는 읍면동 협의체의 활발한 교류 및 의사소통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날수록 협의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2017년에 비해 2020년의 회의 개최 횟수와 참여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협의체의 정기적인 교류 및 소통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협의체의 소통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소통은 도시형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농촌형 지역에서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향후 농촌형 지역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회의 개최 횟수 및 참여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찾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운영예산

읍면동 협의체의 최근 2020년 운영예산은 전체 3,485개소 평균 7,669.2천 원(표준편차 10,85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유형2가 평균 10,173.6천 원(표준편차 12,641.5), 유형4가 8,984.3천 원(표준편차 9,954.4), 유형6이 8,413.9천 원(표준편차 10,628.5), 유형5가 8,168.3천 원(표준편차 14,808.6) 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운영예산이 적은 지자체는 유형3이 평균 4,226.8천 원(표준편차 5,445.2), 유형7이 5,242.7천 원(표준편차 6,7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예산 소계

(단위: 개소, %, 천 원)

유형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5 (100.0)	7,669.2	10,859.8
유형1	446 (12.8)	7,439.6	7,772.1
유형2	316 (9.1)	10,173.6	12,641.5
유형3	425 (12.2)	4,226.8	5,445.2
유형4	683 (19.6)	8,984.3	9,954.4
유형5	793 (22.8)	8,168.3	14,808.6
유형6	465 (13.3)	8,413.9	10,628.5
유형7	357 (10.2)	5,242.7	6,709.7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운영예산의 규모는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평균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량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에 따른 운영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

의와 별개로, 운영예산에 있어 지역 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향후 협의체 활동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운영예산 규모가 적은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농촌형 지역의 경우 예산 규모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3. 추진활동 현황

1) 민간자원 발굴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건수는 2017년 전체 3,488개 읍면동에서 평균 96.7건(표준편차 1,548.2)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전체 3,490개 읍면동에서 평균 99.2건(표준편차 796.5)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13〉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건수

(단위: 개소, %, 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8 (100.0)	96.7	1,548.2	3,490 (100.0)	99.2	796.5
유형1	463 (13.3)	74.0	349.6	446 (12.8)	178.9	1,717.2
유형2	309 (8.9)	54.8	129.5	319 (9.1)	116.9	367.8
유형3	424 (12.2)	326.0	4,024.9	425 (12.2)	71.7	419.0
유형4	678 (19.4)	95.1	315.2	685 (19.6)	125.3	336.0
유형5	792 (22.7)	71.6	1,216.0	793 (22.7)	72.5	487.0
유형6	465 (13.3)	45.9	593.7	465 (13.3)	93.6	1,042.2

74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유형7	357 (10.2)	15.3	40.0	357 (10.2)	32.9	118.5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이러한 증가세는 전체 지자체 유형 대부분에서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형1이 2017년에 평균 74.0건(표준편차 349.6)에서 2020년 평균 178.9건(표준편차 1,717.2)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유형2가 평균 54.8건(표준편차 129.5)에서 평균 116.9건(표준편차 367.8)으로, 유형6이 평균 45.9건(표준편차 593.7)에서 평균 93.6건(표준편차 1,042.2)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3은 2017년 평균 326.0건(표준편차 4,024.9)에서 2020년 평균 71.7건(표준편차 419.0)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자체 유형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원의 최근 2020년 발굴 금액은 전체 2,890개 읍면동에서 평균 17,452.4천 원(표준편차 26,72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형4가 평균 23,684.6천 원(표준편차 23,941.3)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유형2가 20,621.8천 원(표준편차 26,806.9), 유형3이 19,099.9천 원(표준편차 36,997.1), 유형1이 18,844.9천 원(표준편차 33,993.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7의 경우에는 10,539.9천 원(표준편차 23,163.4)인 것으로 나타나 발굴 금액이 가장 큰 유형4와 비교할 때 51.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간자원 발굴은 관련법에 의해 부여된 읍면동 협의체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광역 및 일반 도시형의 경우에는 발굴 건수의 증가폭뿐만 아니라 발굴 금액 또한 그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는 발굴 건수의 감소세에 비해 평균 발굴 금액은 높은 수준이며, 소규모 농촌형의 경우에는 발굴 건수뿐만 아니라 발굴 금액 또한 낮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간자원 발굴의 지역적 차이는 향후 협의체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에서도 편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2-14〉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자원 발굴 금액

(단위: 개소, %, 천 원)

유형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90 (100.0)	17,452.4	26,725.5
유형1	385 (13.3)	18,844.9	33,993.7
유형2	290 (10.0)	20,621.8	26,806.9
유형3	289 (10.0)	19,099.9	36,997.1
유형4	650 (22.5)	23,684.6	23,941.3
유형5	685 (23.7)	14,013.7	22,389.9
유형6	348 (12.0)	11,857.5	17,671.3
유형7	243 (8.4)	10,539.9	23,163.4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2) 서비스 연계

읍면동 협의체의 서비스 연계 건수는 2017년 전체 3,488개 읍면동에서 평균 501.1건(표준편차 1,624.0)이었으며, 2020년에는 전체 3,490개 읍면동에서 평균 561.4건(표준편차 1,339.9)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연계는 전체 지자체 유형에서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유형4가 2017년 평균 798.7건(표준편차 1,122.2)에서 2020년 평균 1,186.4건(표준편차 2,358.0)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유형2가 평균 448.3건(표준편차 1,051.1)에서 평균 642.9건(표준편차 1,027.2)으로, 유형5가 평균 259.0건(표준편차 454.7)에서 평균 413.5건(표준편차 972.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3은 2017년 평균 1,264.1건(표준편차 4,026.5)에서 2020년 평균 442.8건(표준편차 1,063.0)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서비스 연계 건수

(단위: 개소, %, 건)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8 (100.0)	501.1	1,624.0	3,490 (100.0)	561.4	1,339.9
유형1	463 (13.3)	332.0	759.7	446 (12.8)	415.7	647.7
유형2	309 (8.9)	448.3	1,051.1	319 (9.1)	642.9	1,027.2
유형3	424 (12.2)	1,264.1	4,026.5	425 (12.2)	442.8	1,063.0
유형4	678 (19.4)	798.7	1,122.2	685 (19.6)	1,186.4	2,358.0
유형5	792 (22.7)	259.0	454.7	793 (22.7)	413.5	972.0
유형6	465 (13.3)	263.9	689.1	465 (13.3)	354.3	752.0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유형7	357 (10.2)	140.8	328.3	357 (10.2)	210.8	457.5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정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서비스 연계 건수는 읍면동의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서비스 연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제한 도시형, 일반 도시형과 도농형에서 나타나는 높은 증가세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지역에서 서비스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계좌모금

읍면동 협의체의 협약기관 계좌모금 수행과 관련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체 3,490개 읍면동 가운데 1,547개소(44.3%)가 계좌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수행하고 있지 않은 읍면동이 1,943개소(55.7%)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좌모금 수행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유형4에서 393개소(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유형2에서 182개소(57.1%), 유형1에서 259개소(58.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수행 비

율이 높은 지자체는 유형3에서 337개소(79.3%), 유형7에서 231개소(64.7%), 유형6에서 295개소(6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협약기관 계좌모금 현황(연간)

(단위: 개소, %)

유형	2020		
	읍면동 수	협약기관 계좌모금 수행	협약기관 계좌모금 미수행
전체	3,490 (100.0)	1,547 (44.3)	1,943 (55.7)
유형1	446 (100.0)	259 (58.1)	187 (41.9)
유형2	319 (100.0)	182 (57.1)	137 (42.9)
유형3	425 (100.0)	88 (20.7)	337 (79.3)
유형4	685 (100.0)	393 (57.4)	292 (42.6)
유형5	793 (100.0)	329 (41.5)	464 (58.5)
유형6	465 (100.0)	170 (36.6)	295 (63.4)
유형7	357 (100.0)	126 (35.3)	231 (64.7)

주: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783개 읍면동 협의체의 2020년 협약기관 계좌모금액은 평균 10,894.5천 원(표준편차 15,36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유형6이 평균 13,173.4천 원(표준편차 19,849.9), 유형2가 평균 12,953.7천 원(표준편차 13,882.0), 유형1이 평균 12,272.3천 원(표준편차 18,771.0), 유형5가 평균 10,241.6천 원

(표준편차 15,7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자원 발굴 금액이 적은 지자체는 유형3이 평균 8,443.8천 원(표준편차 11,574.6), 유형7이 8,748.4천 원(표준편차 16,7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협약기관 계좌모금액(연간)

(단위: 개소, %, 천 원)

유형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83 (100.0)	10,894.5	15,366.2
유형1	281 (15.8)	12,272.3	18,771.0
유형2	219 (12.3)	12,953.7	13,882.0
유형3	112 (6.3)	8,443.8	11,574.6
유형4	443 (24.8)	9,860.6	10,128.3
유형5	380 (21.3)	10,241.6	15,758.9
유형6	201 (11.3)	13,173.4	19,849.9
유형7	147 (8.2)	8,748.4	16,757.1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계좌모금은 읍면동 협의체의 안정적인 모금 개발 채널에 해당하며,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계좌모금의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와 대규모 및 소규모 농촌형 지역에서는 계좌모금 수행 비율이 낮으므로, 모금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농촌형 지역은 모금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모금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특화사업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전체 3,488개 읍면동에서 평균 2.5개 사업(표준편차 3.6)이 수행되었으나, 2020년에는 전체 3,490개 읍면동에서 평균 3.1개 사업(표준편차 3.3)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표 2-18〉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 수

(단위: 개소, %, 개)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88 (100.0)	2.5	3.6	3,490 (100.0)	3.1	3.3
유형1	463 (13.3)	1.9	2.4	446 (12.8)	3.4	3.5
유형2	309 (8.9)	2.7	3.7	319 (9.1)	3.5	3.2
유형3	424 (12.2)	3.4	3.2	425 (12.2)	2.7	2.6
유형4	678 (19.4)	3.9	5.1	685 (19.6)	4.4	4.3
유형5	792 (22.7)	1.7	2.5	793 (22.7)	2.6	2.8
유형6	465 (13.3)	2.2	3.1	465 (13.3)	2.7	3.0
유형7	357 (10.2)	1.4	2.7	357 (10.2)	1.6	1.8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유형3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특화사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1이 2017년 평균 1.9개 사업(표준편차 2.4)에서 2020년 평균 3.4개 사업(표준편차 3.5)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유형5가 평균 1.7개 사업(표준편차 2.5)에서 평균 2.6개 사업(표준편차 2.8)으로, 유형2가 평균 2.7개 사업(표준편차 3.7)에서 평균 3.5개 사업(표준편차 3.2)으로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3은 2017년 평균 3.4개 사업(표준편차 3.2)에서 2020년 평균 2.7개 사업(표준편차 2.6)으로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하여 다른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2-19〉 지자체 유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 총예산

(단위: 개소, %, 천 원)

유형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60 (100.0)	6,464.3	10,915.8
유형1	442 (12.8)	7,155.2	14,211.0
유형2	317 (9.2)	8,268.2	11,335.6
유형3	424 (12.3)	5,069.2	7,715.1
유형4	673 (19.5)	8,268.9	10,779.4
유형5	788 (22.8)	6,137.1	12,588.7
유형6	461 (13.3)	6,101.4	8,637.8
유형7	355 (10.3)	3,436.1	5,790.9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이러한 특화사업의 2020년 총예산은 전체 3,460개 읍면동에서 평균 6,464.3천 원(표준편차 10,9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형4가 평균 8,268.9천 원(표준편차 10,779.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유형2가 8,268.2천 원(표준편차 11,335.6), 유형 1이 7,155.2천 원(표준편차 14,211.0)이었다. 반면, 유형7의 경우에는 3,436.1천 원(표준편차 5,790.9)으로 나타나 유형4와 비교할 때 41.55%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특화사업의 실시는 읍면동의 복지서비스인프라의 확대로 이어지며, 그에 따른 특화사업의 증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광역 및 일반 도시형, 도농형 지역에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서 특화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의 특화사업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총예산 규모에서도 도시형과 소규모 농촌형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4. 시군구의 지원 현황

1)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

2017년 전체 시군구 205개 가운데 176개소(85.9%)가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을 수립한 반면, 수립하지 않은 시군구는 29개소(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전체 시군구 211개 가운데 지원 방안을 수립한 시군구가 181개소(85.8%)로, 수립하지 않은 시군구가 30개소(14.2%)로 큰 변동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유형1과 유형2에서는 지원 방안을 100% 수립하고 있었으며, 80% 이상인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지원 방안을 수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는 2020년에도 유지되긴 하지만, 유형6의 경우 지원 방안을 수립한 시군구가 2017년 32개소(82.05%)에서 29개소(72.5%)로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20〉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2017년			2020년		
	시군구 수	지원 방안 수립	지원 방안 미수립	시군구 수	지원 방안 수립	지원 방안 미수립
전체	205 (100.0)	176 (85.9)	29 (14.1)	211 (100.0)	181 (85.8)	30 (14.2)
유형1	13 (100.0)	13 (100.0)	0 (0.0)	14 (100.0)	14 (100.0)	0 (0.0)
유형2	18 (100.0)	18 (100.0)	0 (0.0)	26 (100.0)	25 (96.2)	1 (3.8)
유형3	24 (100.0)	21 (87.5)	3 (12.5)	23 (100.0)	21 (91.3)	2 (8.7)
유형4	34 (100.0)	28 (82.4)	6 (17.6)	40 (100.0)	35 (87.5)	5 (12.5)
유형5	37 (100.0)	30 (81.1)	7 (18.9)	34 (100.0)	29 (85.3)	5 (14.7)
유형6	39 (100.0)	32 (82.05)	7 (17.95)	40 (100.0)	29 (72.5)	11 (27.5)
유형7	40 (100.0)	34 (85.0)	6 (15.0)	34 (100.0)	28 (82.4)	6 (17.6)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은 읍면동 협의체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며, 따라서 시군구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게 하는 한편, 읍면동에 대한 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읍면동 협의체 예산 지원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예산지원액은 2017년 전체 187개 시군구의 평균 지원액이 48,094.9천 원(표준편차 58,216.0)이었으며, 2020년에는 전체 200개 시군구의 평균 지원액이 이 금액보다 다소 증가된 59,256.9천 원(표준편차 78,04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0년 예산지원액이 감소된 곳은 유형1이 155,001.9천 원(표준편차 107,616.9)에서 117,153.9천 원(표준편차 104,873.6)으로, 유형2가 56,173.3천 원(표준편차 73,810.4)에서 40,413.1천 원(표준편차 46,621.3)으로, 유형3이 42,310.5천 원(표준편차 44,005.4)에서 30,562.6천 원(표준편차 28,63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예산지원액이 증가된 지역은 유형5가 36,137.6천 원(표준편차 37,912.2)에서 68,979.4천 원(표준편차 82,069.2)으로, 유형6이 47,841.3천 원(표준편차 32,908.5)에서 79,987.0천 원(표준편차 94,199.6)으로, 유형4가 45,242.5천 원(표준편차 51,665.3)에서 64,778.2천 원(표준편차 92,075.6)으로, 유형7이 27,734.0천 원(표준편차 19,362.3)에서 30,736.1천 원(표준편차 25,27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1〉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액

(단위: 개소, %, 천 원)

유형	2017년			2020년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읍면동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87 (100.0)	48,904.9	58,216.0	200 (100.0)	59,256.9	78,042.5
유형1	11 (5.9)	155,001.9	107,616.9	14 (7.0)	117,153.9	104,873.6
유형2	24 (12.8)	56,173.3	73,810.4	25 (12.5)	40,413.1	46,621.3
유형3	23 (12.3)	42,310.5	44,005.4	23 (11.5)	30,562.6	28,634.2
유형4	35 (18.7)	45,242.5	51,665.3	37 (18.5)	64,778.2	92,075.6
유형5	30 (16.0)	36,137.6	37,912.2	32 (16.0)	68,979.4	82,069.2
유형6	33 (17.6)	47,841.3	32,908.5	36 (18.0)	79,987.0	94,199.6
유형7	31 (16.6)	27,734.0	19,362.3	33 (16.5)	30,736.1	25,273.7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예산 지원 또한 활성화 방안 수립과 함께 읍면동 협의체 지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평균 예산지원액이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지역별로 증가·감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향후 읍면동 협의체 운영·활동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초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특히 예산 지원이 감소된 도시형 지역 등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시군구는 전체 196개소 가운데 29개소(14.8%)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전체 196개소 가운데 48개소(24.5%)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담직원 배치가 전 지역에서 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2020년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유형 2로 전담직원 배치 시군구가 10개소(58.8%)에서 19개소(79.2%)로 증가했고, 그다음으로 큰 지역은 유형3과 유형6으로 유형3이 2개소(8.7%)에서 5개소(25.0%)로, 유형6이 1개소(2.7%)에서 4개소(12.1%)로 증가했다. 반면, 유형7의 경우 전담직원 배치가 2017년 6개소(15.0%)에서 2020년 3개소(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배치 여부

(단위: 개소, %)

유형	2017년			2020년		
	시군구 수	전담직원 배치	전담직원 미배치	시군구 수	전담직원 배치	전담직원 미배치
전체	196 (100.0)	29 (14.8)	167 (85.2)	196 (100.0)	48 (24.5)	148 (75.5)
유형1	8 (100.0)	5 (62.5)	3 (37.5)	14 (100.0)	10 (71.4)	4 (28.6)
유형2	17 (100.0)	10 (58.8)	7 (41.2)	24 (100.0)	19 (79.2)	5 (20.8)
유형3	23 (100.0)	2 (8.7)	21 (91.3)	20 (100.0)	5 (25.0)	15 (75.0)
유형4	40 (100.0)	2 (5.0)	38 (95.0)	37 (100.0)	3 (8.1)	34 (91.9)
유형5	31 (100.0)	3 (9.7)	28 (90.3)	36 (100.0)	4 (11.1)	32 (88.9)

유형	2017년			2020년		
	시군구 수	전담직원 배치	전담직원 미배치	시군구 수	전담직원 배치	전담직원 미배치
유형6	38 (100.0)	1 (2.7)	37 (97.3)	33 (100.0)	4 (12.1)	29 (87.9)
유형7	39 (100.0)	6 (15.0)	33 (85.0)	32 (100.0)	3 (9.4)	29 (90.6)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농촌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의 고용 형태는 2017년 시군구 28개소에서 기간제가 10개소(35.7%), 사회복지공무원이 9개소(32.1%), 계약직이 9개소(32.1%)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시군구 47개소에서는 기간제가 25개소(53.2%), 계약직이 14개소(29.8%), 사회복지공무원이 8개소(17.0%)로 나타나 지원 전담직원의 고용 형태가 기간제와 계약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지자체 유형별로는 유형3과 유형1에서 기간제 비율이 높았으며, 유형5에서는 계약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3〉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 고용 형태

(단위: 개소, %)

유형	2017년				2020년			
	시군구 수	사회 복지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시군구 수	사회 복지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전체	28 (100.0)	9 (32.1)	10 (35.7)	9 (32.1)	47 (100.0)	8 (17.0)	25 (53.2)	14 (29.8)
유형1	5 (100.0)	0 (0.0)	3 (60.0)	2 (40.0)	9 (100.0)	0 (0.0)	7 (77.8)	2 (22.2)

유형	2017년				2020년			
	시군구 수	사회 복지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시군구 수	사회 복지 공무원	기간제	계약직
유형2	10 (100.0)	0 (0.0)	5 (50.0)	5 (50.0)	19 (100.0)	1 (5.3)	10 (52.6)	8 (42.1)
유형3	1 (100.0)	0 (0.0)	1 (100.0)	0 (0.0)	5 (100.0)	1 (20.0)	4 (80.0)	0 (0.0)
유형4	2 (100.0)	2 (100.0)	0 (0.0)	0 (0.0)	3 (100.0)	2 (66.7)	1 (33.3)	0 (0.0)
유형5	3 (100.0)	2 (66.7)	0 (0.0)	1 (33.3)	4 (100.0)	0 (0.0)	2 (50.0)	2 (50.0)
유형6	1 (100.0)	0 (0.0)	1 (100.0)	0 (0.0)	4 (100.0)	2 (50.0)	1 (25.0)	1 (25.0)
유형7	6 (100.0)	5 (83.3)	0 (0.0)	1 (16.7)	3 (100.0)	2 (66.7)	0 (0.0)	1 (33.3)

주 1: 지자체 유형 ① 광역 도시형(인구 50만 이상 시), ② 일반 도시형(인구 50만 이하 시), ③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특별시 자치구), ④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 ⑤ 도농형(도농복합시), ⑥ 대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상 군), ⑦ 소규모 농촌형(약 4만 8천 이하 군)(김희성 외, 2020)

주 2: 미응답, 미보고 건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분석

읍면동 협의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전담직원의 배치와 고용 형태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담직원의 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전담직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 또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전담직원의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담직원 미배치 비율이 높은 대규모 제한 도시형 기초자치단체, 소규모 제한 도시형, 도농형, 대규모 및 소규모 농촌형의 경우에는 향후 보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쟁점

이상의 읍면동 협의체 관련 선행연구와 현황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협의체 활동으로 인한 성과와 관련한 쟁점이다. 전자는 읍면동 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관련 제도상의 실제화 차이에서 제기된 갈등이며, 후자는 협의체 활동으로 인한 다양한 성과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갈등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시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쟁점 외에도 참여주체가 만들어내는 관계 구조적 특성, 참여주체의 특성, 협의체 서비스의 특성 등에서 비롯하는 여러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선행연구 및 현황 자료에서 드러난 쟁점과 실제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법적·제도적 맥락이 가지는 쟁점: 읍면동 지원 역할 vs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강조

복지 부문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 관련법과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읍면동 협의체를 운용하는 데 법적 규정과 실제 제도 운용상의 규정이 상이하여 갈등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가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것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읍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협의체를 설치(관련법 제41조 제7항)하도록 하였다.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에서는 읍면동 협의체를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의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도구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표 2-24〉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관련법과 운영 안내의 내용적 차이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 제7항)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u>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u>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항(보건복지부, 202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u>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u>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 (읍면동 협의체 조직체계)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조례 또는 운영세칙 규정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7893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5호; 보건복지부. (2020a). 20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반면, 읍면동 협의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러한 법적 규정과는 상이하며, 정부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요구 또한 법에서 규정한 도구적 성격과는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4〉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협의체를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지원이라는 공급자 중

심의 개념을 벗어나 협의체의 주도성과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있어서는 읍면동 협의체가 중심이 된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의 수립·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은 주민자치에 의한 복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다.

복지 부문 정책이 점차 수요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이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의 법적 설치 목적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관계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쟁점: 공공 주도 주민참여 vs 주민 주도 공공 협력

읍면동 협의체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맥락에서 비롯된 갈등은 읍면동 협의체의 참여주체 간의 관계 구조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공공이 가지는 관료제적 특성과 자발성, 자율성에 기초한 주민이 가지는 특성 간에 긴장과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읍면동 협의체 내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관계 구조에서도 쟁점이 야기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구성원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구성원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민관협력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민관협력 조직체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 구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초기 단계는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을 동원하는 방식인 호출식 민관협력(1단계)이며,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는 관이 주도하되 민간을 동원하

기보다 이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식적 민관협력(2단계)이다. 그다음 발전 단계는 공공 부문의 권위적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적 민관협력(3단계)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인 실질적인 민관협력(4단계)이다(김종건, 2017, p.36).

이러한 민관협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읍면동 협의체는 폭넓은 활동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1, 2단계에서 나타나는 관 혹은 공공 주도적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관이 가지는 관료제적 조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굳어진 관료제적 특성 때문에 비교적 역사가 짧은 협의체의 활동은 그 틀 안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위원 구성, 관 주도의 한정된 안건 중심의 협의, 형식적인 안건 심의 등을 둘러싼 문제(박태영, 채현탁, 2014, p.229)는 협의체 운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및 자원연계 영역을 평가하는 방식 또한 이러한 관 주도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단기적 실적주의, 즉 조급하게 단기적 성과를 내는 것에 치중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자체를 인내하지 못하는 관행이 공공행정 조직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협의체에도 그 관행이 그대로 침습되어 있는 실정이다(김희성 외, 2020, p.56).

그러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관 주도의 활동에서 벗어나 3, 4단계의 소통적·실질적인 민관협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 활동에 있어 자발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때 활성화된다고 인식하고, 읍면동주민센터와 협의체 간의 관계를 주민 주도형 공공 지원 혹은 협력의 구조로 변화시켰다. 이는 협의체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앞선 1, 2단계의 형태와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이들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소원성취 물품을 전달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수차례 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추진 결과 공유 등 전체적인 과정은 협의체의 활동 전반이 위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협의체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행으로 활동을 보다 의미 있게 수행하고 있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a, p.60-63). 이처럼 읍면동 협의체에 포함된 상당수 주민위원이 활동의 주체가 되고 이들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공공과의 실질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들이 눈에 띄고 있지만, 지역별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최근 읍면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활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성 회복과 주민 주도적 마을사업의 추진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있어 주민 주도성은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참여주체의 특성으로 인한 쟁점: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 필요 vs 실천성과 인적 구성의 포용성 강조

앞서 제3절에서 읍면동 협의체 현황 중 직종별 참여인원 현황을 살펴 보았듯이 읍면동 협의체의 참여주체는 통리장, 복지교육의료관련 종사자, 자영업자, 공무원, 자원봉사단체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인력이 관련법에 의해 위촉되어 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다. 이런 공식적 활동이라는 특성과 함께, 실제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특성 간에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표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 기초지자체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그 절차적 대표성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 위촉 과정에서는 읍면동장의 영입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선발 혹은 선출과 같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실제 활동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제를 주민대표격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통반이장, 봉사단체의 장, 주민조직의 장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읍면동 협의체 활동이 민관협력의 기능뿐만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활동적 특성으로 인해 대표성보다는 실천성, 다양한 주민의 포괄적 참여 즉 인적 구성의 포용성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수를 늘려 그 활동성을 확장하거나 소외계층 주민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법적·실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있어 절차적 대표성·정당성의 확보와 더불어 실천성, 인적 구성의 포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참여주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 협의체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협의체의 인적 구성 요인들을 균형 있게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다양한 실천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지역사회 내 실천성을 가진 다양한 인적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초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읍면동의 다양한 자생적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의 특성으로 인한 쟁점: 단순 재가서비스 제공 vs 주민 및 지역 특성에 기초한 창의적 서비스 추진

읍면동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의 양과 질적 수준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읍면동 단위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제도, 정책에 의해 설계되어 지자체의 공공행정을 통해 수행되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적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주민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읍면동 협의체의 서비스는 이러한 보완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보장이라는 사회적 지향점을 구체화해 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협의체 참여주체의 관점·의식, 지역별로 나타나는 인적·물적 자원의 양과 질 간의 격차 등은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갈등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협의체 위원이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단순 봉사활동에 그치거나 생활필수품을 배부하는 재가서비스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이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봉사단체, 주민조직 등을 통해 단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있어 관련 서비스의 중복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읍면동 협의체 활동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체 회의 및 합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창의적·실험적 서비스가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협의체의 경우 2018년 11월에 주택 붕괴 위험, 화재 등으로 주거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임시주택인 ‘안심하우스’를 개관하였으며(임규모, 2018), 2021년 6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대형 이불 등 세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빨래방’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임규모, 2021). 이는 단순 재가서비스를 기획하는 수준을 넘어 소외계층의 세심한 욕구에 기초한 틈새 생활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복지인프라 설치 및 운영으로 지역의 복지환경까지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읍면동 협의체에서 창의적·실험적인 서비스 추진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지역에서는 읍면동 협의체가 민관협력체계로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지역조직으로서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위원의 의견을 직접 지자체에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려 있음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협의체의 활동과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새로운 지역사회문제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읍면동 협의체의 서비스 변화는 필연적이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 특성에 기초한 창의적·실험적 서비스 추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5. 활동 성과 상의 쟁점: 읍면동 복지 활성화 vs 읍면동 복지 격차

읍면동 협의체 활동은 지역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 혹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체 활동에 있어 2017년 대비 2020년의 민간자원 발굴 건수, 서비스 연계 건수, 특화사업 수 등은 증가한 반면, 지역 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읍면동 협의체가 시군구의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별 활동 간 차이가 곧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읍면동 협의체 활동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과 소외계층의 보호, 새로운 인적·물적 자원 개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읍면동의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읍면동 협의체 활동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자원 연계가 가능해지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읍면동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또한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도농복합지역, 소규모 농촌지역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해당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응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현상은 읍면동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을 지속화시키고 있어 그에 따라 전국 읍면동 간의 복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복지 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상향 평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선의와 노력에만 기댄

다면 곤란할 것이며 협의체의 활동과 관련된 시군구 및 읍면동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복지 격차의 여러 가지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읍면동이 가진 기본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 지역주민이 가진 공동체의식 수준, 지역리더의 활동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미시적 측면에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광역시·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분석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 분석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제 3 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분석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개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 및 창출 성과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하여 선정한 14개 시군구의 24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한 달 간 모바일 기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일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지자체를 7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출하였다. 지자체 7대 유형은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함영진 외, 2018, p.163) 1유형(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특별시 자치구), 4유형(광역시 자치구), 5유형(도농복합시), 6유형(인구 4만 8천 이상 군), 7유형(인구 4만 8천 이하 군)으로 분류하였다(김희성 외, 2020). 조사 대상 지자체는 협의체 사무국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모집되었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시군구의 7대 유형 분류는 <표 3-1>과 같다.¹⁾

1) 14개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 지자체 7대 유형화를 층화 기준으로 활용하여 협의체를 선정했지만, 인식조사에 참

〈표 3-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시군구 유형 분류

(단위: 개)

시군구 유형 ¹⁾	모집단		표본집단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총계	229	3,490	14	242
(1유형) 광역 도시형	14	446	2	79
(2유형) 일반 도시형	26	319	3	41
(3유형) 대규모 제한 도시형	25	425	3	45
(4유형) 소규모 제한 도시형	44	685	1	21
(5유형) 도농형	38	793	2	26
(6유형) 대규모 농촌형	41	465	2	19
(7유형) 소규모 농촌형	41	357	1	11

주: 김희성 외(2020)의 지자체 유형 기준

조사 진행 결과, 전체 표본집단 4,013명 중 2,304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응답률은 57.4%로 집계되었다. 시군구별 최종 조사 현황은 〈표 3-2〉와 같다. 3유형의 ○○구(32.9%) 한 곳을 제외하고 시군구별 응답률은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2유형의 ○○시는 8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하고자 하는 의사 자체가 협의체의 활성화 수준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표본 추출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제시될 분석 결과를 전국적 수준에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3-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응답 표본 현황 및 응답률

(단위: 명, %)

유형	지역	표본 수	응답 표본 수	응답률*
	총계	4,013	2,304	57.4
1유형	〇〇시	717	478	66.7
	〇〇시	445	258	58.0
2유형	〇〇시	391	213	54.5
	〇〇시	54	44	81.5
	〇〇시	219	157	71.7
3유형	〇〇구	259	132	51.0
	〇〇구	292	96	32.9
	〇〇구	259	106	40.9
4유형	〇〇구	652	371	56.9
5유형	〇〇시	159	67	42.1
	〇〇시	159	114	71.7
6유형	〇〇군	105	55	52.4
	〇〇군	175	130	74.3
7유형	〇〇군	127	83	65.4

* 응답률은 전체 표본 대비 응답 표본

본 조사 결과 분석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표본에서는 2020년 기준 지자체 7대 유형별 전국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위원을 겸직한 경우에는 응답하는 일부 문항에서 2020년 기준 7대 지자체 유형별로 겸직 민간위원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였다(김희성 외, 2020; 보건복지부, 2020b)

조사표는 읍면동 협의체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되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세 차례 FGI와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임원진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되었다.²⁾

2) 읍면동 민간위원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 협의체 FGI에는 시군구별 읍면동 협의체에서 각각 9명, 5명, 7명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임원진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표 3-3〉 조사 완료 사례 수 및 가중값 적용 사례 수

(단위: 명, %)

항목		조사 완료 사례 수(명)	비율(%)	가중값 적용 사례 수(명) ¹⁾	비율(%)
사례 수		(2,304)	100.0	(2,304)	100.0
지자체 유형	1유형	(736)	31.9	(304)	13.2
	2유형	(414)	18.0	(216)	9.4
	3유형	(334)	14.5	(330)	14.3
	4유형	(371)	16.1	(470)	20.4
	5유형	(181)	7.9	(518)	22.5
	6유형	(185)	8.0	(279)	12.1
	7유형	(83)	3.6	(187)	8.1
시군구별	시	(1,331)	57.8	(1,039)	45.1
	군	(268)	11.6	(466)	20.2
	구	(705)	30.6	(799)	34.7
읍면동별	읍	(166)	7.2	(241)	10.5
	면	(501)	21.7	(697)	30.3
	동	(1,637)	71.1	(1,366)	59.3
성별	남성	(886)	38.5	(977)	42.4
	여성	(1,418)	61.5	(1,327)	57.6
연령별	20대	(16)	0.7	(9)	0.4
	30대	(77)	3.3	(62)	2.7
	40대	(338)	14.7	(329)	14.3
	50대	(927)	40.2	(937)	40.7
	60대	(803)	34.9	(827)	35.9
	70대 이상	(143)	6.2	(140)	6.1
협의체 직책별	위원장	(211)	9.2	(214)	9.3
	부위원장	(125)	5.4	(119)	5.2
	분과장	(69)	3.0	(72)	3.1
	총무, 사무국장, 간사, 서기	(152)	6.6	(149)	6.5
	위원	(1,698)	73.7	(1,686)	73.2
	그 외	(115)	5.0	(127)	5.5

합회와의 자문회의에서는 설문 영역체계 전반의 적절성과 세부 항목의 타당성 및 응답자의 이해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항목		조사 완료 사례 수(명)	비율(%)	가중값 적용 사례 수(명) ¹⁾	비율(%)
소속 단체, 기관 등	복지·교육·의료 관련 종사자 등	(554)	24.0	(504)	21.9
	통장·반장·이장	(547)	23.7	(578)	25.1
	주민자치위원	(684)	29.7	(722) [684]	31.3
	자원봉사단체 등	(797)	34.6	(831)	36.0
	자영업자	(399)	17.3	(392)	17.0
	일반주민	(696)	30.2	(692)	30.0
협의체 참여기간	1년 미만	(310)	13.5	(309)	13.4
	1년 이상~3년 미만	(695)	30.2	(735)	31.9
	3년 이상~5년 미만	(648)	28.1	(593)	25.7
	5년 이상~10년 미만	(547)	23.7	(563)	24.4
	10년 이상	(104)	4.5	(104)	4.5
자원봉사 활동 경력	경력 없음	(316)	13.7	(302)	13.1
	1년 미만	(97)	4.2	(93)	4.0
	1년 이상~3년 미만	(280)	12.2	(254)	11.0
	3년 이상~10년 미만	(792)	34.4	(796)	34.6
	10년 이상	(819)	35.5	(859)	37.3

주: '가중값 적용 사례 수' () 값은 2020년 7대 지자체 유형별 전국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비중을 고려한 가중치 기준, [] 값은 2020년 7대 지자체 유형별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비중을 고려한 가중치 기준(김희성 외, 2020; 보건복지부, 2020b)

주요 내용은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인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 등 총 6개 영역(응답자 일반 현황 제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의 특성 요소를 반영한 세부 항목을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 현황을 제외하고 전체 문항은 총 113개이며, 척도 문항은 모두 7점이다.

〈표 3-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 내용

영역	세부 항목
응답자 일반 현황	• 지역, 연령, 성별, 현재 직책, 소속 단체·기관 등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¹	•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1개 항목) •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경력(2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등의 정도(5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	•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1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1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인식 ²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4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5개 항목)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	•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3개 항목) •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5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 ²	•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3개 항목)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	•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5개 항목) •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 인식(5개 항목)

주 1: 정진경. (2012). 자원봉사 개념의 재해석과 통합적 적용의 탐색, p.34-37;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이경화. (201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20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함.

2: Fetterman, D. M. (2005b). Chapter 3: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in Fetterman, D. M., & Wandersman, A. (Eds.),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p.55-72;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2007). Guide to Measuring Community Core Capacities for Comprehensive Change Initiatives, p.72-74; Lee, M. J. & Levine, P. (2016). A New model for Citizen Engagement, p.42-44; Candid, (2021), Community Leadership Assessment Tool, p.6-23; 김희성 외. (2020). 복지 부문의 민관협력 성과와 혁신 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p.111-112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함.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 실태 분석

조사 결과 기초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읍면동 협의체 주요 현황 및 전반적 인식, 운영 전반, 성과 및 과제 등 영역별 세부 항목을 교차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영역별 세부 항목 분석의 경우, 읍면동 단위의 특성은 지자체 7대 유형과 읍면동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명목척도 외에 해당하는 문항은 읍면동 5분위(상위 20%, 하위 20%)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개인 단위의 특성은 직책별, 참여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에 따른 응답자 일반 현황은 표 <표 3-5>와 같다. 지자체 유형에서는 5유형(22.5%), 4유형(20.4%)이 많았으며 7유형(8.1%)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읍면동별 기준에서는 동(59.3%)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면(30.3%), 읍(1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57.6%로 남성 42.4%보다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40.7%, 35.9%로 다수를 이루었고, 20대와 30대는 각각 0.4%, 2.7%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협의체 직책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위원이 73.2%로 가장 많았고 위원장은 9.3%, 총무·사무국장·간사·서기는 6.5%, 그 외는 5.5%, 부위원장은 5.2%, 부과장은 3.1%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속 단체, 기관 등은 자원봉사단체 등이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주민자치위원 31.3%, 일반주민 30.0%, 통장·반장·이장 25.1%, 복지·교육·의료 관련 종사자 등 2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의 일반 현황

(단위: %, 개월)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지자체 유형	1유형	13.2	100.0	0.0	0.0	0.0	0.0	0.0	0.0
	2유형	9.4	0.0	100.0	0.0	0.0	0.0	0.0	0.0
	3유형	14.3	0.0	0.0	100.0	0.0	0.0	0.0	0.0
	4유형	20.4	0.0	0.0	0.0	100.0	0.0	0.0	0.0
	5유형	22.5	0.0	0.0	0.0	0.0	100.0	0.0	0.0
	6유형	12.1	0.0	0.0	0.0	0.0	0.0	100.0	0.0
	7유형	8.1	0.0	0.0	0.0	0.0	0.0	0.0	100.0
시군구별	시	45.1	29.3	20.8	0.0	0.0	49.9	0.0	0.0
	군	20.2	0.0	0.0	0.0	0.0	0.0	60.0	40.0
	구	34.7	0.0	0.0	41.2	58.8	0.0	0.0	0.0
읍면동별	읍	10.5	5.7	9.1	0.0	0.0	48.7	20.7	15.9
	면	30.3	2.2	12.8	0.0	0.0	30.8	32.9	21.3
	동	59.3	20.2	7.7	24.1	34.4	13.6	0.0	0.0
성별	남성	42.4	11.0	8.5	9.1	18.4	28.7	14.4	9.9
	여성	57.6	14.8	10.0	18.1	21.8	17.9	10.5	6.8
연령별	20대	0.4	26.4	39.0	21.0	13.5	0.0	0.0	0.0
	30대	2.7	24.7	11.0	14.3	20.4	13.8	4.9	10.9
	40대	14.3	14.8	9.8	9.0	26.1	22.6	11.5	6.1
	50대	40.7	13.1	9.1	13.0	23.1	23.8	10.0	7.9
	60대	35.9	11.5	9.4	16.1	17.2	21.8	14.8	9.2
	70대 이상	6.1	14.5	7.5	24.7	8.2	22.5	16.2	6.4
협의체 직책별	위원장	9.3	13.1	8.8	20.3	10.0	25.4	12.0	10.5
	부위원장	5.2	13.9	10.6	15.0	23.4	16.9	12.7	7.6
	분과장	3.1	6.3	10.1	15.0	47.3	11.9	0.0	9.3
	총무, 사무국장, 간사, 서기	6.5	11.9	8.4	14.5	35.6	11.5	9.1	9.0
	위원	73.2	14.0	9.7	13.5	17.3	23.8	13.7	8.0
	그 외	5.5	8.5	4.1	14.0	47.8	20.3	3.6	1.8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소속 단체, 기관 등	복지·교육·의료 관련 종사자 등	21.9	17.6	8.3	19.2	19.3	16.5	11.1	8.0
	통장·반장·이장	25.1	11.4	8.3	13.0	24.8	26.7	9.1	6.6
	주민자치위원	31.3	7.6	9.8	19.0	24.5	16.2	14.4	8.4
	자원봉사단체 등	36.0	11.0	10.3	16.3	14.9	26.9	12.7	7.9
	자영업자	17.0	13.5	9.5	11.8	28.1	19.7	10.0	7.5
	일반주민	30.0	12.3	9.8	15.8	19.8	19.4	15.7	7.1
협의체 참여 기간	1년 미만	13.4	12.6	17.4	6.1	10.2	38.9	9.8	5.1
	1년 이상~3년 미만	31.9	13.2	10.0	6.9	12.4	23.4	15.4	18.7
	3년 이상~5년 미만	25.7	17.2	10.8	15.1	14.9	23.2	15.3	3.4
	5년 이상~10년 미만	24.4	9.7	3.9	24.0	40.0	12.7	7.2	2.4
	10년 이상	4.5	11.1	2.5	34.1	31.5	16.5	4.3	0.0
	평균: (개월)	46.44	43.46	31.93	66.95	61.77	36.83	42.89	25.37
자원 봉사 활동 경력	경력 없음	13.1	16.3	5.4	16.0	30.6	16.1	9.5	6.0
	1년 미만	4.0	14.7	12.9	11.7	15.0	21.5	9.7	14.5
	1년 이상~3년 미만	11.0	17.2	12.3	8.5	20.9	15.8	13.7	11.5
	3년 이상~10년 미만	34.6	11.6	10.4	13.5	24.2	19.4	12.5	8.5
	10년 이상	37.3	12.3	8.6	16.4	13.7	29.7	12.5	6.8

2.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현황에서는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경력,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활동기간에 대해 파악한 결과, 활동기간 전체 평균은 약 4년(46.44개월)이었다. 1년 이상~3년 미만(31.9%)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3년 이상~5년 미만(25.7%), 5년 이상~10년 미만(24.4%), 1년 미만(13.4%), 10년 이상(4.5%)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활동기간이 가장 긴 3유형(대규모 제한 도시형)과 가장 짧은 7유형(소규모 농촌형) 간 차이는 약 3.46년(41.58개월)으로, 지자체 유형 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단위: %, 개월)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평균: (개월)	46.44	43.46	31.93	66.95	61.77	36.83	42.89	25.37
1년 미만	13.4	12.8	24.9	5.7	6.7	23.2	10.8	8.4
1년 이상~3년 미만	31.9	31.9	34.1	15.3	19.4	33.1	40.5	73.5
3년 이상~5년 미만	25.7	33.6	29.7	27.2	18.9	26.5	32.4	10.8
5년 이상~10년 미만	24.4	17.9	10.1	41.0	48.0	13.8	14.6	7.2
10년 이상	4.5	3.8	1.2	10.8	7.0	3.3	1.6	0.0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위원 활동기간을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읍면동별로는 동 단위 활동기간 평균이 53.61개월로 가장 길고 면 단위 평균은 39.08개월, 읍 단위 평균은 27.17개월이었다. 읍면동 5분위 기준은 상위 20%가 82.89개월인 반면, 하위 20%는 20.30개월로 62.59개월(약 5.22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활동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3-7〉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단위: %, 개월)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30)	(490)	-
평균: (개월)	46.44	27.17	39.08	53.61	82.89	20.30	62.59
1년 미만	13.4	25.0	15.4	10.4	4.5	31.7	-27.2
1년 이상~3년 미만	31.9	48.0	41.2	24.3	11.1	54.6	-43.5
3년 이상~5년 미만	25.7	22.1	26.5	26.0	7.1	10.6	-3.5
5년 이상~10년 미만	24.4	4.2	14.0	33.3	62.1	3.1	59
10년 이상	4.5	0.8	3.0	6.0	15.2	0.0	15.2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활동기간을 개인 단위로 보면, 직책별에서 임원의 활동기간은 평균 55.51개월이고 일반위원의 활동기간은 평균 44.24개월로 직책에 따른 활동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52.22개월)와 70대 이상(52.16개월)의 활동기간이 긴 편으로 약 4년을 상회하는 정도이고, 40대(41.53개월)와 50대(43.63개월)는 3년 정도이며, 20대(27.75개월)와 30대(28.00개월)는 2년 정도였다.

〈표 3-8〉 직책별·연령별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활동기간

(단위: %, 개월)

항목	전체	직책별		연령별					
		임원	일반 위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9)	(62)	(329)	(937)	(827)	(140)
평균: (개월)	46.44	55.51	44.24	27.75	28.00	41.53	43.63	52.22	52.16
1년 미만	13.4	7.2	15.1	54.0	28.6	18.0	14.5	9.0	12.4
1년 이상~3년 미만	31.9	27.1	33.2	25.5	40.4	32.8	33.8	29.7	26.0
3년 이상~5년 미만	25.7	25.6	25.9	5.6	15.9	20.9	24.9	28.6	31.1
5년 이상~10년 미만	24.4	33.6	21.7	4.4	15.0	26.3	23.2	26.3	23.2
10년 이상	4.5	6.6	4.2	10.5	0.0	2.0	3.6	6.4	7.3

주: 전체 응답

나.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경력

1) 자원봉사활동 경험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다른 단체·모임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6.9%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5 유형(도농형)에서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예	86.9	83.8	92.5	85.3	80.3	90.6	89.7	90.4
아니오	13.1	16.2	7.5	14.7	19.7	9.4	10.3	9.6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를 읍면동 단위로 보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면 단위(90.2%)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읍(89.6%), 동(8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예	86.9	89.6	90.2	84.8
아니오	13.1	10.4	9.8	15.2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를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의 경우 임원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90.6%로 일반위원 85.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간별로는 읍면동 협의체에서 3년 이상~5년 미만으로 활동했다는 응답자가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이 91.1%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으로 활동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8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11〉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단위: %)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예	86.9	90.6	85.9	82.2	86.1	91.1	86.2	87.1
아니오	13.1	9.4	14.1	17.8	13.9	8.9	13.8	12.9

주: 전체 응답

2) 자원봉사활동 경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그 경력이 10년 이상(42.9%)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 유형별로는 5유형(도농형)과 3유형(대규모 제한 도시형)에서 과반수가 나왔다.

〈표 3-1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002)	(255)	(200)	(281)	(377)	(469)	(251)	(169)
1년 미만	4.6	5.3	6.0	3.9	3.7	4.3	3.6	8.0
1년 이상~3년 미만	12.7	17.2	15.7	7.7	14.1	8.5	13.9	17.3
3년 이상~5년 미만	15.1	14.7	16.7	14.7	17.4	11.6	15.1	18.7
5년 이상~10년 미만	24.7	21.4	24.5	23.5	33.6	21.3	24.7	21.3
10년 이상	42.9	41.3	37.1	50.2	31.2	54.3	42.8	34.7

주: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자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 경향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3-1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002)	(216)	(629)	(1,158)
1년 미만	4.6	6.0	4.6	4.4
1년 이상~3년 미만	12.7	10.8	13.0	12.9
3년 이상~5년 미만	15.1	14.5	13.9	15.8
5년 이상~10년 미만	24.7	20.6	24.3	25.7
10년 이상	42.9	48.2	44.2	41.2

주: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자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는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1년 미만에서 3년 이상~5년 미만까지는 임원보다 일반위원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면, 5년 이상~10년 미만과 10년 이상부터는 임원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경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눈에 띄는 점은 자원봉사활동이 10년 이상이면서 읍면동 참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63.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14〉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

(단위: %)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002)	(496)	(1,541)	(254)	(632)	(540)	(485)	(91)
1년 미만	4.6	3.3	5.0	14.1	5.9	1.1	2.9	0.0
1년 이상~3년 미만	12.7	8.5	13.9	17.1	18.4	11.3	6.0	4.2
3년 이상~5년 미만	15.1	10.8	16.3	12.7	18.3	17.0	10.4	12.6
5년 이상~10년 미만	24.7	29.5	23.3	22.6	19.5	21.5	37.1	19.6
10년 이상	42.9	48.0	41.5	33.4	37.9	49.1	43.6	63.6

주: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만 응답함

다.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타적 동기로 구분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44.1%)', '주민으로서 동네(읍면동)일에 참여하기 위해서(34.2%)', '자신의 지식 및 기술

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8.6%)'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
 기적 동기로 구분되는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3.2%)',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2.5%)'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로써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참여 주요 동기는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4.1	43.2	44.0	43.9	41.1	46.5	45.4	45.2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8.6	11.3	9.5	8.1	6.4	9.2	6.4	11.4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34.2	32.0	32.6	34.4	36.5	33.6	36.2	32.5
자신의 인격 성장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	4.0	3.4	2.4	5.7	0.6	2.5	4.8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2.5	1.6	1.9	3.3	4.1	1.8	1.9	1.2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3.2	3.9	5.9	4.8	3.0	2.4	1.9	0.6
기타	4.2	4.0	2.7	3.1	3.3	5.8	5.6	4.2

주: 2개 선택 응답/ 전체 응답

다음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를 읍면동 단위에서 살펴보면, 읍 단위에서 이타적 동기로 구분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46.4%)’,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9.6%)’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 단위에서 이기적 동기로 구분되는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3.5%)’,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3.0%)’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 단위에서는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35.7%)’가 응답 비율 중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표 3-16〉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4.1	46.4	45.3	43.1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8.6	9.6	7.6	8.9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34.2	30.3	35.7	34.2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	1.9	3.1	3.5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2.5	0.5	1.9	3.0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3.2	4.5	1.9	3.7
기타	4.2	6.7	4.5	3.6

주: 2개 선택 응답/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를 개인 단위에서 살펴보면, 직책별로 임원과 일반위원 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이타적 동기로 구분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45.8%)'가 응답 비율 중 높은 편에 속했다. 참여기간별로는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에서 이타적 동기로 구분되는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10.2%)'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이 10년 이상에서 이기적 동기로 구분되는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5.5%)'와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4.9%)'가 다소 높았다.

〈표 3-17〉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참여 주요 동기

(단위: %)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4.1	45.8	43.5	43.0	44.6	44.9	43.5	42.0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8.6	8.2	8.8	10.2	9.4	8.1	7.6	6.8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34.2	34.0	34.3	30.6	32.9	34.9	36.8	36.5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	3.3	3.2	2.6	3.2	2.5	4.3	3.7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2.5	2.2	2.5	2.1	2.1	2.4	2.6	5.5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3.2	3.6	3.1	3.5	3.2	3.2	2.8	4.9
기타	4.2	2.9	4.5	8.0	4.6	4.0	2.4	0.7

주: 2개 선택 응답/ 전체 응답

라.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정례회의, 특화사업 등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서 민간위원들의 참석 정도를 살펴보면,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60% 이상 참석한다는 비율이 82.8%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80~100% 참석(58.5%), 60~80% 참석(24.3%), 40~60% 참석(9.4%), 20~40% 참석(4.3%), 0~20% 참석(3.5%) 순으로 참석 정도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7유형(소규모 농촌형)에서 80~100% 참석 정도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에서는 42.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3-1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0~20% 참석	3.5	2.7	4.3	3.3	6.7	2.8	1.1	1.2
20~40% 참석	4.3	4.2	6.3	3.6	8.4	2.8	1.6	1.2
40~60% 참석	9.4	10.5	10.4	9.9	13.2	6.1	11.4	2.4
60~80% 참석	24.3	20.7	16.7	23.1	28.8	26.0	30.3	16.9
80~100% 참석	58.5	62.0	62.3	60.2	42.9	62.4	55.7	78.3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를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80~100% 참석 정도가 면 단위에서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읍 단위와 동 단위는 각각 54.3%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0~20% 참석 정도는 동 단위에서 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는 면 단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편이고 동 단위에서는 낮게 나타난 편이다.

〈표 3-1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0~20% 참석	3.5	1.4	1.7	4.7
20~40% 참석	4.3	4.3	2.1	5.4
40~60% 참석	9.4	7.9	7.6	10.6
60~80% 참석	24.3	32.0	20.4	25.0
80~100% 참석	58.5	54.3	68.2	54.3

주: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를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 확인한 차이를 보였는데, 80~100% 참석은 임원 79.7%, 일반위원 52.5%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별로는 참여한 지 1년 미만은 0~20% 참석이 4.9%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은 80~100% 참석이 71.0%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이 길수록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0〉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단위: %)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0~20% 참석	3.5	0.6	4.3	4.9	3.3	2.6	4.2	1.4
20~40% 참석	4.3	0.8	5.3	3.5	4.9	4.7	4.3	0.0
40~60% 참석	9.4	4.9	10.6	8.4	8.0	9.9	10.9	11.1
60~80% 참석	24.3	14.0	27.3	24.2	23.5	24.0	27.4	16.4
80~100% 참석	58.5	79.7	52.5	59.1	60.3	58.9	53.2	71.0

주: 전체 응답

마.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동의 정도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해서 파악하였다.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점, 경제적 대가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으로 동의한 비중이 90% 이상 높게 나왔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7유형(소규모 농촌형)과 6유형(대규모 농촌형)에서 각각 97.6%, 97.3%로 매우 긍정적인 동의 정도를 보였다.

〈표 3-21〉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 동의 정도

(단위: %)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협의체 활동은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긍정	90.0	91.3	90.1	88.6	85.4	90.6	94.6	92.8
	부정	2.0	2.9	3.6	2.1	2.4	1.1	0.5	2.4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자발적으로 돕는 공익적인 것이다.	긍정	93.7	95.2	94.9	91.9	90.6	94.5	95.1	96.4
	부정	0.9	1.1	1.2	1.5	1.1	0.6	0.5	0.0
협의체 활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긍정	91.0	90.1	90.3	87.1	88.7	93.4	93.5	95.2
	부정	4.2	5.0	4.3	6.3	3.8	4.4	1.1	3.6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	긍정	90.6	89.8	89.9	88.9	86.3	92.3	95.7	94.0
	부정	4.2	4.5	4.1	3.6	5.9	4.4	1.6	3.6
협의체 활동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긍정	94.5	95.2	96.6	90.4	93.8	93.9	97.3	97.6
	부정	1.7	1.0	0.7	1.8	1.6	3.3	0.5	1.2

주: 7점 척도(5점~7점 “긍정”; 4점 “보통”; 1점~3점 “부정”) / 보통 제외 / 전체 응답

3.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

읍면동 협의체 운영 현황은 민간위원장의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세부 항목은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운영 여부,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로 구성했다.

가.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운영 여부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협의체 내에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60.3%를 차지하였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분과가 구성된 경우는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에서 95.2%로 가장 높았고, 분과 구성이 안 된 경우는 6유형(대규모 농촌형)에서 68.4%로 가장 높았다.

〈표 3-2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분과 구성 운영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42)	(79)	(41)	(45)	(21)	(26)	(19)	(11)
예	60.3	53.2	68.3	66.7	95.2	46.2	31.6	72.7
아니오	39.7	46.8	31.7	33.3	4.8	53.8	68.4	27.3

주: 위원장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 분과 구성 운영 여부를 읍면동별로 보면, 동 단위에서 분과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6%로 높게 나타났고, 읍 단위에서는 분과 구성 여부를 각각 50.0%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의 분과 구성 운영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42)	(14)	(64)	(164)
예	60.3	50.0	51.6	64.6
아니오	39.7	50.0	48.4	35.4

주: 위원장만 응답함

나.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를 확인한 결과, 매월(45.9%) 진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격월에 한 번(26.0%), 분기에 한 번(16.9%), 기타(8.7%), 반기에 한 번(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를 매월 진행하는 경우는 4유형(광역시·자치구)에서 76.2%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5유형(도농형)과 6유형(대규모 농촌형)과 7유형(소규모 농촌형)에서는 각각 11.5%, 21.1%,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24〉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42)	(79)	(41)	(45)	(21)	(26)	(19)	(11)
매월	45.9	57.0	41.5	53.3	76.2	11.5	21.1	18.2
격월에 한 번	26.0	38.0	17.1	37.8	14.3	3.8	26.3	0.0
분기에 한 번	16.9	0.0	34.1	4.4	4.8	38.5	42.1	54.5
반기에 한 번	2.5	1.3	0.0	0.0	0.0	11.5	0.0	18.2
기타	8.7	3.8	7.3	4.4	4.8	34.6	10.5	9.1

주: 위원장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동 단위에서 매월 진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7%로 읍 단위와 면 단위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읍 단위와 면 단위에서는 정례회의를 분기에 한 번 진행한다는 응답이 각각 35.7%, 35.9%로 높게 나타났다. 동 단위에서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가 비교적 자주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정례회의 주기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42)	(14)	(64)	(164)
매월	45.9	28.6	21.9	56.7
격월에 한 번	26.0	28.6	15.6	29.9
분기에 한 번	16.9	35.7	35.9	7.9
반기에 한 번	2.5	0.0	7.8	0.6
기타	8.7	7.1	18.8	4.9

주: 위원장만 응답함

다.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읍면동 협의체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추진단 참여 등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읍면동 협의체는 43.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마을복지계획 참여 여부는 지자체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응답에서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과 5유형(도농형)이 100.0%로 파악된 반면, 마을복지계획 미수립 응답에서는 3유형(대규모 제한 도시형)과 2유형(일반 도시형)과 7유형(소규모 농촌형)이 각각 95.6%, 95.1%, 90.9%로 파악되었다.

〈표 3-26〉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42)	(79)	(41)	(45)	(21)	(26)	(19)	(11)
예	43.0	55.7	4.9	4.4	100.0	100.0	42.1	9.1
아니오	57.0	44.3	95.1	95.6	0.0	0.0	57.9	90.9

주: 위원장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의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동 단위(46.3%), 면 단위(35.9%), 읍 단위(3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 단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과반수가 마을복지계획 미수립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활동이 활발한 상황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7〉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42)	(14)	(64)	(164)
예	43.0	35.7	35.9	46.3
아니오	57.0	64.3	64.1	53.7

주: 위원장만 응답함

라. 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시군구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간 연계 수준과 관련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시군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74.8%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 시군구 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에서 2유형(일반 도시형)이 82.9%로 가장 높았고, 5유형(도농형)은 57.7%로 가장 낮았다. 두 유형 간 편차는 25.2%p로 파악되었다.

〈표 3-2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42)	(79)	(41)	(45)	(21)	(26)	(19)	(11)
예	74.8	70.9	82.9	82.2	76.2	57.7	73.7	81.8
아니오	25.2	29.1	17.1	17.8	23.8	42.3	26.3	18.2

주: 위원장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동 단위(76.2%)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는 면 단위(73.4%), 읍 단위(64.3%) 순으로 높게 나왔다.

〈표 3-2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42)	(14)	(64)	(164)
예	74.8	64.3	73.4	76.2
아니오	25.2	35.7	26.6	23.8

주: 위원장만 응답함

마.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 수준과 관련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6.0%로 나타난 가운데, 지자체 유형별로는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이 100.0%로 가장 높았고 7유형(소규모 농촌형)이 54.5%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위원장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상황이 지역 유형별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30〉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지자체 유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42)	(79)	(41)	(45)	(21)	(26)	(19)	(11)
예	86.0	88.6	82.9	91.1	100.0	88.5	68.4	54.5
아니오	14.0	11.4	17.1	8.9	0.0	11.5	31.6	45.5

주: 위원장만 응답함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를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동(90.2%)에서 가장 높았다.

〈표 3-31〉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기구 운영 여부

(단위: %)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	면	동
사례 수	(242)	(14)	(64)	(164)
예	86.0	78.6	76.6	90.2
아니오	14.0	21.4	23.4	9.8

주: 위원장만 응답함

4.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 인식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에 관한 인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세부 항목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인식,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을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가.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우선,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은 7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5.87점으로 그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지지 수준을 묻는 응답은 5.99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협의체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의 수립 정도에 대한 응답은 5.96점으로 인식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대한 응답은 5.76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고, 협의체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인지하는 정도도 5.7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로써 협의체 방향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7유형(소규모 농촌형)이 5.96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이 5.73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표 3-3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84	5.92	5.90	5.76	5.72	5.86	5.92	5.92
협의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	5.96	6.01	6.03	5.90	5.78	6.01	6.01	6.08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6	5.85	5.80	5.69	5.63	5.75	5.86	5.86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5.99	6.06	6.04	5.90	5.87	6.03	6.06	6.07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7	5.84	5.85	5.70	5.65	5.80	5.84	5.82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 위에서는 6.03점으로 매우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그다음 면 단위에서는 5.88점, 동 단위에서는 5.84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읍면동 5분위에 따르면 상위 20%는 6.38점인 반면, 하위 20%는 5.33점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에 대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편차가 1.05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87	6.03	5.88	5.84	6.38	5.33	1.05
협의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	5.96	6.11	6.00	5.91	6.44	5.42	1.02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6	5.90	5.76	5.73	6.30	5.22	1.08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5.99	6.17	6.00	5.95	6.48	5.47	1.01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7	5.95	5.74	5.75	6.30	5.22	1.08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다음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 임원이 5.98점이고 일반위원은 5.84점으로 임원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협의체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의 수립 정도와 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지지 수준을 묻는 응답에서 임원의 경우에는 각각 6.12점, 6.08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참여기간별로 살펴보면, 읍면동 협의체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협의체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기간이 10년 이상(5.78점)인 경우보다 1년 미만(5.89점)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87	5.98	5.84	5.92	5.89	5.86	5.81	5.92
협의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	5.96	6.12	5.91	5.96	5.98	5.98	5.90	5.98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6	5.85	5.73	5.80	5.78	5.74	5.71	5.84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5.99	6.08	5.96	6.02	6.03	5.98	5.90	6.09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5.77	5.86	5.74	5.89	5.76	5.75	5.73	5.78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인식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5.18점으로 인식 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세부 문항별로는 협의체에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5.53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4.51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로써 현재 협의체 내 민간위원들의 열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신규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모집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35〉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18	5.20	5.27	5.02	5.04	5.31	5.22	5.24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	4.51	4.44	4.64	4.45	4.56	4.60	4.38	4.37
협의체에는 지역 소재 단체나 기관, 직업과 전문성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5.24	5.41	5.33	5.00	5.02	5.34	5.30	5.49
협의체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다.	5.53	5.64	5.63	5.36	5.29	5.72	5.54	5.59
협의체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관심과 특기, 전문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	5.19	5.11	5.20	4.99	5.00	5.39	5.41	5.19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증시한다.	5.44	5.41	5.54	5.29	5.35	5.52	5.46	5.54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회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우선 읍 단위가 5.48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면 단위와 동 단위가 각각 5.19점, 5.12점으로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5분위별로 보면, 상위 20%는 5.79점인 반면, 하위 20%는 4.47점으로 그 편차는 1.32점이었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협의체 참여 희망 주민 규모와 협의체 위원 배경의 다양성, 위원 개인의 특기 및 전문성 발휘 기회 수준에서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36〉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18	5.48	5.19	5.12	5.79	4.47	1.32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	4.51	4.73	4.42	4.51	5.06	3.64	1.42
협의체에는 지역 소재 단체나 기관, 직업과 전문성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5.24	5.60	5.25	5.17	5.91	4.53	1.38
협의체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다.	5.53	5.85	5.53	5.47	6.13	4.95	1.18
협의체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관심과 특기, 전문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	5.19	5.51	5.26	5.09	5.88	4.40	1.48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	5.44	5.72	5.50	5.35	5.98	4.83	1.15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의 개인 단위를 살펴보면, 직책별로는 일반위원이 5.19점인 반면, 임원은 5.15점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에 대해 임원보다는 일반위원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에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만 유일하게 임원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으며 그 외에는 모두 일반위원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다.

참여기간별로는 읍면동 협의체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모든 세부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참여 희망 주민 규모와 협의체 위원 배경의 다양성, 위원 개인의 특기 및 전문성 발휘 기회 수준에서 참여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는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3-37〉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18	5.15	5.19	5.38	5.21	5.16	5.07	5.12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	4.51	4.46	4.51	4.70	4.53	4.46	4.45	4.39
협의체에는 지역 소재 단체나 기관, 직업과 전문성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5.24	5.16	5.26	5.48	5.29	5.26	5.07	5.06
협의체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다.	5.53	5.57	5.51	5.75	5.54	5.51	5.40	5.57
협의체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관심과 특기, 전문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	5.19	5.15	5.20	5.36	5.24	5.17	5.07	5.05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	5.44	5.41	5.45	5.61	5.45	5.41	5.34	5.52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5.71점으로 수행 인식이 긍정적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원들의 기대 역할 이해도(5.59점), 협의체 활동 참여의 자발성(5.71점), 협의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5.79점), 위원 상호 간의 참여 동기 유발(5.63점), 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5.85점)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1유형(광역 도시형)이 5.84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이 5.48점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표 3-38〉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71	5.84	5.83	5.69	5.48	5.75	5.81	5.76
협의체 위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5.59	5.65	5.69	5.53	5.33	5.68	5.64	5.75
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다.	5.71	5.86	5.85	5.75	5.46	5.72	5.76	5.72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5.79	5.94	5.92	5.76	5.54	5.81	5.91	5.86
협의체 위원들은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5.63	5.77	5.74	5.61	5.40	5.67	5.77	5.63
협의체 위원 각각의 기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85	6.00	5.96	5.82	5.65	5.87	5.95	5.86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가 5.88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면 단위 5.72점, 동 단위 5.6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동 5분위별로는 상위 20%가 6.27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수준과 달리, 하위 20%는 5.18점으로 그 편차가 1.09점으로 집계돼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9〉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71	5.88	5.72	5.68	6.27	5.18	1.09
협의체 위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5.59	5.81	5.60	5.54	6.14	5.02	1.12
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다.	5.71	5.88	5.69	5.68	6.23	5.19	1.04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5.79	5.95	5.83	5.74	6.36	5.30	1.06
협의체 위원들은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5.63	5.75	5.65	5.61	6.22	5.06	1.16
협의체 위원 각각의 기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85	6.03	5.83	5.83	6.39	5.34	1.05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 임원은 5.75점, 일반위원은 5.70점으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이었다.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본 결과, 협의체 활동 참여의 자발성과 위원 상호 간의 참여 동기 유발, 협의체 위원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에 대해서는 임원과 일

반위원 간 격차가 0.0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파악되었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78점으로 가장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5.61점으로 다소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3-40〉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수행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71	5.75	5.70	5.78	5.73	5.77	5.61	5.67
협의체 위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5.59	5.62	5.57	5.69	5.63	5.58	5.49	5.53
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다.	5.71	5.75	5.69	5.73	5.70	5.81	5.60	5.65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5.79	5.82	5.78	5.87	5.80	5.86	5.67	5.73
협의체 위원들은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5.63	5.68	5.62	5.68	5.64	5.71	5.53	5.60
협의체 위원 각각의 기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85	5.90	5.84	5.94	5.88	5.89	5.74	5.84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라.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협의체 위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관련, 전체 평균은 5.70점으로 긍정적 인식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경청과

존중의 태도 수준(5.82점), 민주적 의사결정 합의 수준(5.79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역사회보장 정보 탐색 수준(5.55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보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에게 제공되는 정부 및 시군구의 복지사업 현황 및 동향, 복지 취약계층에 관련된 정보 공유 지원 등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대규모 제한도시형)과 4유형(소규모 제한도시형)이 다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41〉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70	5.78	5.75	5.54	5.46	5.87	5.74	5.84
협의체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5.82	6.00	5.90	5.72	5.48	5.97	5.92	5.92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다.	5.65	5.72	5.68	5.57	5.40	5.83	5.71	5.69
협의체 운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를 제공받는다.	5.55	5.64	5.53	5.44	5.37	5.70	5.50	5.71
협의체 위원들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5.79	5.85	5.86	5.60	5.54	5.98	5.82	5.96
협의체의 민간위원은 시군구·읍면동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결정한다.	5.69	5.71	5.79	5.35	5.50	5.89	5.75	5.94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가 5.94점으로 가장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면 단위 5.76점, 동 단위 5.6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5분위별로 상위 20%는 6.26점으로 매우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인 반면, 하위 20%는 5.11점으로 그 편차가 1.15점으로 확인되었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보장 정보 탐색 수준과 민관의 대등한 협력 관계 수준에서 그 격차가 각각 1.33점, 1.29점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42〉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70	5.94	5.76	5.63	6.26	5.11	1.15
협의체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5.82	6.03	5.87	5.76	6.37	5.28	1.09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다.	5.65	5.86	5.69	5.59	6.22	5.15	1.07
협의체 운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를 제공받는다.	5.55	5.79	5.57	5.50	6.18	4.85	1.33
협의체 위원들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5.79	6.00	5.88	5.70	6.26	5.31	0.95
협의체의 민간위원은 시군 구·읍면동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결정한다.	5.69	6.02	5.77	5.58	6.26	4.97	1.29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 임원은 전체 평균이 5.74점이고 일반위원은 5.68점으로 임원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83점인 반면, 5년 이상~10년 미만은 5.59점, 10년 이상은 5.63점으로 참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3〉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위원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70	5.74	5.68	5.83	5.74	5.70	5.59	5.63
협의체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5.82	5.86	5.81	5.94	5.85	5.86	5.70	5.72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다.	5.65	5.74	5.62	5.77	5.66	5.65	5.58	5.66
협의체 운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를 제공받는다.	5.55	5.57	5.54	5.65	5.60	5.52	5.45	5.59
협의체 위원들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5.79	5.82	5.77	5.89	5.85	5.77	5.67	5.76
협의체의 민간위원은 시군구·읍면동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결정한다.	5.69	5.72	5.67	5.88	5.74	5.71	5.53	5.41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5.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인식과 관련하여 세부 항목으로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은 5.84점으로 긍정적인 편에 속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자체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심과 지지 수준(5.62점), 협의체 공공위원장(읍면동장)의 적극성(5.86점), 읍면동 공무원(간사, 서기)의 적극성(6.04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 3유형(대규모 제한 도시형)과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은 다수 항목에서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44〉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84	5.86	5.86	5.74	5.66	5.98	5.89	5.91
지자체 단체장은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5.62	5.59	5.50	5.63	5.47	5.83	5.64	5.49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5.86	5.93	5.95	5.74	5.70	5.96	5.88	5.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한다.	6.04	6.05	6.14	5.86	5.82	6.15	6.15	6.29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확인해 본 결과, 읍 단위는 6.03점으로 매우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면 단위는 5.89점, 동 단위는 5.78점으로 파악되었다. 읍면동 5분위별로는 상위 20%가 6.39점, 하위 20%는 5.19점으로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는 1.20점이었다. 특히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서는 그 격차가 1.33점으로 인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읍면동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84	6.03	5.89	5.78	6.39	5.19	1.20
지자체 단체장은 읍면동 협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5.62	5.79	5.63	5.58	6.22	4.89	1.33
협약체의 공공위원장은 읍면동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5.86	6.00	5.92	5.80	6.37	5.22	1.1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한다.	6.04	6.29	6.13	5.95	6.58	5.46	1.12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 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위원에 비해 임원의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에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식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읍면동 협의회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6〉 직책별·참여기간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84	5.85	5.83	6.00	5.85	5.91	5.70	5.67
지자체 단체장은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5.62	5.64	5.61	5.81	5.58	5.68	5.51	5.58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5.86	5.88	5.86	6.02	5.90	5.91	5.71	5.7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한다.	6.04	6.04	6.03	6.16	6.07	6.14	5.89	5.70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나.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점수는 5.14점으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취지와 목적, 협의체 위원의 역할, 활동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 등 기본교육 지원(5.43점),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연계, 상담기법, 마을복지계획 수립 방법 등 심화교육 지원(5.38점), 공동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타 지역 팀장 등 협의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5.07점), 협의체 위원 의견 수렴,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지원, 마을복지학교 등 협의체 운영 적극적 지원(5.22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협의체 운영 재정 지원(4.5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

는 타 유형에 비해 6유형(대규모 농촌형)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낮게 평가됐고, 7유형(소규모 농촌형) 또한 협의회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 협의회 운영 적극적 지원, 협의회 운영 재정 지원 등에서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3-47〉 지자체 유형별 협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14	5.18	5.30	5.19	5.24	5.35	4.37	5.10
협의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43	5.52	5.61	5.41	5.46	5.62	4.65	5.63
협의회 위원들에게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심화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38	5.43	5.57	5.41	5.42	5.60	4.57	5.49
읍면동 협의회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5.07	5.06	5.22	5.26	5.14	5.29	4.34	4.92
시군구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22	5.23	5.35	5.32	5.30	5.48	4.44	5.11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기부금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4.59	4.65	4.75	4.55	4.87	4.75	3.83	4.33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협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을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동 단위가 5.23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협의회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에 대해 동 단위에서 5.19점이 나온

것에 비해 읍 단위와 면 단위에서는 각각 4.99점, 4.89점이 나왔다. 이 두 단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읍면동 5분위별을 보면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큰 가운데, 특히 협의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 협의체 운영 재정 지원, 협의체 운영 적극적 지원 등에서 차이가 각각 2.10점, 2.00점, 1.98점으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48〉 읍면동별 협의체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14	5.11	4.96	5.23	5.85	3.92	1.93
협의체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43	5.43	5.29	5.49	6.08	4.35	1.73
협의체 위원들에게 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심화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38	5.34	5.22	5.46	6.09	4.27	1.82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5.07	4.99	4.89	5.19	5.83	3.73	2.1
시군구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22	5.18	5.03	5.32	5.90	3.92	1.98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기부금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4.59	4.61	4.35	4.70	5.34	3.34	2.00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협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을 개인 단위로 보면, 직책별에서 전반적으로 일반위원에 비해 임원이 다소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협의회 운영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임원이 4.49점, 일반위원이 4.60점으로 임원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기간별로 전체적으로 읍면동 협의회에 10년 이상 참여한 사람들은 5.28점으로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3년 이상~5년 미만 참여한 사람들은 5.05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3-49〉 직책별·참여기간별 협의회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14	5.19	5.12	5.23	5.11	5.05	5.18	5.28
협의회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43	5.53	5.39	5.50	5.44	5.34	5.44	5.48
협의회 위원들에게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심화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5.38	5.46	5.35	5.48	5.41	5.27	5.38	5.47
읍면동 협의회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5.07	5.18	5.04	5.12	5.01	4.97	5.19	5.32
시군구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22	5.27	5.20	5.27	5.17	5.15	5.29	5.39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기부금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4.59	4.49	4.60	4.78	4.51	4.54	4.59	4.76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6. 읍면동 협의체 성과 인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에 관한 인식은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과 관련한 성과 인식을 살펴보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성과 인식과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성과 인식,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와 관련한 성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의 성과 인식

협의체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도 및 협의체 충성도와 관련해, 7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5.70점으로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협의체 활동의 즐거움(5.74점), 참여 성취감(5.60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자부심(5.69점), 협의체 지속 참여 의향(5.74점), 협의체 참여 타인 추천 의향(5.73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1유형(광역 도시형)과 6유형(대규모 농촌형)은 각각 5.84점으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은 낮게 평가되었다.

〈표 3-50〉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70	5.84	5.79	5.72	5.50	5.69	5.84	5.65
나는 협의체 활동을 즐기며 참여하고 있다.	5.74	5.89	5.81	5.74	5.50	5.72	5.97	5.80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5.60	5.73	5.73	5.63	5.39	5.60	5.75	5.55
나는 협의체 위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5.69	5.84	5.78	5.69	5.46	5.73	5.77	5.61
나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5.74	5.89	5.81	5.79	5.56	5.70	5.90	5.66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웃·지인들에게 협의체 활동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5.73	5.85	5.84	5.75	5.58	5.72	5.83	5.61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협의체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도 및 협의체 충성도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에서는 6.00점으로 매우 높은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동 단위에서는 5.69점, 면 단위에서는 5.62점으로 다소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5분위별로 상위 20%는 6.31점, 하위 20%는 5.11점으로 그 격차가 1.20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읍면동 협의체 참여 성취감에서는 그 격차가 1.26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협의체 활동에 대한 개인 차원의 성과 인식이 읍면동 상·하위 간에서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51〉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70	6.00	5.62	5.69	6.31	5.11	1.20
나는 협의체 활동을 즐기며 참여하고 있다.	5.74	6.10	5.71	5.70	6.34	5.18	1.16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5.60	5.99	5.51	5.58	6.23	4.97	1.26
나는 협의체 위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5.69	6.07	5.60	5.66	6.32	5.09	1.23
나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5.74	5.91	5.67	5.75	6.32	5.14	1.18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웃·지인들에게 협의체 활동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5.73	5.92	5.62	5.75	6.32	5.15	1.17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협의체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도 및 협의체 충성도와 관련하여 개인 단위를 살펴보면, 직책별로는 임원 5.87점, 일반위원 5.65점으로 차이를 보였고 특히 협의체 활동의 즐거움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참여기간별로는 3년 이상~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동일하게 5.77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에서는 5.63점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150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표 3-52〉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 관련 개인 차원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70	5.87	5.65	5.71	5.68	5.77	5.63	5.77
나는 협의체 활동을 즐기며 참여하고 있다.	5.74	5.93	5.69	5.78	5.73	5.81	5.65	5.83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5.60	5.75	5.56	5.63	5.57	5.68	5.54	5.72
나는 협의체 위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5.69	5.86	5.63	5.69	5.66	5.77	5.60	5.77
나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5.74	5.92	5.69	5.74	5.72	5.81	5.69	5.77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웃·지인들에게 협의체 활동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5.73	5.89	5.68	5.70	5.72	5.79	5.69	5.76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나.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협의체 조직적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성과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7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5.54점으로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5.74점)과 지역 환경 및 주민 문제에 대한 고려(5.61점)는 인식이 긍정적인 편에 속했으나,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5.27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4유형(소규모 제한 도시형)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다.

〈표 3-53〉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54	5.59	5.63	5.49	5.41	5.57	5.61	5.55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특유의 역사와 환경, 주민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한다.	5.61	5.69	5.68	5.52	5.47	5.67	5.63	5.67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5.27	5.27	5.36	5.24	5.18	5.31	5.35	5.20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실천한다.	5.74	5.81	5.84	5.71	5.58	5.73	5.85	5.78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결과를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가 5.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면 단위 5.56점, 동 단위 5.5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5분위별로는 상위 20%에서 6.11점이 나와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 정도를 보인 반면, 하위 20%에서는 4.98점이 나와 다소 부정적인 인식 정도를 보였고 그 격차는 1.13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1.27점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성과 인식 세부 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표 3-54〉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54	5.67	5.56	5.50	6.11	4.98	1.13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특유의 역사와 환경, 주민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한다.	5.61	5.77	5.64	5.56	6.15	5.06	1.09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5.27	5.39	5.28	5.24	5.90	4.63	1.27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실천한다.	5.74	5.86	5.75	5.71	6.27	5.25	1.02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관련한 결과를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직책별로는 임원 5.60점, 일반위원 5.53점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결정 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의 경우 직책별 인식의 차이가 0.1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8점으로 인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5.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55〉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54	5.60	5.53	5.58	5.56	5.56	5.45	5.53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특유의 역사와 환경, 주민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한다.	5.61	5.65	5.60	5.65	5.64	5.62	5.54	5.51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5.27	5.32	5.26	5.31	5.32	5.27	5.18	5.28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실천한다.	5.74	5.82	5.72	5.79	5.73	5.80	5.64	5.79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다.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조직적 차원 성과 인식의 두 번째 측면인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하여, 전체 평균은 7점 만점에 5.56점으로 성과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지속적 개선 노력(5.55점),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다양화 노력(5.64점),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5.50점)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 인식을 보인 특화사업 지원 대상의 다양화 노력은 예를 들면 노인 중심에서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의미한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대규모 제한도시형)과 4유형(소규모 제한도시형)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다.

〈표 3-56〉 지자체 유형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56	5.59	5.67	5.42	5.44	5.66	5.61	5.60
특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55	5.60	5.69	5.46	5.42	5.62	5.53	5.59
특화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64	5.68	5.74	5.47	5.54	5.74	5.64	5.72
익숙한 사업만을 하기 보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5.50	5.49	5.57	5.33	5.35	5.63	5.67	5.48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성과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가 5.7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면 단위 5.58점, 동 단위 5.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5분위별로는 상위 20%가 6.16점인 반면, 하위 20%는 4.88점으로 그 격차가 1.28점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에서는 그 격차가 1.44점으로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읍면동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56	5.72	5.58	5.52	6.16	4.88	1.28
특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55	5.65	5.52	5.54	6.11	4.94	1.17
특화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64	5.82	5.67	5.59	6.21	4.99	1.22
익숙한 사업만을 하기 보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5.50	5.68	5.55	5.44	6.15	4.71	1.44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과 관련한 성과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우선 직책별로 임원은 5.69점, 일반위원은 5.52점으로 둘 사이에 차이를 보였고 세부 항목별로도 그 격차는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참여기간 별로는 1년 미만은 5.64로 가장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5년 이상~10년 미만은 5.50점, 10년 이상은 5.51점으로 참여기간이 비교적 오래된 응답자의 인식이 낮은 편에 속했다.

〈표 3-58〉 직책별·참여기간별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56	5.69	5.52	5.64	5.53	5.62	5.50	5.51
특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55	5.68	5.51	5.63	5.54	5.56	5.48	5.60
특화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64	5.76	5.60	5.76	5.59	5.72	5.57	5.53
익숙한 사업만을 하기 보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5.50	5.64	5.46	5.54	5.47	5.59	5.44	5.40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라.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조직적 차원 성과 인식의 마지막 측면인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면, 7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5.23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5.29점), 직능단체(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5.23점),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지지 증대(5.17점)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2유형(일반 도시형)의 인식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3유형(대규모 제한 도시형)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표 3-59〉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전체	5.23	5.17	5.35	5.09	5.21	5.31	5.29	5.17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5.29	5.25	5.42	5.16	5.28	5.41	5.24	5.20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5.23	5.16	5.36	5.08	5.19	5.31	5.31	5.18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고 있다.	5.17	5.09	5.28	5.04	5.17	5.20	5.31	5.12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련된 성과 인식을 읍면동 단위로 살펴보면, 읍 단위에서는 5.40점으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면 단위에서는 5.22점, 동 단위에서는 5.21점으로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읍면동 5분위별로는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상위 20%는 5.82점, 하위 20%는 4.48점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 문항에서는 그 격차가 1.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60〉 읍면동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읍면동별			읍면동 5분위		
		읍	면	동	상위 20%	하위 20%	상·하위 격차
사례 수	(2,304)	(241)	(697)	(1,366)	(416)	(448)	-
전체	5.23	5.40	5.22	5.21	5.82	4.48	1.34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5.29	5.47	5.28	5.27	5.87	4.50	1.37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5.23	5.42	5.22	5.20	5.82	4.51	1.31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고 있다.	5.17	5.30	5.17	5.15	5.77	4.44	1.33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련된 성과 인식을 개인 단위로 살펴보면, 먼저 직책별로 임원은 5.27점, 일반위원은 5.22점으로 임원이 다소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읍면동 5분위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 문항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참여기간별로는 참여기간이 비교적 짧은 1년 미만이 5.39점으로 가장 긍정적 인식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참여기간이 비교적 긴 5년 이상~10년 미만이 5.15점, 10년 이상이 5.18점으로 다소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표 3-61〉 직책별·참여기간별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의 협력 관계 관련 성과 인식

(단위: 점)

항목	전체	직책별		참여기간별				
		임원	일반 위원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례 수	(2,304)	(547)	(1,794)	(309)	(735)	(593)	(563)	(104)
전체	5.23	5.27	5.22	5.39	5.22	5.25	5.15	5.18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5.29	5.34	5.28	5.50	5.26	5.32	5.20	5.24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5.23	5.28	5.21	5.37	5.24	5.24	5.14	5.10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고 있다.	5.17	5.20	5.17	5.29	5.15	5.19	5.11	5.19

주: 7점 척도/ 전체 응답

7.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

읍면동 협의체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 인식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가.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영예산·기부금(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확충 필요성(전체 응답자 중 동의 89.3%), 유공자 포상제도 필요성(82.2%), 지역복지문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90.9%), 협의체 위원 지도력(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89.8%), 협의체 사업 주민참여(청년,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 활성화 방안 필요성(90.9%) 등 모든 지원 과제에 대해 절대적 다수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협의체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인센티브나 홍보를 통해 청년,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자체 유형별로 필요성 인식을 살펴보면, 6유형(대규모 농촌형)에서 동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유형(소규모 제한도시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2〉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필요성 인식

(단위: %)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2,304)	(304)	(216)	(330)	(470)	(518)	(279)	(187)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예산·기부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	89.3	88.5	92.8	87.7	83.6	90.6	94.1	92.8
	부정	1.5	1.4	1.2	1.8	2.7	1.1	1.1	0.0
협의체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	긍정	82.2	80.2	82.1	79.3	81.9	85.6	84.9	78.3
	부정	5.5	5.0	5.1	5.7	4.6	5.0	7.6	7.2
협의체 위원들에게 지역의 복지문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긍정	90.9	92.1	93.2	89.8	90.3	89.5	93.5	89.2
	부정	1.6	0.8	1.0	0.6	2.4	1.1	1.6	4.8
협의체 위원들의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긍정	89.8	90.2	92.5	90.1	88.7	86.7	93.0	91.6
	부정	1.7	1.2	1.2	0.3	3.0	2.2	0.5	2.4
협의체 사업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긍정	90.9	89.3	90.8	91.9	90.6	89.5	91.9	95.2
	부정	1.5	0.7	1.7	0.6	2.4	1.7	1.6	1.2

주: 7점 척도(5점~7점 “긍정”; 4점 “보통”; 1점~3점 “부정”) / 전체 응답

나.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른 동의 정도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양자의 운영 취지와 목표의 상이성(전체 응답자 중 동의 70.3%), 양자의 사업 대상과 성격의 상이성(68%), 양자의 기구 분리 유지 필요성(74.6%), 양자 간의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78.7%), 양자 간의 공동 협력 사업 확대 필요성(81.5%) 등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를 표명했다.

〈표 3-63〉 지자체 유형별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경험에 따른 동의 정도

(단위: %)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례 수	(684)	(68)	(63)	(89)	(167)	(168)	(79)	(50)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운영의 취지와 목표가 다르다.	긍정	70.3	58.6	70.4	70.5	68.6	70.7	71.0	88.9
	부정	14.4	24.8	14.1	15.1	17.9	12.2	8.7	3.7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행해야 할 사업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긍정	68.0	56.4	69.6	71.9	66.4	75.6	50.7	81.5
	부정	15.9	22.6	16.3	14.4	17.1	4.9	33.3	14.8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두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각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긍정	74.6	68.4	74.1	68.3	75.7	87.8	52.2	81.5
	부정	13.1	13.5	14.1	18.7	12.1	2.4	29.0	14.8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긍정	78.7	71.4	76.3	77.7	87.1	78.0	65.2	88.9
	부정	8.3	8.3	11.1	8.6	5.0	7.3	13.0	11.1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긍정	81.5	82.7	80.7	76.3	88.6	80.5	69.6	88.9
	부정	8.3	5.3	9.6	8.6	1.4	12.2	15.9	7.4

주: 7점 척도(5점~7점 “긍정”; 4점 “보통”; 1점~3점 “부정”) / 주민자치위원장만 응답함

제3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1. 분석 자료 및 모형

이 절에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성과 인식에는 협의체 구성원의 특성은 물론 협의체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및 행정구역의 특징이 성과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축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원자료에 읍면동 및 시군구 특성에 대한 행정 집계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일부 응답이 저조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내의 개인 응답률이 20% 이하인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242개 읍면동 중 20개 읍면동의 조사 결과가 제외되었으며, 개인 단위로는 28명이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자료는 14개 시군구 내의 222개 읍면동, 그리고 그 안에서 조사된 2,276명이었다. 222개 읍면동에 속한 개인의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8명으로 평균 10.3명이었으며, 14개 시군구에 속한 개인의 수는 최소 44명에서 최대 476명으로 평균 162.6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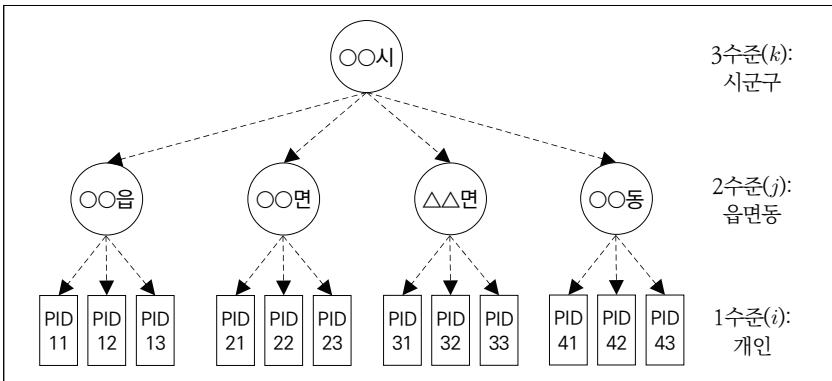
〈표 3-64〉 수준별 분석 사례 수

구분	사례 수	수준 내 사례 수		
		최소	평균	최대
1수준: 개인	2,276	-	-	-
2수준: 읍면동	222	2	10.3	48
3수준: 시군구	14	44	162.6	476

자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분석 자료에서 개인은 특정 읍면동에 내포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읍면동은 상위 수준인 시군구에 내포되어 있다. 1수준(i) 개인, 2수준(j) 읍면동, 3수준(k) 시군구로 구성된 다수준(multilevel)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이 여러 읍면동에 동시에 소속되지 않으며, 동일한 읍면동에 소속된 개인은 반드시 동일한 시군구에 소속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위계적인(hierarchical)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수준 구조의 자료를 고려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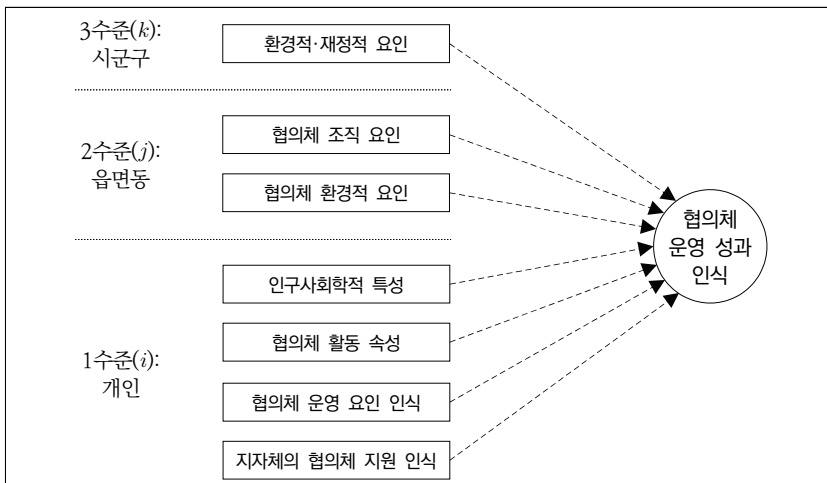
[그림 3-1] 분석 자료의 구조



먼저 종속변수는 민간위원 개인적 차원의 성과 인식인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 협의체 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인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를 기준 삼아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는 협의체 활동을 즐기는지, 성취감을 느끼는지, 자부심을 느끼는지,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타인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싶은지 등 5개 지표로 측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숙의적 의사결정은 협의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문제를 깊이 고려

하는지,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있는지,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실천하는지 등 3개 지표로 측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특화사업 고도화는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특화사업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새롭고 실험적인 사업을 시도하는지 등 3개 지표로 측정하였고, 협력적 연결망 확대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와의 협력이 증대되는지, 직능단체의 공익 활동이 활발해지는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는지 등 3개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종속변수는 모두 1~7의 범위(range)로 측정되었다.

[그림 3-2] 분석 모형



다음으로 영향 요인은 수준별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협의체 활동 속성,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 등으로 영향 요인군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과 연령이 포함되었으며, 협의체 활동 속성에는 협의체 직

책과 협의체 활동기간,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 협의체 외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포함되었다. 협의체 활동 참석 정도와 협의체 외 자원봉사활동 경력은 서열 변수로 측정되었는데 분석에서는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인식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안에는 방향·목표 명확성, 위원 구성 다양성,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위원 역할 수행 충실성, 의사결정 민주성, 사회보장 관련 정보 탐색, 민관협력 관계 대등성 등 7개 변수가 포함된다. 1개 지표 측정값 혹은 2~5개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1~7의 측정 범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은 시군구 혹은 읍면동 차원에서 협의체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가에 대한 개인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단체장의 관심·지원 인식, 공공위원장 적극성 인식, 읍면동 공무원 적극성, 지자체 교육 지원 인식, 지자체 운영 지원 인식 등 5개 변수가 포함된다. 1개 혹은 2개 지표로 측정되었으며 모두 1~7의 측정 범위를 갖는다.

읍면동 수준에서는 협의체의 환경적 요인과 조직 요인이 고려되었다. 협의체의 환경적 요인에는 읍면동의 인구 규모와 인구 변동이 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인구 변동의 경우 2016년 대비 2020년의 인구 변동률로 측정하였다. 2016년 이후에 신설된 읍면동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 대비 2020년의 인구 변동률을 사용했고, 2020년에 신설된 읍면동은 인구 변동률을 0%로 처리하였다. 협의체 조직 요인에는 협의체 위원 규모와 운영예산이 포함되었다. 인구 변동률의 경우 1%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가 매우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단위를 10%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수준인 시군구에서는 환경적·재정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 유형, 재정자주도, 사회복지 예산 등 3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때 지자체 유형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하였다.

〈표 3-65〉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측정 수준)	측정 기준	출처
[개인] 종속변수		
협업체 활동 만족도·충성도	5개 지표 평균(C1, 1~7)	실태조사
속의적 의사결정	3개 지표 평균(C2, 1~7)	실태조사
특화사업 고도화	3개 지표 평균(C3, 1~7)	실태조사
협력적 연결망 확대	3개 지표 평균(C4, 1~7)	실태조사
[개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ref.)	실태조사
연령	만 나이	실태조사
[개인] 협업체 활동 속성		
협업체 직책	임원진, 일반위원(ref.)	실태조사
협업체 활동기간	개월 수(2021년 9월 기준)	실태조사
협업체 활동 참석	0~20%, 20~40%, 40~60%, 60~80%, 80~100%(1~5 연속변수 취급)	실태조사
협업체 외 자원봉사활동 경력	없음,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0~5 연속변수 취급)	실태조사
[개인] 협업체 운영 요인 인식		
방향·목표 명확성	4개 지표 평균(B1, 1~7)	실태조사
위원 구성 다양성	3개 지표 평균(B2-1, B2-2, B2-4, 1~7)	실태조사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2개 지표 평균(B2-3, B2-5, 1~7)	실태조사
위원 역할 수행 충실성	5개 지표 평균(B3, 1~7)	실태조사
의사결정 민주성	3개 지표 평균(B4-1, B4-2, B4-4, 1~7)	실태조사
사회보장 관련 정보 탐색	1개 지표(B4-3, 1~7)	실태조사
민관 협력 관계 대등성	1개 지표(B4-5, 1~7)	실태조사
[개인] 지자체의 협업체 지원 인식		
단체장의 관심·지원 인식	1개 지표(B5-1, 1~7)	실태조사
공공위원장 적극성 인식	1개 지표(B5-2, 1~7)	실태조사
읍면동 공무원 적극성	1개 지표(B5-3, 1~7)	실태조사
지자체 교육 지원 인식	2개 지표 평균(B6-1, B6-2, 1~7)	실태조사
지자체 운영 지원 인식	2개 지표 평균(B6-3, B6-4, 1~7)	실태조사
[읍면동] 협업체 환경적 요인		
읍면동 인구 규모	2020년 읍면동 인구(천명)	행정안전부
읍면동 인구 변동	2016년 대비 2020년 읍면동 인구 변동률 (10% 단위)	행정안전부

변수(측정 수준)	측정 기준	출처
[읍면동] 협의체 조직 요인		
협의체 위원 규모	2020년 협의체 운영위원 수(명)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예산	2020년 협의체 운영예산(백만 원)	보건복지부
[시군구] 환경적·재정적 요인		
지자체 유형	시, 군, 구(ref.)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자주도	2020년 재정자주도(%)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2020년 1인당 사회복지 예산(백만 원)	행정안전부

주 1: 읍면동 인구 변동의 경우 2016년에 존재하지 않은 읍면동은 신설된 연도 대비 2020년 인구 변동률을 사용하였고, 2020년에 신설된 읍면동은 인구 변동률을 0%로 간주함

2: ref.는 범주형 변수의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내용은 인식 조사의 문항 번호와 측정 범위(range)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016-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13에서 2021.09.29. 인출;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내부자료.

2.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자료와 같은 다수준 구조의 자료에서는 동일 집단에 소속된 개체의 관측치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적용되면 표준오차에 편의가 발생한다(Rabe-Hesketh & Skrondal, 2012, p.16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성과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준 모형을 적용했다.

분석 모형을 수준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수준 개인 모형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성과(Y_{ijk})는 인구사회학적 특성($Demo_{ijk}$), 협의체 활동 속성($Hact_{ijk}$),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Heffect_{ijk}$),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Hsupp_{ijk}$)으로 설명된다. 이때 1수준의 절편인 π_{0jk} 는 2수준 읍면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확률 절편(random intercept)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2수준 읍면동 모형에서는 1수준 확률 절편 π_{0jk} 가 협의체의 환경적 요인($Henviron_{jk}$)과 조직 요인($Horgan_{jk}$)으로 설명된다. 또한 2수준 절편인 β_{0k} 역시 3수준 시군구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확률 절편(random intercept)으로 설정한다. 3수준 시군구 모형에서는 2수준 확률 절편 β_{0k} 가 시군구의 환경적·재정적 요인($Fiscal_k$)으로 설명된다.

$$Y_{ijk} = \pi_{0jk} + \pi_1 Demo_{ijk} + \pi_2 Hact_{ijk} + \pi_3 Heffect_{ijk} \quad (1수준) \\ + \pi_4 Hsupp_{ijk} + \epsilon_{ijk}$$

$$\pi_{0jk} = \beta_{0k} + \beta_1 Henviron_{jk} + \beta_2 Horgan_{jk} + r_{jk} \quad (2수준)$$

$$\beta_{0k} = \gamma_0 + \gamma_1 Fiscal_k + u_k \quad (3수준)$$

이러한 1수준 개인, 2수준 읍면동, 3수준 시군구의 모형을 종합한 혼합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오차는 1수준 ϵ_{ijk} , 2수준 r_{jk} , 3수준 u_k 와 같이 수준별로 분리된다.

$$Y_{ijk} = \gamma_0 + \pi_1 Demo_{ijk} + \pi_2 Hact_{ijk} + \pi_3 Heffect_{ijk} \quad (혼합) \\ + \pi_4 Hsupp_{ijk} + \beta_1 Henviron_{jk} + \beta_2 Horgan_{jk} \\ + \gamma_1 Fiscal_k + \epsilon_{ijk} + r_{jk} + u_k$$

다수준 모형의 분석은 Stata의 mixed 명령문을 사용하였고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1수준 및 2수준 변수의 집단 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고려하였다. 하위 수준 변수를 집단 평균 중심화하는 것은 순수한 집

단 내 효과(within-group effects)를 추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추정하고자 하는 인과 구조에 가까운 추정치가 되며, 집단 간 변량을 제거하여 집단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으로 인한 편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Rabe-Hesketh & Skrondal, 2012, p.148). 하지만 만약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가 동일하다면 집단 평균 중심화는 불필요하게 변량을 제거함으로써 추정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1~2수준 변수를 집단 평균 중심화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모두 분석해 보았으며,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집단 평균 중심화를 적용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분석 결과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성과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다수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수준 개인 변수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특화사업 고도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외에 특별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협의체 활동 속성은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위원에 비해 임원진이 협의체의 활동 만족도·충성도가 높고 특화사업 고도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체 활동 참석률이 높을수록 네 가지 협의체 운영 성과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협의체 활동 외에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길수록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와 특화사업 고도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활동기간은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협의체 운영 요인에 대한 인식은 협의체 운영 성

과 인식에 매우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의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네 가지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을 모두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협의체 방향·목표의 명확성과 위원 역할 수행의 충실성, 민관협력 관계의 대등성은 협력적 연결망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운영 성과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의 리더십 및 개방성은 특화사업 고도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성과 지표에, 의사결정 민주성은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성과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보장 관련 정보 탐색 역시 숙의적 의사결정과 특화사업 고도화의 성과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및 시군구 협의체에 대한 지원 인식에서도 협의체 운영 성과가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지자체 단체장이 협의체에 관심을 두고 지원한다고 인식할수록 협력적 연결망 확대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체장의 관심이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읍면동장의 적극성은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와 숙의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동 공무원의 적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위원장(읍면동장)의 적극성이 갖는 유의미한 영향이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에게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이 충실히 제공될수록 숙의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 및 시군구 차원에서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때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의 성과가 높아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단체장 및 읍면동장의 관심과 지원이,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교육과 운영 지원이 협의체 성과 인식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수준인 읍면동에서는 1수준 변수보다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도 확인된다. 우선 읍면동의 인구 변동률이 높을수록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구 변동률이 크게 증가한 곳은 최근 새로운 읍면동으로 분리·신설되었거나 주택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인데, 그것은 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성과 몰입도가 아직 낮은 상태일 수 있으며, 지역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대응해야 할 지역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협의체 운영예산이 클수록 숙의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연결망 확대에 대한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읍면동의 인구 규모나 협의체 위원 규모를 통제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읍면동 규모의 효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협의체 운영예산 지원이 커질 때 숙의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3수준인 시군구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3수준 변수는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대한 관심 변수라기보다는 통제의 의미가 강한 변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영향이 하나 확인된 것은 구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특화사업 고도화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시군구의 재정자주도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는 협의체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6〉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대한 다수준 모형

변수	개인적 차원 인식	조직적 차원 인식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
[개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성(ref. 여성)	-0.001 (0.029)	-0.009 (0.010)	-0.017 (0.026)	-0.015 (0.027)
연령	-0.001 (0.001)	-0.002 (0.001)	0.004 * (0.002)	-0.003 (0.002)
[개인] 협의체 활동 속성				
임원진(ref. 일반위원)	0.135 *** (0.034)	0.006 (0.018)	0.110 *** (0.032)	0.015 (0.053)
협의체 활동기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협의체 활동 참석	0.137 *** (0.012)	0.036 *** (0.008)	0.029 ** (0.009)	0.032 * (0.016)
자원봉사활동 경력	0.025 *** (0.006)	0.016 (0.009)	0.012 * (0.006)	0.001 (0.009)
[개인]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				
방향·목표 명확성	0.073 * (0.029)	0.128 *** (0.029)	0.102 ** (0.034)	0.025 (0.039)
위원 구성 다양성	0.088 *** (0.020)	0.047 ** (0.016)	0.074 ** (0.024)	0.175 *** (0.038)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0.051 * (0.025)	0.062 * (0.028)	0.033 (0.025)	0.120 *** (0.032)
위원 역할 수행 충실성	0.343 *** (0.054)	0.172 *** (0.048)	0.169 *** (0.035)	0.087 (0.051)
의사결정 민주성	0.074 (0.039)	0.114 ** (0.035)	0.214 *** (0.040)	0.102 ** (0.036)
사회보장 관련 정보 탐색	0.028 (0.019)	0.068 ** (0.025)	0.061 * (0.029)	0.041 (0.028)
민관 협력 관계 대등성	0.031 * (0.012)	0.063 *** (0.015)	0.065 *** (0.018)	0.022 (0.028)
[개인]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				
단체장의 관심·지원 인식	-0.002 (0.017)	0.007 (0.012)	0.017 (0.018)	0.104 *** (0.031)
공공위원장 적극성 인식	0.096 ** (0.037)	0.090 *** (0.022)	0.048 (0.029)	0.015 (0.028)
읍면동 공무원 적극성	0.040 (0.034)	0.003 (0.024)	0.047 (0.044)	-0.001 (0.046)

변수	개인적 차원 인식	조직적 차원 인식		
	협의체 활동 만족도·충성도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
지자체 교육 지원 인식	0.022 (0.043)	0.103 *** (0.021)	0.015 (0.033)	0.038 (0.030)
지자체 운영 지원 인식	0.034 (0.026)	0.112 *** (0.017)	0.125 *** (0.027)	0.226 *** (0.021)
[읍면동] 협의체 환경적 요인				
읍면동 인구 규모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3 (0.002)
읍면동 인구 변동	-0.008 * (0.004)	-0.004 (0.003)	0.004 (0.004)	-0.009 (0.008)
[읍면동] 협의체 조직 요인				
협의체 위원 규모	0.002 (0.003)	-0.002 (0.001)	0.002 (0.003)	0.003 (0.004)
협의체 운영예산	0.000 (0.001)	0.001 ** (0.000)	0.000 (0.001)	0.004 *** (0.001)
[시군구] 환경적·재정적 요인				
군(ref. 구)	0.231 (0.204)	0.435 (0.298)	0.241 (0.148)	0.526 (0.351)
시(ref. 구)	-0.024 (0.081)	0.086 (0.094)	0.140 * (0.056)	0.142 (0.143)
지자체 재정자주도	0.001 (0.004)	-0.005 (0.004)	-0.006 (0.004)	-0.007 (0.007)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0.184 (0.101)	-0.179 (0.118)	-0.024 (0.065)	-0.169 (0.131)
상수	0.150 (0.334)	0.541 (0.287)	-0.025 (0.231)	0.617 (0.414)
1수준 분산(잔차)	0.010 *** (0.012)	0.024 *** (0.021)	0.006 *** (0.009)	0.039 *** (0.031)
2수준 분산(절편)	0.012 *** (0.005)	0.003 *** (0.002)	0.013 *** (0.014)	0.019 *** (0.007)
3수준 분산(절편)	0.338 *** (0.014)	0.245 *** (0.013)	0.314 *** (0.012)	0.426 *** (0.015)
Log pseudolikelihood	-2038.6	-1658.6	-1955.8	-2315.8
개인(1수준) 수	2276	2276	2276	2276
읍면동(2수준) 수	222	222	222	222
시군구(3수준) 수	14	14	14	14

주: * p<0.05, ** p<0.01, *** p<0.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자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 성과 인식에 대한 다수준 모형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협의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협의체 민간위원의 주관적 인식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지각된 조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실증 연구가 드물지 않지만, 향후 협의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자료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만을 대상으로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민간위원이 절대 다수이지만, 읍면동 협의체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 모형은 시군구, 읍면동, 개인이라는 3층 구조로 구성되었고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측정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었다. 개인이 아닌 집합적 수준에서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읍면동으로 구성된 다수준 분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 수준 표본의 제약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지만, 향후 읍면동 협의체 수준의 평균값 등으로 측정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4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과제



제 4 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제1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립 방안

이 절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내용과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 협의체 재정립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등 법령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역할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기본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범적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에 관한 이 두 가지 질문은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목이며, 읍면동 단위 동네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요한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된 읍면동 협의체의 독자성에 관련된 대목이기도 하다.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주민참여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표명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규범적 구상은 상이한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주민자치로서의 주민참여는 선거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민주권

원리를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곽현근, 2015; 2020).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시각에서는 시군구·읍면동과 주민대표기구 간에 관할 영역과 의사결정권, 집행권과 관련된 공적 권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다.

주민자치로서의 주민참여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로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반면, 읍면동 협의체에서 주민에 대한 이론적 논거는 거시적 차원에서 복지 공급 부문의 다원화와 관련된 복지혼합 관점과 정책 공동생산이라는 행정 과정의 시각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복지혼합 시각에서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주민의 지역사회보장 참여는 국가와 공공 부문, 영리 부문, 가족 부문과 함께 또 다른 축인 자원·지역 부문이 복지 공급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원·지역 부문에 속한 자선단체·기관, 비영리조직, 지역주민 자원활동 등을 통한 박애적·상호 부조적 성격의 활동들은 다른 부문에 내재된 한계점을 보완한다. 공공·시장·가족 부문과 비교할 때 주인·대리인의 문제, 중위투표자 선호 중심 복지정책 결정의 한계,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수익 우선의 논리를 극복하는 데 그런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Billis & Glennerster, 1998, p.84-88).

이런 맥락에서 읍면동 협의체는 자원·지역 영역이 상호 연계된 복지혼합 유형으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타적·헌신적 활동 수행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이 인식하는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협의체 민간위원 중 절대적 다수는, 협의체 활동은 일반 지역 주민이 아닌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전체 응답자 중 90% 동의),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이며(93.7%),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서 정

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91%), 경제적 이득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90.6%)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정책 공동생산의 시각에서 주민참여는 그간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소비자였던 주민을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정책 공동생산은,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의 기획·설계·전달·평가 등 각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제한된 문제 해결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말한다(Voorberg et al., 2015; Sorrentino et al., 2018, p.279-280; 권향원·윤영근, 2020, p.4 재인용). 이는 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 형태의 참여(information)나 시민이 정부에게 환류(feedback)를 제공하는 쌍방향적 형태의 협의적 참여(consultation)보다 진전된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 평가된다(OECD, 2001, p.23; Fedotova et al., 2012, p.154).

다른 지역사회 자생단체와 달리,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장의 존재하는 등 민관의 공식적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공동생산의 제도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특화사업 연간계획 수립 혹은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기획 단계에서도 공동생산이 실행되고 있고, 관할 지역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과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특화사업 시행을 통한 집행 단계에서도 공동생산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공동생산으로 기능하는 협의체의 정체성은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즉, 조사 응답자 중 95.5%는 협의체 활동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기본적인 성격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지역주민의 조직화된 자원활동”으로 규정한다. 달리 말해, 읍면동 협의체 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원활동을 통해 소생활권 단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사업의 기획·집행·평가를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 그것에 내재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범적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지향성을 숙의성, 실천성, 파급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숙의적 의사결정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서 참여적·민주적·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향점이다. 숙의적 기능의 일반적 정의는, “다양한 시민(대표자)들이 학습과 토론, 그리고 성찰의 숙의과정에 기초하여 어떤 공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영희, 2009; 권향원 외, 2017). 이러한 숙의적 의사결정 과정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체 활동을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지역사회의 역사·환경적 특수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동체 정보·지식의 탐색과 지속적 학습, 주민 주도의 자율적 논의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Fetterman, 2005b; Lee & Levine, 2016; Koop et al., 2017; Candid, 2021).

둘째, 창의적·혁신적 사업의 기획을 통한 주민참여 자원활동의 고도화이다. 서비스 실천의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통

한 특화사업의 내용은 아직까지 협의체 위원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단순한 형태의 봉사활동 혹은 생활필수품 배부가 지배적이다.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수적인 일이지만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여 취약계층의 세심한 욕구에 기초한 틈새 생활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개발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지지·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사회자원 부문 활성화를 통한 자원 부문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원 부문의 복원과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응집력, 집합적 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선 읍면동 협의체는 지역사회 직능단체 등 자생단체들과 연계·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들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읍면동 행정 범위를 넘어서 지자체 생활권 단위에서 복지자원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지자체 내에 존재하는 복지자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에 연령과 직업 등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읍면동 협의체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된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규칙, 운영지침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 역할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방향은 읍면동 협의체의 기존 설치 목적이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이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치 목적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명문화하고 기능 및 역할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세 가지 규범적 지향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표 4-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목적·기능·역할 개편 방안

구분	현행	개편
설치 목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이 <u>지역주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u>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기능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아래 사항에 대한 지원)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지원)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③ [변경] <u>지역사회자원활동 연계·협력 촉진</u> ④ [신설] <u>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의제 선정</u> ⑤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역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① 위기가구 및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②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③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 사업 논의 ④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 (2020)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위기가구 및 복지 대상자 발굴 지원 ② [변경] 읍면동 특화사업 <u>기획 및 지원</u> ③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 사업 논의 ④ [신설] <u>지역사회 자생단체 등과 연계·협력 사업 논의</u> ⑤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7893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5호; 보건복지부. (2020a). 20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제2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과제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촉진,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지원라는 세 가지 지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운영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전국 읍면동 협의체 연간 운영예산 규모는 평균 약 770만 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다(〈표 2-12〉 p. 74 참조). 이는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인식조사 분석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중 89.3%가 운영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읍면동 운영 활성화와 운영예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 규모는 조직적 차원의 성과인 숙의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연결망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만으로 확충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유사한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7대 지자체 유형 내에서의 지역 격차와, 7대 지자체 유형 간의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일부 광역시·도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다. 2016년 경기도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해 113개 읍면동 협의체에 총 6억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박정인, 2016). 또 2020년부터 경기도는 ‘위기가웃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7,800명에게 활동지원비 조로 월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박동진, 2021, p.3).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앙과 광역이 협력하여 마중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이 대폭 충원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해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기존 업무 외에도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의 배치 규모와 급여 수준에서 지역 불균형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김희성 외, 2020, p.43~45).

2019년 기준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이 배치된 지자체는 204개소(88.6%)이며, 이 지역의 평균 배치 인력 규모는 1.4명이다(보건복지부, 2019). 김희성 외(2020, p.182)는, 21개 시군구 협의체 공공위원과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 적정 인력 규모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임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에서 관할 시군구 협의체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 인력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의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4-2〉 지자체 유형별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 정원 및 현원, 증원 인력

(단위: 명)

항목		지자체 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무국(전담인력) 정원(A)		2.43	3.50	2.75	1.67	2.60	2.27	2.14	2.00
사무국(전담인력) 현원		2.22	3.25	2.50	1.67	2.20	2.27	1.86	1.67
공공 위원 응답	(사례 수)	(118)	(15)	(25)	(20)	(7)	(21)	(21)	(9)
	증원 소요 인력(B)	0.88	1.04	1.09	0.72	0.80	0.85	0.99	0.24
	적정 인력(A+B)	3.31	4.54	3.84	2.39	3.40	3.13	3.13	2.24
사무국 응답	(사례 수)	(37)	(5)	(6)	(3)	(5)	(7)	(5)	(6)
	증원 소요 인력(C)	1.46	0.50	2.25	1.00	3.20	1.36	1.14	0.67
	적정 인력(A+C)	3.89	4.00	5.00	2.67	5.80	3.64	3.29	2.67

자료: 김희성 외. (2020). 복지 부문의 민관협력 성과와 혁신 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p.182.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에서 읍면동 협의체 관련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읍면동 협의체에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맞춤형복지팀)의 담당 공무원과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시군구 본청 담당 부서와 읍면동장의 지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읍면동 협의체 성과 영향 요인 분석에도 지자체의 운영 지원과 공공위원장의 적극성은 협의체의 성과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본청 차원의 수범사례로는 창녕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사례가 있다.¹⁾ 희망복지팀은 읍면동 협의체 설치·운영 초기 단계부터 진행되어 온 일련의 노력을 통해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우선 시행 초기 단계부터 창녕군 희망복지팀은 전 읍면 협의체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획 업무를 총괄하면서 읍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읍면 업무 경험이 풍부했던 공무원이 배치된 희망복지팀에서 읍면 협의체 설치가 읍면 단위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읍면 맞춤형복지팀은 기획 역량이 부족하고 물품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실무적 쟁점을 떠안고 있었다.

창녕군 희망복지팀은 읍면 협의체 표준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읍면에 배포한 뒤 협의체 운영 원칙이 모든 읍면 협의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 협의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표준운영세칙을 손쉽게 수정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식대 등 경상비를 소액으로 한정하고 군청 차원에서 사업예산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이는 군청의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자칫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한 역할인 복지자원 발굴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대신에 농식품부 공모사업 수주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전 읍면 협의체에 공동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초창기에 일종의 예행연습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고 읍면 협의체 간에 공동 사업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지금까지 이동복지관 사업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에게 협의체의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창녕군 본청이 주도해

1) 이 사례는 연구진과 창녕군 주민복지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창녕군 주민복지과 관계자 4인(익명) 인터뷰, 2021.07.06.).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교육 지원, 타 지역 선도사례 현장 탐방을 추진하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읍면리장 간담회, 읍면 공무원 교육 등도 추진했다. 창녕군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기획력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초창기에는 14개 읍면 위원 위촉식에 단체장이 모두 참석하여 협의체의 역할을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창녕군 사례는 시군구 본청 전담팀의 지원 역할이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에 성공 요인임을 예증해 주는 것이다. 이 사례에는 특히 아직까지 읍면동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시사점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한편, 읍면동 협의체 성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시군구 단위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림 4-1] 2020년 서대문구 동협의체(마봄협의체) 지원 사항

- 운영 활성화 지원
 - 마봄협의체 온라인 회의 운영체계 구축(연합회의 1회 실시)
 - 위드코로나 복지역량강화교육 「채움&힐링」교육 2회 실시
 - 리플릿 「슬기로운 마봄생활」 1,000부 및 활동영상 제작·배포
 - 96개 동별 사회보장영역 통계 분석·공유
 - 전동 활동복(조끼) 및 코로나19 방역 물품, 회의 장비 지원
- 대외 홍보
 - 구-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MOU 체결
 - 전국 최초 8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행정상 수상
 - ※ 3년 연속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분야」 대상 수상

자료: 서대문구청. (2021). 서대문구 마봄협의체 위촉식 및 연합회의. 내부자료. p. 1.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의 사례는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역할을 보여준다.²⁾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은 동 담당팀에서 동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2개월 단위로 보고·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절차는 기본적인 동협의체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활동에 대해 구청과 동 간에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 희망복지팀은 동협의체의 활동 결과 보고를 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동협의체 활동 매뉴얼에 반영하여 모든 동에 배포한다. 이를 통해 그 우수사례가 전 동협의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협의체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기적인 보고 절차 외에도 희망복지팀 담당 공무원은 동협의체 위원들의 SNS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동협의체 위원 간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림 4-1]과 같이 서대문구는 구청 차원에서 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군구 전담팀의 역할 외에도 읍면동 협의체 공공위원장을 담당하게 되는 읍면동장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읍면동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은 상명하복식 관료제에서 읍면동 협의체 담당 계장과 공무원의 역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징적인 사례이지만 읍면동 협의체 주관 행사 등에 읍면동장의 상시 참석은 일선 현장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단체 간에 반목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도 공공위원장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에게는 협의체의 외연 확장, 즉 지역사회 자생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역대 아람동장이 보여준 일련의 노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³⁾

2) 이 사례는 연구진과 서대문구 읍면동 협의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서울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7인(익명) 인터뷰, 2021.06.11.).

3) 이 사례는 연구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동 읍면동 협의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 아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9인(익명) 인터뷰, 2021.06.16.).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은 협의체 활동 초기 단계부터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동장이 그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과 직능단체 임원들이 서로 안면을 익히고 친분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사업 추진에 자생단체를 참여시켜 협업의 경험을 쌓도록 했다. 가령, 읍면동 협의체에서 김장 담그기 사업을 할 때에도 지역사회 자생단체 회원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읍면동 협의체와 자생단체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한 아름동 365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동력을 제공한 것도 동장이 한 일이다. 읍면동 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아름동 365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활동을 알려주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복지자원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자생단체의 공익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체의 연계 협력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군구 전담팀과 읍면동장의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시군구 협의체·읍면동 협의체 연계·협력 촉진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촉진과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때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촉진과 관련해, 읍면동 협의체 관계들 간의 공식적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네트워크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이다. 협의체 민간위원장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복지관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고, 19개 읍면 협의체를 4개의 권역별로 묶어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협의체 간에 소통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이 이룬 시기에 빠르게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협의체 민간위원장의 네트워크 회의에 단체장이 참여하여 협의체 위원을 독려하고 의견 수렴을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네트워크 사업 개요

- 목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신뢰 형성을 위한 유대 관계 조성
- 기간: 2020. 1. 1. ~ 12. 31.
- 대상: 민간위원장, 담당 공무원, 사무국장, 복지관 담당자
- 내용
 -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8월, 11월)
 - 담당 공무원 네트워크 회의(9월, 12월)
 - 읍면동 협의체 분과 회의(9월, 11월)
 - 종합사회복지관 네트워크 회의(하반기 2회)
: 하반기 중 MOU 체결 예정
 - 4개 권역 네트워크 회의(8월, 11월)
(대상)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담당 공무원
(내용)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한 협의체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활성화
(구분) 1권역 -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
2권역 -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3권역 - 고운동, 아람동, 종촌동, 도담동
4권역 - 새롭동, 한솔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 소요예산: 1,500,000원(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협력 사업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2020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안내. 내부자료. p.2-3.

읍면동 협의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이 시군구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시군구 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 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가령, 읍면동 협의체의 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시군구 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 참여토록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읍면동 협의체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효과도 있고 시군구 대표협의체에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에 일조할 수도 있다. 둘째, 시군구 협의체 실무분과에 읍면동 협의체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별 읍면동을 하나씩 실무분과로 구성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몇 개의 읍면동을 묶고, 해당 읍면동의 민간위원장과 분과장 등 임원들이 실무분과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시군구 협의체의 핵심적 업무 중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는 통상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사회보장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 TFT에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군구 협의체에 읍면동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 방안들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데 제도적 기반에 해당한다. 두 협의체가 공동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게 하고 협업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혁신적 수범사례로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구협의체와 동협의체 협업 사업이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7년 서울시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찰떡궁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수상한 투협

스' 사업을 추진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구협의체의 실무분과와 동협의체를 1:1로 연계하여 지역형 특화사업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한 것이다(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

[그림 4-3] 서울시 서대문구 구협의체와 동협의체 협업 사업

- 이름: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찰떡궁합 「수상한 투협스」
- 기간: 2017. 6. ~ 12.
- 목적
 - 전문성·조직력을 지닌 구협의체 위원들과 접근성·현장성을 갖춘 동협의체 위원들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지역형 특화사업을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함으로써 민간기관, 공공기관, 지역주민 간의 협치를 강조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 내용
 - 구협의체(실무분과)와 동협의체(마분협의체)를 1:1로 연계하여 지역형 특화사업 기획·추진
 - 3개 그룹 선정, 그룹별 2,214천 원 지원
- 추진 일정
 - (1단계) 마분협의체&실무분과 선정(3개 그룹)
 - (2단계) 교육 및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사업 기획
 - (3단계) 그룹별 특화사업 추진
 - (4단계) 성과보고회 및 책자 발간
- 그룹별 특화사업

구분	마분협의체명 실무분과명	특화사업명
그룹1	천연동 마분협의체 어르신복지분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COOL한 여름나기”
그룹2	연희동 마분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	“장애인 돌봄 문화 채움 사업”
그룹3	홍은1동 마분협의체 여성가족분과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

자료: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찰떡궁합 수상한 투협스 성과 보고서. 내부자료. p.3.

이 사업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강점을 살리고,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협의체 위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 이러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사례가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지원 과제로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읍면동 협의체의 세 가지 지향성인 숙의성과 실천성, 파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지역복지리더 육성 지원이 있다.

시·도 차원에서 추진된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지원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을 사례로 들만 하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추진체계를 구성한 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 2개 동씩 2년간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동북지대학을 확산시켜 가면서, 5년 차에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동북지대학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21, p.10).

[그림 4-5]는 동북지대학 1년 차 강동구 암사3동주민센터 1년 차 추진사례이다. 동북지대학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한 운영 매뉴얼에 의거해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동북지대학을 기획·운영하였다. 동협의체 위원과 복지기관, 주민자치위원, 나눔이웃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원단을 구성하여 복지대학 운영 현안과 커리큘럼 개발을 논의하고, 동북지대학 홍보·모집을 거쳐 총 22명의 동북지대학 참여자를 뽑았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4

회기를 진행하였고, 수강생 간 교류를 위한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테라리움(다육이 식재) 체험수업을 진행하였다(서울시복지재단, 2020).

[그림 4-4]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개요

- 추진 대상
 - 주민 주도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동지사협+동주민센터+복지기관 컨소시엄 추진
- 추진 목표
 - 주민과 공무원, 복지기관 3자 협치를 통해 동 단위 지역복지력 강화
 - '동북지대학' 운영을 통한 동 단위 주민력 강화
- 추진 방향
 - 서울시 '찾동' 주도 1개 자치구 2개 동씩 전략 지원(인큐베이팅)
 - 해당 자치구의 주민 주도형 동지사협 모델 구축 및 확산 지원
- 동북지대학 추진 현황표

기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기	동북지대학 운영(서울시 지원)		동북지대학 자체 운영(기존동+신규동)				
2기	동북지대학 운영(서울시 지원)		동북지대학 자체 운영(기존동+신규동)				
3기	동북지대학 운영(서울시 지원)		동북지대학 자체 운영(기존동+신규동)				
4기	동북지대학 운영(서울시 지원)		동북지대학 자체 운영(기존동+신규동)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변화와 도전을 통한 주민주도의 경험적 토양 마련
 - 지역복지력 향상을 위한 동 단위 복지 거버넌스(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복지기관) 협력기반 구축
 -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모델 및 제도화 과정의 토대 마련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 2개 동씩 2년간 전략지원(인큐베이팅)
- 동북지대학 단계별 추진 내용

시범 구(2개 동 참여, 2년 과정)

확대 구(단계별 참여)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2021). 동북지대학 업무 매뉴얼, p.10.

[그림 4-5]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강동구 암사3동주민센터 1년 차 추진사례

○ 2020년 서울시 동북지대학에 참여한 강동구 암사3동주민센터의 1년 차 동북지대학 추진 단계별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준비 과정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우리동 동북지대학 기획단 운영 - 우리동은 동북지대학 추진을 위해 동지사협 위원과 복지기관, 주민자치위원, 나눔이웃회원을 중심으로 운영기획단을 구성하여 7~11월 동안 여섯 차례의 기획단회의를 하며 복지대학 운영과 관련한 현안과 커리큘럼을 논의함
	홍보 모집 - 동북지대학 입학생 모집 홍보지(물) 제작 및 배포 · 일시: 2020. 8. 10. ~ 9. 11. - 동북지대학 신입생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관내 주요 지점에 내걸고 강동구소식지, 아파트 E/V 미디어 보드, 강동달라이브 등을 통해 홍보함 - 동북지대학 참여자 총 22명 모집: 신규 주민 16명, 동협의체 2명, 통장 3명, 기타(직능단체 외) 1명
실행 과정	1회기 - 인권 감수성 교육 진행 - 주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
	2회기 - 생태, 강점, 관계 교육 진행 - 주제: 문제가 아닌 사람 사는 모습으로
	3회기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진행 - 주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리더십 향상
	4회기 -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교육 진행 - 주제: 복지를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공동체 활동 - 테라리움(다육이 식재) 체험수업 · 일시: 2020. 11. 17. · 장소: 암사3동주민센터 5층 강당 - 동북지대학 기획단과 논의 과정을 거쳐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테라리움 수업을 진행함. 그동안 수강생 간에 교류할 기회가 없었으나 체험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를 표현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됨
	졸업식 - 주민이 함께 준비한 졸업식 · 일시: 2020. 11. 24. · 장소: 암사3동주민센터 5층 강당 - 내빈 초대, 현수막과 졸업가운은 주민센터에서, 무대 장식은 동지사협에서, 졸업식 사회는 복지기관에서 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졸업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상황이라 행사를 취소하고 졸업생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촬영하는 형태로 졸업식을 진행함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2020). 2020년 동북지대학 1차년도 구·동 추진 사례. 내부자료. p.9-10.

[그림 4-6]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서대문구 동북지대학 4년 차 사업

○ 목적: 주도 주도성 촉진하여 동 단위 주민력 및 지역복지력 강화

○ 추진 주체: 10개동+10개 마뭉협의체+7개 복지기관

○ 기간: 2021. 8. ~ 12.

○ 대상: 기존 마뭉협의체 위원 및 신규 참여자 15~20명 내외(예상)

○ 내용: 주민 복지역량강화교육+마을복지 의제 발굴 워크숍 운영(동별 5회기)

○ 교육 운영(안)

추진 주체	구분	추진 내용	교육 내용	수행 방법	소요 시간
구	사전교육 기획회의	0회기	- 3자 컨소시엄 협약식 - 핵심 리더 교육(퍼실리테이션) - 기획단회의	- 전문강사 진행 - 교육 및 회의	3시간
	동	마뭉 열기	1회기	- 참여자 소개 및 공감대 형성 활동 - 동북지대학 소개	- 구협의체 사무국 지원 - 레크리에이션 등 활용
기본교육		2회기	- 인권 및 주민 조직화 교육 (텍1)	- 전문강사 진행 - 주제 교육·토론	2시간
의제선정		3회기	- 우리 동네 알아보기 - 우리 동네 의제 발굴·선정	- 전문위원 교육·진행 - 통계자료 공유 - 아이디어 토론	2시간
마을복지 계획 수립		4회기	- 마을복지계획 수립 ※ 지속성+코로나19 상황 반영 기획 권장	- 전문위원 진행 - 계획 구체화 토론	2시간
졸업식		5회기	- 졸업식 진행 - 평가 및 소감 나누기	- 졸업 행사 진행 - 공동체 활동 등 활용	2시간
위원위촉 사업 실행		마을복지 계획실천	- 신규 참여자 마뭉협의체 위원 위촉 - 마을복지계획 실행·평가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위원 중심 계획 실행	-

자료: 서대문구청. (2021). 서대문구 마뭉협의체 위촉식 및 연합회의. 내부자료. p. 4.

[그림 4-6]은 서울시 동북지대학 사업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서대문구의 동북지대학 운영 계획이다. 10개 동주민센터와 10개 동협의체, 그리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7대 복지기관이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북지대학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 차원에서 사전교육과 기획회의를 주관하고, 동 단위에서 5회기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성이다. 동북지대학에 참여했던 일반주민들을 동협의

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동협의체 위원 모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 동북지대학이 동주민센터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역량강화교육 사업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주도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4-7] 세종특별자치시 역량강화교육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0. 4. ~ 11. ○ 대상: 19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방법: 집합교육(읍면동별 2회 이상) ○ 내용 		
교육 분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읍면동 협의체 의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특화사업 평가 - 복지자원 분석 및 특화사업 발굴 	오프라인 교육 (해당 협의체 방문)
신규위원 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 - 읍면동 협의체 우수사례(1곳) - 공동모금회 모금 및 배분 사업 안내 	소규모 집합교육(3회) 2시간
임파워먼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 - 마을복지계획 알아보기 -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방안 - 읍면동 협의체 사례공유 - 남 주려고 배우는 복지 상식 - 사업기획 및 신청 방법, 회계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margin-right: 5px;">초급 과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예방교육 - 자살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 우울증 및 정신질환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노인학대 및 방임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 관련 교육 - 응급처치 관련 교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과 기능 - 사이버범죄피해예방교육 - 사례관리 개념 및 기초 </div>	오프라인 교육 (해당 협의체 방문) 1시간 30분

198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교육 분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중급 과정	- 자살예방교육(자살위험군 발굴, 기초적인 상담) - 학대 노인 및 방임 -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법 기초교육 - 타 봉사조직 미담 사례 공유 - 마을공동체조직 사례		오프라인 교육 (해당 협의체 방문) 1시간 30분
심화 과정	- 자살 예방 및 고위험군 대응 방법(대상자 대응, 대처 방법) - 사례관리의 모의 실습(가상사례를 통한 사례관리 실습)		오프라인 교육 (해당 협의체 방문) 1시간 30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2020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안내. 내부자료. p.8-9.

[그림 4-8] 세종특별자치시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사업 개괄

- 기간: 2020. 10. ~ 11.
- 대상: 4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방법
 - 19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4개 지역
 - 2018년 컨설팅 대상 지역(조치원읍, 금남면, 전의면, 고운동) 제외
 - 2019년 컨설팅 대상 지역(소정면, 도담동, 종촌동, 보람동) 제외
- 내용
 -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컨설팅
 - 복지 관련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
 - 지역의 다른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 지원
- 컨설팅단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 학계 전문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자)
- 소요예산: 2,000,000원(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협력 사업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2020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안내. 내부자료. p.6.

행정체계상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도에 속하지만 단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읍면동 협의체 의제 발굴, 신규위원 역량강화 교육, 임파워먼트 교육에 대한 공통 과정을 제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초급·중급·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또한 보다 실천적인 지식과 정보, 방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컨설팅, 복지 관련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 지역복지자원과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지금까지 논의한 읍면동 협의체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례들이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었다면, 지역복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리더 그룹을 육성하는 간접적 형태의 역량강화 사업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읍면동 협의체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89.8%가 협의체 위원들의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림 4-9] 창녕군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 과정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지역복지 현장 민관 실무자로 구성 및 학습자 주도의 참여형 교육
 - 참여자 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복지력 지속적 강화
 - 교육 이수자로 퍼실리테이터 인력풀 구성 및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실행의 촉진자로 역할 수행
- 교육 기간: 2020. 1. 1. ~ 12. 31.
- 교육 대상: 민관 지역복지 실무자 18명
 -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교육 방법: 강연, 토론 및 참여형 교육

- 교육 방법: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본 과정 학습
 - (모듈 I) 퍼실리테이션 개요: 퍼실리테이션의 개념과 가치의 이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활용 영역
 - (모듈 II) 퍼실리테이션 5단계: 퍼실리테이션 기법의 이해와 실습
 - (모듈 III) 퍼실리테이션 기본 스킬: 퍼실리테이션의 원리 체득 및 전략 수립
 - (모듈 IV) 퍼실리테이션 디자인과 실전: 진행 요건 및 계획 수립 방법의 이해, 퍼실리테이션 기획 수행 실전
 - (모듈 V) 액션플랜 및 자기성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자가진단
- 소요예산: 금 8,980천 원

자료: 창녕군. (2020).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운영 계획. 내부자료. p.1-3.

창녕군의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 과정 사업은 인적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에서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할 인력풀을 확충하려는 창의적인 사례이다. 창녕군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회의 및 워크숍 등에서 구성원의 상호 작용을 촉진·조정할 전문 인력이 부재하며,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효과성이 크지 않고 즉각적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 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창녕군, 2020).

[그림 4-10] 수원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개요

- 동협의체 코디네이터 심화교육 과정
 - 교육 목표
 -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
 - 동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와 가치
 - 추진 개요
 - 교육 기간: 2020. 9. 11.(금) ~ 22.(화) - 영상교육
 -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 참여 인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44명

- 세부 내용
 - 동협의체의 이해와 역할
 -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간사 역할
 -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촉진자
 - 민관협력의 이해와 실제
 - 동협의체 이해와 역할
- 동협의체 코디네이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 사업 기간: 2020. 6. ~ 11.
 - 주요 내용
 - 동협의체 코디네이터 자조모임 지원
 - 동협의체 활동 관련 논의
 - 코디네이터 워크숍 등
 - 대상: 동협의체 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생
 - 교육 내용
 - 회기별 각동 컨설팅 계획안 정리
 - 컨설팅 계획안을 중심으로 각 코디네이터의 컨설팅 역량강화
 - 공감토론을 중심으로 복지 의제에 대한 각 동 해결책 제시
 - 2021년 각 동 시행계획 작성 및 2020년도 평가

자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b),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내부자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c).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교육계획(안). 내부자료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 과정 대상자는 민관 지역복지 실무자로 퍼실리테이션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지역의 문제 해결과 주민 주도 마을복지 계획 수립·실행에 있어 촉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창녕군, 2020).

창녕군이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자를 중심으로 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룹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수원시는 동협의체 참여 위원을 지역복지의 촉진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시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수원시 협의체가 주관하면

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b). 기본 과정은 지역사회의 이해, 주민의 인권과 공동체, 리더십과 회의 운영, 지역복지와 의제 발굴,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12회기로 운영된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

기본 과정을 이수한 동협의체 위원들에게는 심화교육 과정이 제공되는데, 동협의체에서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촉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동협의체의 이해와 역할,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간사 역할, 동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촉진자, 민관협력의 이해와 실제 등에 관한 교육이 제공된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c). 또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협의체 코디네이터의 실제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섬세함을 보여준다. 즉 동협의체 코디네이터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가 작성한 컨설팅 계획안을 함께 검토하고, 각 동의 복지 의제 해결책을 상호 토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b).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 5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의 제도적·운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읍면동 협의체의 목적·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읍면동 협의체 주요 현황 및 핵심 쟁점 검토,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 인식·실태 조사 분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읍면동 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읍면동 활성화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읍면동 협의체 관련 주요 쟁점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제도적 맥락에서의 쟁점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지원 역할 수행 관점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민관협력과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규정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은 읍면동 사회보장 업무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의 목적을 도구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이러한 법적 규정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서는 읍면동 협의체를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의 역할까지 강조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을 더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긍정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과 하위 지침의 체계성과 일관성 결여는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둘째,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의 혼선은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민관 관계 구조의 양상과도 관련이 있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있어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은 형식적 참여 수준에 그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협력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마을복지계획 수립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중심적 역할 등을 고려하면 민관 관계에서 주민 주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다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 방식에서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쟁점이다. 즉, 협의체 위원의 위촉에서 절차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하는가, 혹은 실천성과 인적 구성의 포용성을 강조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과제이다. 동시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사회서비스 실천 역량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협의체 위원을 위촉·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두 방향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읍면동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쟁점으로, 단순한 형태의 재가서비스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및 지역 특성에 기초한 창의적·실험적 서비스 중심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생활필수품 배부나 가정 방문, 단순 봉사활동 같은 기초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는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단체와의 중복 현상을 초래한다. 공적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 협의체라면 그 강점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소외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다변화하고, 세심한 욕구에 기초한 틈새 생활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읍면동의 복지

인프라 등 지역복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마지막 쟁점은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시군구의 행·재정적 지원과 협의체 운영 성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이다. 지역복지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읍면동 협의체는 전국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체계성을 높여 가고 있고, 민간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간 주도성의 기틀 또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운영 활동 측면에서 보아도 민간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특화사업 규모 등에 있어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고려한 7대 지자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타 지역 유형 대비 소규모 군 지역 간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시군구의 읍면동 협의체 지원 노력과 관련된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 규모나 활성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민간자원 발굴 금액, 서비스 연계 실적, 특화사업 규모 등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도 소규모 군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성과가 저조하다. 이러한 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은 읍면동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의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자구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중앙 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 인식·실태 조사 분석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 7대 지자체 유형별로 14개 지자체의 242개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구성원 2,304명을 대상으로 협의체의 운

영 과정 및 창출 성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의 활동 현황이다. 우선 민간위원의 평균적인 활동기간은 약 4년(46.44개월)인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86.9%가 읍면동 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모임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읍면동 협의체 참여 동기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44.1%) 주민으로서 동네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34.2%) 이타적 사유가 지배적이었다. 정례회의, 특화사업 등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60% 이상 참석한다는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읍면동 협의체 운영 취지 및 활동 성격에 대한 인식을 세분화하여 파악했다.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점, 경제적 이득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 등 모든 항목에 대해 90%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4개 시군구의 242개 읍면동 협의체를 단위별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협의체 내 분과 구성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읍면동 중 60.3%가 여러 개의 분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대 지자체 유형별로는 4유형(광역시 자치구)이 95.2%로 운영 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유형(인구 4만 8천 이상 군)은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례회의 주기를 확인한 결과, 매월 정례회의를 한다는 읍면동은 전체 중 45.9%인 가운데, 4유형(광역시 자치구)이 76.2%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5유형(도농복합시)과 6유형(대규모 농촌형)과 7유형(소규모 농촌형)은 각각 11.5%, 21.1%,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 협의체는 43%이며 지자체 유형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

의체의 연계 수준과 관련하여, 시군구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에 읍면동 협의체(혹은 위원)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74.8%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5유형(도농복합시)의 참여율이 5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 수준과 관련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곳은 86%로 나타난 가운데, 6유형(대규모 농촌형)과 7유형(소규모 농촌형)이 각각 68.4%, 54.5%로 연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에 관한 인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 우선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목표와 관련하여, 협의체의 추구 방향과 목표의 수립 정도(7점 만점에 5.96점)와 방향과 목표에 대한 위원들의 지지 정도(5.99점)에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 수준(5.76점)과 방향과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 인지 수준(5.77점)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과 4유형(광역시 자치구)의 인식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고, 읍면동별로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과 관련하여, 협의체 참여 희망 주민 규모 인식(4.51점)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협의체 위원 배경의 다양성(5.24점)과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 수준(5.53점), 위원 개인의 특기 및 전문성 발휘 기회 수준(5.19점),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중시 수준(5.44점) 등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편이었다. 앞선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과 목표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과 4유형(광역시 자치구)이 다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특히 협의체 참여 희망 주민 규모와 협의체 위원 배경의 다양성, 위원 개인

의 특기 및 전문성 발휘 기회 수준에서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협의회 위원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기대 역할 이해도(5.59점), 협의회 활동 참여의 자발성(5.71점), 협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5.79점), 위원 상호 간의 참여 동기 유발(5.63점), 협의회 위원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5.85점)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지자체 유형별로는 4유형(광역시 자치구)이 다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회 위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관련하여, 경청과 존중의 태도 수준(5.82점), 민주적 의사결정 합의 수준(5.79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활발한 의견 제시 수준(5.65점), 지역사회보장 정보 탐색 수준(5.55점), 민관의 대등한 협력 관계 수준(5.69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과 4유형(광역시 자치구)이 다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사회보장 정보 탐색 수준과 민관의 대등한 협력 관계 수준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의 읍면동 협의회 지원에 관한 인식을 파악했다. 먼저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관심 및 지지 관련,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수준(5.62점), 협의회 공공위원장(읍면동장)의 적극성(5.86점), 읍면동 공무원(간사, 서기)의 적극성(6.04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과 4유형(광역시 자치구)은 다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서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협약체의 역량강화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교육 지원(5.43점), 심화교육 지원(5.38점), 협약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5.07점), 협약체 운영 적극적 지원(5.22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협약체 운영 재정 지원(4.5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6유형(대규모 농촌형)이 모든 측면에서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됐고, 7유형(소규모 농촌형) 또한 협약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 협약체 운영 적극적 지원, 협약체 운영 재정 지원 등에서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편차가 큰 가운데, 특히 협약체 구성원 소통·협력 촉진 지원, 협약체 운영 적극적 지원, 협약체 운영 재정 지원 등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읍면동 협약체 운영 성과에 관한 인식을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파악했다. 협약체 활동을 통한 개인적인 만족도 및 협약체 충성도와 관련해, 협약체 활동의 즐거움(5.74점), 참여 성취감(5.60점), 협약체 위원으로서의 자부심(5.69점), 협약체 지속 참여 의향(5.74점), 협약체 참여 타인 추천 의향(5.73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4유형(광역시 자치구)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가운데, 읍면동 상·하위 간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체 조직적 차원에서의 성과 인식은 우선 협약체 운영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의 성과 측면이다. 결정 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5.74점)과 지역 환경 및 주민 문제에 대한 고려(5.61점)는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5.27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앞서 결과와 유사하게 4유형(광역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

게 평가됐다. 읍면동 상·하위 간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 측면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조직적 차원 성과의 두 번째 측면인 특화사업 개발 및 개선 관련, 특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지속적 개선 노력(5.55점),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다양화 노력(5.64점),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5.50점) 등에서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과 4유형(광역시 자치구)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다.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에서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조직적 차원 성과의 마지막 측면인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관련,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5.29점), 직능단체(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5.23점),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지지 증대(5.17점)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3유형(특별시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된 가운데, 읍면동 상·하위 간의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났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의 발전 방향과 지원 과제와 관련된 분석 내용이다. 먼저,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운영예산·기부금(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확충 필요성(전체 응답자 중 동의 89.3%), 유공자 포상제도 필요성(82.2%), 지역복지문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90.9%), 협의체 위원 지도력(리더십)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89.8%), 협의체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성(90.9%) 등 모든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다수가 지지를 표명했다.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비교 및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양자의 운영 취지와 목표의 상이성(전체 응답자 중 동

의 70.3%), 양자의 사업 대상과 성격의 상이성(68%), 양자의 기구 분리 유지 필요성(74.6%), 양자 간의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78.7%), 양자 간의 공동 협력 사업 확대 필요성(81.5%)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를 표명했다.

3.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에 미치는 선행 요인은 다수준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협의체 민간위원 개인적 차원의 성과 인식은 협의체 활동 만족도 및 충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협의체 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은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라는 세 가지 종속변수를 설정해 총 4개의 분석 모형을 설계했다.

독립변수로는 시군구 단위 지역 변수에 환경적·재정적 요인을 포함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 변수에 협의체 환경적 요인과 협의체 조직 요인을 포함했으며, 개인 변수에 지자체 재정 요인, 협의체 조직 요인을 포함하고, 개인 변수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협의체 활동 속성,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을 포함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협의체 활동의 즐거움, 참여 성취감,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자부심, 협의체 지속 참여 의향, 협의체 참여 타인 추천 의향 등의 복합 지표로 측정된 만족도·충성도라는 개인적 성과 인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과 관련된 방향·목표 명확성, 위원 구성 다양성,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위원 역할 수행 충실성, 민관 협력 관계 대등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에서는 공공위원장의 적극성이 협의체 위원의 만족도·충성도와 통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표 5-1〉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다수준 모형 분석 결과 요약

변수	개인적 차원 인식	조직적 차원 인식		
	만족도·충성도	숙의적 의사결정	특화사업 고도화	협력적 연결망 확대
〔개인 수준〕 협의체 운영 효과성 인식				
방향·목표 명확성	+	+	+	NS
위원 구성 다양성	+	+	+	+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	+	NS	+
위원 역할 수행 충실성	+	+	+	NS
의사결정 민주성	NS	+	+	+
사회보장 관련 정보 탐색	NS	+	+	NS
민관 협력 관계 대등성	+	+	+	NS
〔개인 수준〕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NS	NS	NS	+
공공위원장 적극성	+	+	NS	NS
읍면동 공무원 적극성	NS	NS	NS	NS
지자체 교육 지원	NS	+	NS	NS
지자체 운영 지원	NS	+	+	+
〔읍면동 수준〕 협의체 환경적 요인				
읍면동 인구 규모	NS	NS	NS	NS
읍면동 인구 변동	-	NS	NS	NS
〔읍면동 수준〕 협의체 조직 요인				
협의체 위원 규모	NS	NS	NS	NS
협의체 운영예산	NS	+	NS	+

둘째, 조직적 차원 성과 인식 변수인 숙의적 의사결정에는 지역 환경 및 주민 문제에 대한 고려, 전문적 정보 및 지식 학습, 결정 사항에 대한 충실한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체 요인 인식에 포함된 8개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지속적 개선 노력, 특화사업의 지원 대상 다양화 노력, 실험적 특화사업 시도 노력으로 측정된 특화사업 고도화에도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체 운영 요인 인식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증대, 직능단체(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지지 증대로 측정된 협력적 연결망 확대에서는 위원 구성 다양성, 위원 리더십 및 개방성, 의사결정 민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협의체 운영 요인 변수들은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 인식과 조직적 차원의 성과 인식 변수의 인과 관계에서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은 협력적 연결망 확대에, 공공위원장 적극성과 지자체 교육 지원은 숙의적 의사결정에, 지자체 운영 지원은 세 가지 성과 변수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장·읍면동장 등 공무원의 지원 노력과,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차원의 교육 및 운영 지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협의체 조직 요인인 협의체 운영예산 규모는 숙의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연결망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군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

4. 읍면동 협의체 재정립 방안 및 지원 과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내용과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 대상의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 등 법령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역할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복지 공급의 다원화와 관련된 복지혼합(welfare mix) 모형과 행정과정론의 정책 공동생산 이

론의 관점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기본적 성격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지역주민의 조직화된 자원활동”으로 규정했다. 즉, 읍면동 협의체 활동은 지역주민의 자원활동을 통해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기획·집행·평가를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읍면동 협의체 활동의 고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범적 지향성을 숙의성, 실천성, 파급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숙의적 의사결정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이다. 둘째, 창의적·혁신적 사업의 기획을 통한 주민참여 자원활동의 고도화이다. 끝으로는 지역사회자원 부문 활성화를 통한 자원 부문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것이다.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규칙, 운영지침에서 읍면동 협의체의 설치 목적과 기능, 역할에 대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읍면동 협의체의 고유성과 지향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 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첫째,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① 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읍면동 협의체 운영예산 확충, ② 시군구 협의체 전담인력 충원, ③ 시군구 읍면동 협의체 관련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제시했다. 둘째, 시군구 협의체·읍면동 협의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해, ① 읍면동 협의체 연합회 구성·운영, ② 읍면동 협의체의 시군구 협의체 참여 다각화, ③ 읍면동 협의체와 시군구 협의체 협업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끝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①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교육 및 컨설팅 체계적 지원, ② 지역복지리더 육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2절 정책 제언

앞선 읍면동 협의체 주요 쟁점,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 인식·실태 조사 분석, 읍면동 협의체 운영 성과 인식의 영향 요인 분석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 고유성과 지향성을 설정하고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를 재정립하기 위해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시군구 협의체·읍면동 협의체 연계·협력 촉진,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역량 제고라는 세 가지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제도적 측면의 정책 과제로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관련 유사 계획의 통합을 통한 효율화를 제안했다.

우선,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규범적 지향은 상이하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양자를 대표하는 제도적 기구 또한 표면적인 유사성을 이유로 조직적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은 읍면동 협의체의 민간위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의 운영 취지와 목표는 다른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0.3%가 동의했고, 양자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의 대상과 성격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했으며, 양자는 두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 각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74.6%가 동의를 표명했다.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민 중 대다수는 두 기구가 유사하다기보다는 상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

은 두 기구를 겸직한 민간위원들이 양자 간 인적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78.7%가 동의했고, 양자 간 공동 협력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1.5%가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두 기구의 고유성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토대로 양자 간의 소통·교류·협력을 강화하려면 공식적 절차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읍면동 협의체 담당 부서(공무원)와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부서(공무원) 간의 정보 공유부터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두 기구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의제가 무엇이고 두 기구의 위원들이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자 간에 조정·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소통과 교류의 장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서로 친분과 교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지닌 주민자치(위원)회와 실천성에 강점을 지닌 읍면동 협의체 간에 지역사회보장 부문에서 협력 사업을 공동 기획·추진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군구·읍면동 단위 복지 부문과 관련된 유사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 주된 검토 대상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시군구 단위의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읍면동 단위의 읍면동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 2017년부터 추진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따른 시군구 단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과 읍면동 단위의 마을복지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이러한 유사 계획들은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유사 계획의 난립으로 인해 행정업무의 혼란, 형식적인 계획의 혼선, 계획 내용의 중복 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

황이다(채현탁, 오민수, 2021, p.50).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유사 계획 간 연계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불거지는 입장 차이이다. 연계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계획 간 유사점보다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계획의 법적 근거 유무와 계획 수립의 취지, 계획 수립의 주체, 시군구와 읍면동의 관할 범위의 차이 등을 강조할 것이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심으로 나머지 계획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개별 계획의 독립적 수립에서 오는 장점보다는 행정 비용과 부작용 발생이 더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 간 연계 방안은 행정의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유사 계획의 난립은 시군구와 읍면동 공무원의 다른 고유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나머지 계획들이 하위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라는 지자체의 책무성을 고려하면 개별 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지자체 복지행정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이 계획들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의 원칙 실현이라는 과정적 차원을 핵심 기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계획 간 연계보다는 계획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중기적으로 가칭 ‘통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계획체계의 구조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구조화한다.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

스 기본계획을 통합한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 수립되는 읍면동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신설하여 통합한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현재 법정 계획이 아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과 읍면동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 마을복지계획의 법적 위상을 높여야 하는 제도적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통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체와 절차, 지원체계,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등에 대한 섬세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계획이 지난 기본 가치인 주민 주도 민관협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소생활권 지역사회보장 증진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통합을 위한 통합’은 경계해야 한다.



- 강혜규, 김태완, 정홍원, 최현수, 김동진, 김영옥...이정은. (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박세경, 함영진, 이정은, 김태은, 최지선...Aniela Wenham. (2016). 사회보장 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함영진, 이정은, 하태정, 이주민, 김보영...최지선. (2017). 지자체 복지인력 현황 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안수란, 류진아, 엄태영, 진재문, 홍재봉...권영빈. (2018).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함영진, 김희성. (2019). 제6장 제4절 복지전달체계와 주민참여. 김정해, 조세현, 윤영근, 권향원, 차세영,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497-527.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곽현근. (2010).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사례 연구 - 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8(4), 227-257.
- 곽현근. (2012a).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영국 동네거버넌스 제도 실험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4.
- 곽현근. (2012b). 지역사회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근린 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1.
- 곽현근. (2015).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학보, 49(3), 279-302.
- 곽현근. (2020).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시론 (試論). 한국행정연구, 29(2), 31-6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a).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C%9D%98%EC%9D%B4%EC%9A%A9%E3%8>

6%8D%EC%A0%9C%EA%B3%B5%EB%B0%8F%EC%88%98%EA%B8%89%EA%B6%8C%EC%9E%90%EB%B0%9C%EA%B5%B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7201,20200407). 2021.6.2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b).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85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864>에서 2021.8.17.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45#0000>에서 2021.9.17.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령 제82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5193#0000>에서 2021.9.17. 인출.

권향원, 김성민, 한수정. (2017). '숙의거버넌스'의 저해 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 189-216.

권향원, 윤영근. (2020).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개념적 이해 및 사례의 유형화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1-26.

김상영. (2000). 동기능전환의 의의.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63-68.

김영배 국회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아! 공동세미나. 서울: 김영배 국회의원실,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영순, 최현수, 이윤경, 방효정. (2007). 복지국가유형별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Vol. 125, 37-61.

김의영. (2011).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209-234.

김이배. (2016).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83-719.

- 김이배. (2019). 자치와 복지 연계 시도를 통한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 연구. 한국 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691-722.
- 김이배. (202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 측면에 관한 연구. 서울: 신정.
- 김익수. (2018). 제주지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제주). <http://www.riss.kr/link?id=T14904406>에서 2021.7.26. 인출.
-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45-72.
- 김정희. (2015).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대도시의 주민참여행정 비교연구: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135-170.
- 김종건.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쟁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경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3-46.
- 김종건, 배은석, 손지현, 이미라. (2020).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사 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민간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매니저 활동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7(2), 115-138.
- 김진욱. (2005). 한국 복지국가 공급체계의 혼합(Mix) 구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5-56.
- 김진욱. (2011). 한국의 복지혼합. 서울: 집문.
- 김필두, 류영아. (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환. (2018a).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방세논집, 5(1), 45-71.
- 김홍환. (2018b). 읍면동 정책에 대한 평가. 지방정부연구, 22(1), 1-23.
- 김희성, 강혜규, 함영진, 하태정, 김정숙, 황정윤. (2018).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성, 류진아, 오욱찬, 채현탁, 황정윤. (2020). 복지 부문 민관협력 성과와 혁

- 신 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연, 김보영, 김인춘, 홍경준, 홍선미, 임지영. (2012). 한국적 복지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문병기. (2003). 로컬 거버넌스 관련 제 이론적 접근. 이은구 외. 로컬 거버넌스, 27-71. 서울: 법문사.
- 박기용. (201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포항시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경기). <http://www.riss.kr/link?id=T14401262>에서 2021.11.07. 인출.
- 박태영, 채현탁. (2014). 지역사회복지론. 경기: 정민사.
- 보건복지부. (2017a).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a). 202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데이터파일]. 내부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박동진. (2021). 경기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20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발표자료.
- 박정인. (2016.08.01.). 경기도-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협력 추진.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861>에서 2021.11.07. 인출.
-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 구협의체와 동협의체의 찰떡궁합 수상한 투협스 성과보고서. 내부자료. 서울: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서대문구청. (2021). 서대문구 마뽀협의체 위촉식 및 연합회의. 내부자료. 서울: 서대문구청.
- 서울시복지재단. (2020). 2020년 동북지대학 1차년동 구·동 추진 사례. 내부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2021). 동북지대학 업무 매뉴얼.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보장위원회. (2020). 2020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안내. 내부자료.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내부자료.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a). 2020년성과보고서 언택트 in택트, 민과협력의 힘!. 수원: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b).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내부자료.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c).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디네이터 심화과정 교육계획(안). 내부자료.
- 신동면. (2001).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20-249.
- 오민수. (2016).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현황 진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6(1), 352-378.
- 이기호. (2019). 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5(2), 245-294.
- 이소영.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로컬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생명연구, 53, 75-105.
- 이수경. (2014). 사회혁신역량: 지속적 사회혁신을 이끄는 힘. <http://ibr.kr/2745>에서 2021.09.30. 인출.
- 이승종.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사.
- 이양숙. (2013). 동네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 대전 동구 '새얼아카데미'와 '용운 복지만두레'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 <http://www.riss.kr/link?id=T15250068>에서 2021.11.07. 인출.
- 이영글, 하현상, 함영진, 박성준. (2018). 지역복지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이영글, 박성준, 함영진. (2021).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8(1), 97-121.
- 이영희. (2009). 기술과 시민: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경제와 사회, 82, 216-239.

- 이재완, 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직, 인력, 사업, 재정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4, 195-236.
- 이재용, 김지수. (2020).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 47-74.
- 이지영, 권순우.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및 평가 체계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54, 453-486.
- 임규모. (2018. 11. 08.). 세종시, 금남면에 '안심하우스' 개관.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23157>에서 2021. 11.07. 인출.
- 임규모. (2021. 06. 28.). 세종시 금남면 지사협, 안심 빨래방 개소식 개최.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380>에서 2021.11.07. 인출.
- 장수찬. (2013).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NGO연구*, 8(1), 1-33.
- 정아원, 강병덕, 박준혁, 정숙희. (20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P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2), 135-159.
- 정진경. (2012). 자원봉사 개념의 재해석과 통합적 적용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3), 31-52.
- 정진현. (2015).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제44차 국내세미나 논문집*, 1-19. http://cla.hanyang.ac.kr/default/sub3/sub33.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28&&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com_board_id=10&&com_board_id=10에서 2021.9.17. 인출.
- 정홍원, 강혜규, 김보영, 홍성대, 황덕순, 이정은, 이한나. (2012). 행복e음 도입 이후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 모형 정립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석주. (2003).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성수, 정희선, 윤영미, 이경화. (2017).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행정안전부.
- 주재복, 한부영. (2006).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창녕군. (2020). 지역복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운영 계획. 내부자료.
- 채현탁. (2015).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117-145.
- 채현탁, 오민수. (2021).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주민참여 쟁점과 과제. 2021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9-77.
- 최길수. (2019). 지방정부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최석현·김재신. (2018). 새로운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위한 공동생산 전략. GRI 포커스, 2018(11), 1-4.
- 최지민, 강영주. (2020).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 분석.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포웰, 엠. (2011). 복지혼합. (김기태 역.). 서울: 나눔의집. (Understanding Mixed Economy of Welfare. 2007. Bristol, UK: Policy Press).
- 함영진. (2017). 복지 부문 민관협력의 추진 여건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 253, 42-55.
- 함영진, 김희성, 김태은, 이석환, 최항석, 최조순...Paula Saikkonen. (2018).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 격차-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13-243.
- 행정안전부. (2018).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6-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에서 2021.09.29. 인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세종: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홍선미. (2016). 읍면동 단위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과제.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Adams, D., & Hess, M. (2010). Social innovation and why it has policy significance.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1(2), 139-155.

Andrew, C., & Goldsmith, M. (1998).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ance—and beyon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9(2), 101-117.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2007). *Guide to Measuring Community Core Capacities for Comprehensive Change Initiatives*. <https://communityscience.com/wp-content/uploads/2021/01/Guide-to-measuring-community-core-capacities-2.pdf>에서 2021.10.01. 인출.

Bahle, T.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5-20.

Barnes, M. & Paul Schmitz, (2016). Community Engagement Matters (Now More Than Eve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14(2), 32-39.

Berry, J. M., Portney, K. E., & Thomson, K. (1993). *The Rebirth of Urb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Billis, D. & Glennerster, H. (1998). Human services and the voluntary sector: towards a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social policy*, 27(1), 79-98.
- Borghans, L., Ter Weel, B., & Weinberg, B. A. (2006). People people: Social capital and the labor-market outcomes of underrepresented group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11985*. <https://www.nber.org/papers/w11985>에서 2021.11.01. 인출.
- Butterfoss, F. D. (2006). Process evaluation for community participation. *Annu. Rev. Public Health*, 27, 323-340.
- Campbell, D. & Erbstein, N. (2012). Engaging youth in community change: three key implementation principles, *Community Development*, 43(1), 63-79.
- Candid. (2021). *Community Leadership Assessment Tool*. <https://www.issuelab.org/resources/36380/36380.pdf>에서 2021.10.22. 인출.
- Castiglione, D. & Warren M. E. (2013). A New Ecology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Eight Theoretical Issues. *Intrasformazione: Rivista di Storia delle Idee*, 2(2), 155-172.
- Durose, C., & Lowndes, V. (2010). Neighbourhood governance: contested rationales within a multi-level setting—a study of Manchester. *Local government studies*, 36(3), 341-359.
- Evers, A. (2005). Mixed welfare systems and hybrid organizations: Changes in the governance and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t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9-10), 737-748.
- Fedotova, O., Teixeira, L., & Alvelos, H. (2012). E-participation in Portugal: evaluation of government electronic platforms. *Procedia Technology*, 5, 152-161.
- Fetterman, D. M. (2005a). Chapter 1: A Window into the Heart and

- Soul of Empowerment Evaluation: Looking through the Lens of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Fetterman, D. M., & Wandersman, A. (Eds.),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27-41. NY: Guilford Press.
- Fetterman, D. M. (2005b). Chapter 3: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in Fetterman, D. M., & Wandersman, A. (Eds.),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42-72. NY: Guilford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Israel, B. A., Checkoway, B., Schulz, A., & Zimmerman, M. (1994). Health educa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erceptions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control.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 149-170.
- Kasmel, A., & Andersen, P. T. (2011). Measurement of community empowerment in three community programs in Rapla (Eston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3), 799-817.
- Koop, S. H. A., Koetsier, L., Doornhof, A., Reinstra, O., Van Leeuwen, C. J., Brouwer, S....Driessen, P. P. J. (2017). Assessing the governance capacity of cities to address challenges of water, waste, and climate change. *Water Resources Management*, 31(11), 3427-3443.
- Lee, M. J. & Levine, P. (2016). A New model for Citizen Engagemen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4(4), 40-45.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Lowndes, V. & Sullivan, H. (2008).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53-74.
- Mutchler, S. E., Mays, J. L., & Pollard, J. S. (1993). *Finding Common Ground: Creating Local Governance Structures*. Austin, Texas: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OECD Publishing.
- Parks, R. B., Baker, P. C., Kiser, L., Oakerson, R., Ostrom, E., Ostrom, V., ... Wilson, R. (1981). Consumers as coproducers of public services: Som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9(7), 1001-1011.
- Pestoff, V. (2009). Towards a paradigm of democratic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co-production of personal social services in Sweden.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0(2), 197-224.
- Pogge, T. (2002). Self-constituting constituencies to enhance freedom, equality and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rocedures. *Theoria*, 49, 26-54.
- Portney, K. E. & Berry, J. M. (2010). Participation and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in U.S. Cities. *Urban Affairs Review*, 46, 2010, 119-139.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be-Hesketh, S., & Skrondal, A. (201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3rd Ed.)*. College Station, Texas: Stata Press.
- Sainsbury, D. (1994, ed.),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s.

- Scottish Government. (2009). *Community Scottish Community Empowerment Action Plan - Celebrating Success: Inspiring Change*. <https://www.webarchive.org.uk/wayback/archive/20171002003649/http://www.gov.scot/Publications/2009/03/20155113/16>에서 2021.10.29. 인출.
- Smith, I., Lepine, E. & Taylor, M. (Eds). (2007). *Disadvantaged by Where You Live? Neighbourhood Governance in Contemporary Urban Policy*. Bristol: Policy Press.
- Sorrentino, M., Sicilia, M., & Howlett, M. (2018). Understanding co-production as a new public governance tool. *Policy and Society*, 37(3), 277-293.
- Taylor, M. & Wilson, M. (2006). *The Importance of Neighbourhoods: Tackling the Implementation Gap*. Lond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Taylor-Gooby, P., Heuer, J. O., Chung, H., Leruth, B., Mau, S., & Zimmermann, K. (2020). Regimes, social risks and the welfare mix: unpacking attitudes to pensions and childcare in Germany and the UK through deliberative forums. *Journal of Social Policy*, 49(1), 61-79.
- Voorberg, W. H., Bekkers, V. J., & Tummers, L. G. (2015). A systematic review of co-creation and co-production: Embarking on the social innovation journey. *Public Management Review*, 17(9), 1333-1357.
- Wandersman, A., Snell-Jones, J., Lentz, B., Fetterman, D. M., Keener, D. C....Flaspohler, P. (2005). Chapter 2: The Principles of Empowerment Evaluation, in Fetterman, D. M., & Wandersman, A. (Eds.), *Empowerment evaluation principles in practice*, 27-41. NY: Guilford Pres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Track 1: Community empowerment*.
<https://www.who.int/teams/health-promotion/enhanced-wellbeing/seventh-global-conference/community-empowerment>에서
2021.11.01. 인출.





[부록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조사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과정 및 창출 성과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성취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2조(성실 응답의무)와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오며, 개인정보(기관명, 지역 등)는 공개되지 않고 분석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견해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선과제를 찾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무척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태수
연구책임자: 김희성 부연구위원

S. 응답자 정보

S1]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S2] 연령	만 _____ 세	S3]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S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재 직책 (겸직인 경우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② 부위원장 <input type="checkbox"/> ③ 분과장 <input type="checkbox"/> ④ 총무, 사무국장, 간사, 서기 <input type="checkbox"/> ⑤ 위원 <input type="checkbox"/> ⑥ 그 외		
S5] 소속 단체·기관 등 (과거와 현재 모두 포함하여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복지기관단체시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⑥ 종교인 <input type="checkbox"/> ② 통장, 반장, 이장 <input type="checkbox"/> ⑦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③ 주민자치위원 <input type="checkbox"/> ⑧ 교육복지 관계자(교사 등) <input type="checkbox"/> ④ 자원봉사단체회원 <input type="checkbox"/> ⑨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⑤ 부녀회회원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지역주민		

A.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현황 및 전반적 인식

A11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년				월
--	--	--	--	--	---	--	--	--	---

 부터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A21 귀하가 읍면동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 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 ② 자신의 지식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 ③ 주민으로서 동네(읍면동)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 ④ 자신의 인격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⑤ 새로운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 ⑥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 ⑦ 기타

A31 (S4의 ①위원장만 응답) 귀하가 속한 읍면동 협의체는 정례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 ① 매월 한다.
- ② 격월(2개월)에 한 번 한다.
- ③ 분기(3개월)에 한 번 한다.
- ④ 반기(6개월)에 한 번 한다.
- ⑤ 기타

A41 귀하께서는 읍면동 협의체 활동(정례회의, 특화사업 등)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① 0~20% 참석한다.
- ② 20~40% 참석한다.
- ③ 40~60% 참석한다.
- ④ 60~80% 참석한다.
- ⑤ 80~100% 참석한다.

A51 귀하께서는 과거 또는 현재에 읍면동 협의체가 아닌 다른 단체·모임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A5-1번으로)
- ② 아니오 (☞ A9번으로)

A5-11 귀하의 읍면동 협의체 외의 자원봉사활동 총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3년 미만
- ③ 3년 이상~5년 미만
- ④ 5년 이상~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A61 (S4의 ①위원장만 응답) 2021년을 기준으로 귀하가 속한 읍면동 협의체는 여러 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사각지대발굴 분과, 서비스지원 분과, 건강생활 분과 등)

- ① 예
- ② 아니오

A7[S4의 ①위원장만 응답] 2021년을 기준으로 귀하가 속한 읍면동 협의체(혹은 위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시군구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 등)

- ① 예 ② 아니오

A8[S4의 ①위원장만 응답] 2021년을 기준으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예: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연합회 네트워크 등)

- ① 예 ② 아니오

A9) 귀하가 소속된 읍면동 협의체에서의 활동 경험을 떠올려 주십시오.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취지나 활동의 성격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활동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활동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지발적으로 돕는 공익적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활동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우선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 활동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A10[S5의 ③주민자치위원 과거현재 겸직인 경우만 응답] 귀하께서는 읍면동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모두 참여하고 계시거나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두 기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행해야 할 사업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두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각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예: 협의체 위원의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협의체 위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

B1) 귀하가 소속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의 활동 경험을 떠올려 주십시오.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목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 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2)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구성 및 리더십 등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에는 지역 소재 단체나 기관, 직업과 전문성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민간 위원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관심과 특기, 전문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3)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의 역할 수행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위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위원들은 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 위원 각각의 기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4] 읍면동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운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한다. (예: 정부 및 시군구의 복지사업 현황 및 동향, 복지 취약계층에 관련된 정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위원들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의 민간위원은 시군구·읍면동 공무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5] 다음은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시군구·읍면동 공무원의 관심과 지지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자체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협의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읍면동장)은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협의체 간사, 서기)은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출석수범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6] 다음은 시군구·읍면동에서 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예: 협의체 취지와 목적, 협의체 위원의 역할, 활동시 유의 사항 등에 관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위원들에게 협의체 활동(사업)과 관련된 심화 교육이 충실히 제공된다. (예: 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연계, 상담기법, 마을복지계획 수립 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제공되고 있다. (예: 공동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타 지역 탐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시군구 차원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 협의체 위원 의견수렴,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지원, 마을복지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기부금(사업비 등)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0 복지 부문 읍면동 동네거버넌스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C.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및 과제

C1) 귀하는 읍면동 협의체 활동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협의체 활동을 즐기며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협의체 위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웃-지인들에게 협의체 활동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2) 읍면동 협의체 운영을 위한 논의 및 결정 과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특유의 역사와 환경, 주민(취약계층)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읍면동 협의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협의체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3) 읍면동 협의체 시행하고 있는 특화 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화사업을 추진한 후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특화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 노인 중심에서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익숙한 사업만을 하기보다는 새롭고 실험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4) 읍면동 협의체와 지역사회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사회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5) 읍면동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예산·기부금(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협의체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예: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협의체 위원들에게 지역의 복지문제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협의체 위원들의 지도력(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협의체 사업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청년,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예: 인센티브, 홍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GS25 3천원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기프티콘 문자발송, 조사 종료 후 일괄지급)
※ 기입하신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되며, 본 조사 응답자분들에게 답례품을 발송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폐기될 예정입니다.

- 동의함(휴대폰번호 _____, 휴대폰번호는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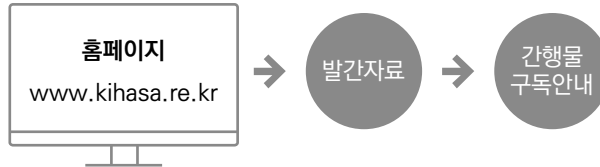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